

2022.10.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공동연구	인천대학교	교수	이창길
	인천학연구원	연구교수	백정미
	UT Dallas	교수	김도형
	동의대학교	교수	엄영호
연구지원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정남숙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최민아
	인천대학교	박사과정	진혜린
	인천대학교	학사과정	이용후

1. 연구개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천, 울산)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지역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등

과업의 주요 내용

-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설립기준에 따른 현황 분석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시민(잠재적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변호사) 수요조사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발굴 및 갈등 관리방안 도출

2. 고등법원 설립기준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천시 현황 분석

- 고등법원 설치기준
 -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기준
 -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지방분산 배치
 - 지방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 고등법원 설치의 객관적 지표: 소송 사건수, 인구규모, 관할 면적, 교통접근성, 지역적 특성

○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 첫째, 서울고등법원의 관할범위와 사법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를 도출하고, 사법서비스 분산의 필요성을 검증함
- 둘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천지역 사법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고, 인천지역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수요 충분성을 검증함

○ 서울고등법원은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관할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송사건이 집중됨에 따라 과포화 상태임.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기존 고등법원 외 추가 설치 수요가 높음

[요약 표 1] 고등법원 관할범위

(단위: 명, km)

고등법원	관할인구(명)	관할 면적(km)	관할구역 내 지법·지원 수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18,941,683	23,787	8개 지법 7개 지원	2개 가정, 1개 지원	춘천, 인천
대전고등법원	5,541,579	16,658	2개 지법, 8개 지원	1개 가정, 5개 지원	청주
대구고등법원	5,057,768	19,918	1개 지법, 8개 지원	1개 가정, 7개 지원	-
부산고등법원	7,868,179	12,373	3개 지법, 7개 지원	2개 가정	창원, 울산
광주고등법원	5,780,350	22,769	3개 지법, 7개 지원	1개 가정, 4개 지원	제주, 전주
수원고등법원	8,639,464	4,909	1개 지법, 5개 지원	1개 가정, 5개 지원	-

주: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이후 분석에서 이용하는 사법연감 통계가 2020년 자료로 분석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2020년 인구를 제시함. 다만, 인구현황 분석에서는 최근 통계인 2021년 통계를 이용함

자료: 관할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관할 면적-법제사법위원회(2020)

- 고등법원 법관 수는 서울고등법원이 209명으로 가장 많으나, 판사 1인당 인구는 서울고등법원이 142,419명으로 가장 적으며,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는 서울고등법원이 98.85건으로 가장 많음. 이는 전반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역량과 전문성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요약 표 2] 고등법원의 법관현황

(단위: 명,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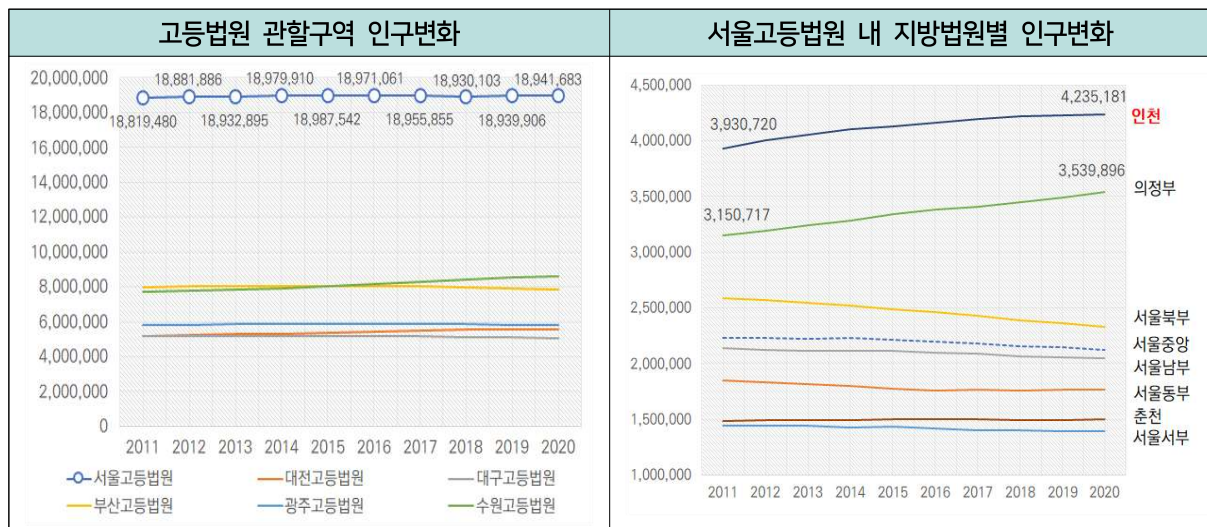
고등법원	법관 수(명)				인구수(명)	판사 1인당 인구(명)	판사 1인당 사건 수
	법원장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판사	계			
서울고등법원	1	75	133	209	18,941,683	142,419	98.85
대전고등법원	1	10	22	33	5,541,579	251,890	69.00
대구고등법원	1	8	17	26	5,057,768	297,516	69.69
부산고등법원	1	14	30	45	7,868,179	262,273	79.82
광주고등법원	1	10	25	36	5,780,350	231,214	70.33
수원고등법원	1	13	26	40	8,639,464	332,287	88.50

주: 법관 수와 인구수는 2020년 기준임

자료: 법관수-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인구수-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2020년 18,941,683명으로 고등법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1년 대비 2020년 12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서울 지역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한데 반해,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인구는 증가함.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인구는 2011년 3,930,720명에서 2020년 4,235,181명으로 10년간 304,461명(7.7%) 증가하였음

[요약 그림 1]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중현황은 두드러짐. 2020년 고등법원 전체 소송사건은 본안 34,412건, 본안 외 42,944건 중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20,659건, 본안 외 23,557건으로 가장 많음.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모든 분야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건수가 다른 고등법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
- 전체 본안소송 중 서울고등법원의 비중이 60.0%로, 본안소송 절반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됨
 - 소송유형별로 보면, 민사소송 69.6%, 가사소송 46.1%, 행정소송 62.5%, 형사소송 39.7%로 서울고등법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절반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됨

[요약 표 3]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2020년 기준)

(단위: 건)

2020년 기준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공판	치료 감호	본안 외
서울고등법원	20,659	23,557	12,669	4,933	514	346	4,070	1,326	3,371	34	16,951
대전고등법원	2,277	3,688	815	453	98	50	496	199	861	7	2,986
대구고등법원	1,812	2,748	725	407	65	28	284	128	721	17	2,185
부산고등법원	3,592	5,127	1,430	760	187	76	601	227	1,361	13	4,064
광주고등법원	2,532	3,406	914	569	80	46	502	164	1,018	18	2,627
수원고등법원	3,540	4,418	1,662	900	170	79	560	159	1,140	8	3,280
계	34,412	42,944	126	8,022	1,114	625	6,513	2,203	8,472	97	32,093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단위 인구(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한 단위 인구당 항소심 건수가 가장 많은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2020년 기준 109.1건) 다른 고등법원의 2배 이상이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4.0건에서 최대 128.1건의 범위에서 움직임

[요약 표 4] 인구 10만 명당 전체 항소심 건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113.5	119.4	119.1	118.9	116.4	125.1	128.1	104.0	120.4	109.1
대전고등법원	45.3	57.9	50.7	56.8	54.1	50.4	46.2	43.1	46.0	41.1
대구고등법원	38.6	44.5	39.6	45.3	42.2	43.7	38.5	35.9	38.5	35.8
부산고등법원	47.7	50.9	54.1	59.0	54.7	54.8	47.7	47.5	45.3	45.7
광주고등법원	49.2	53.5	51.7	59.8	57.8	54.8	50.9	48.5	51.2	43.8
수원고등법원									31.6	41.0
계	294.4	326.2	315.1	339.9	325.2	328.8	311.4	279.1	332.9	3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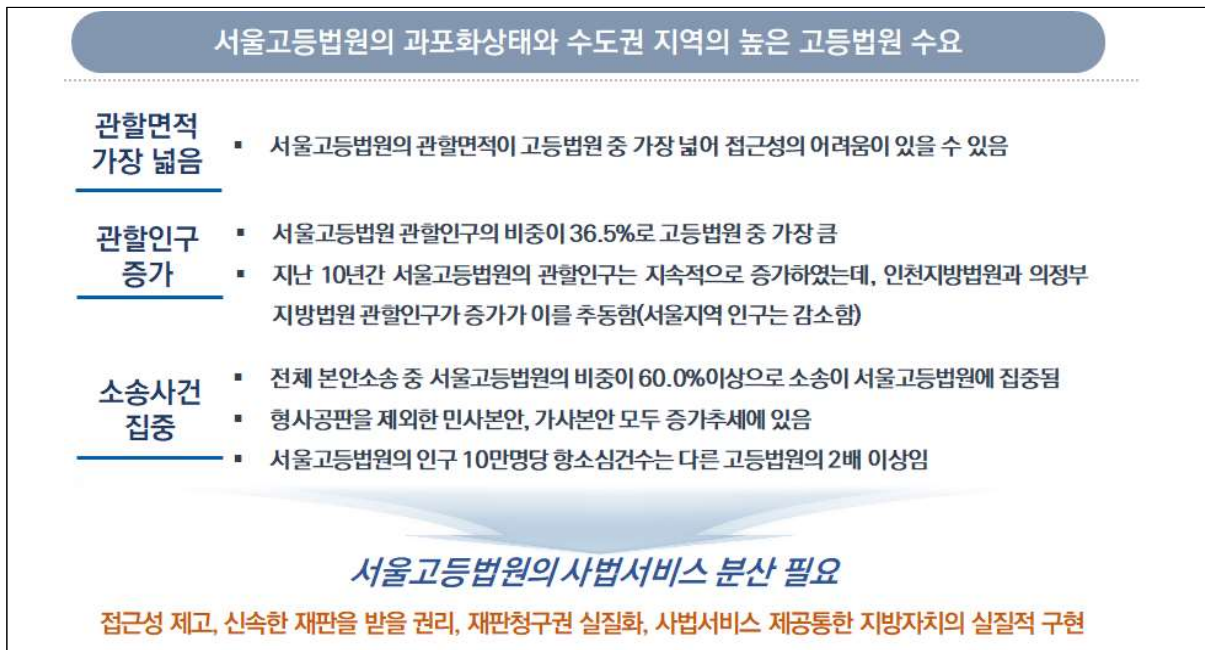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각년도).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본안소송 항소심 건수가 고등법원 중 가장 많고,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도 가장 많음. 이를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하더라도 다른 고등법원 보다 2배 이상 많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집중되어 과포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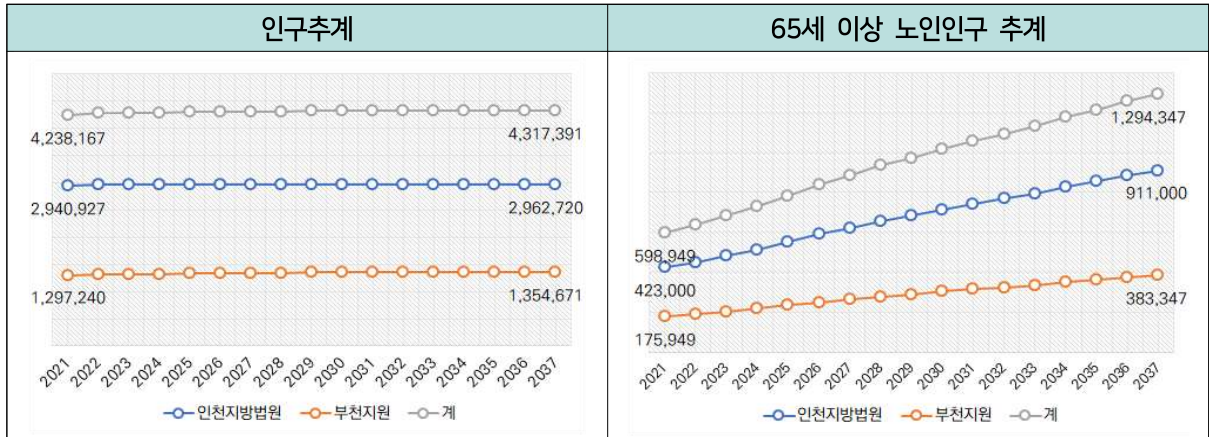
-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는 심리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는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가져오고,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져올 것임

[요약 그림 2] 서울고등법원 현황 및 사법서비스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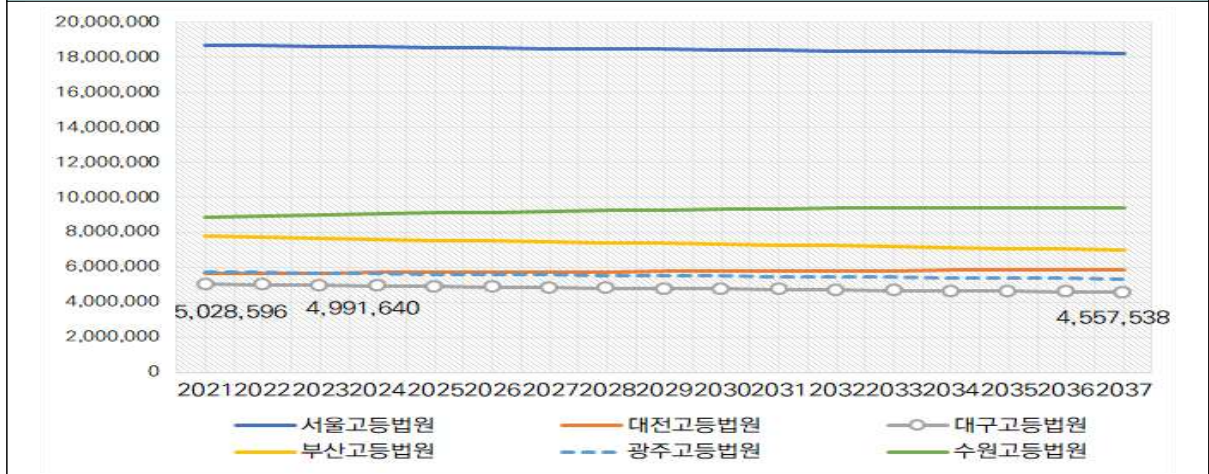


-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인구추계, 지역특성(사업체 수 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장래인구추계 결과, 인천지역의 인구는 2037년까지 4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반해 대구고등법원은 2037년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인구의 경우 2037년 1,294,347명으로 증가하는데, 2030년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체 수: 2013년 257,822개에서 2019년 301,660개로 6년간 43,837개 증가
 - 종사자 수: 2013년 1,237,539명에서 2019년 1,441,764명으로 6년간 20만 명 이상 증가

[요약 그림 3]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 및 노인인구 추계



<참고>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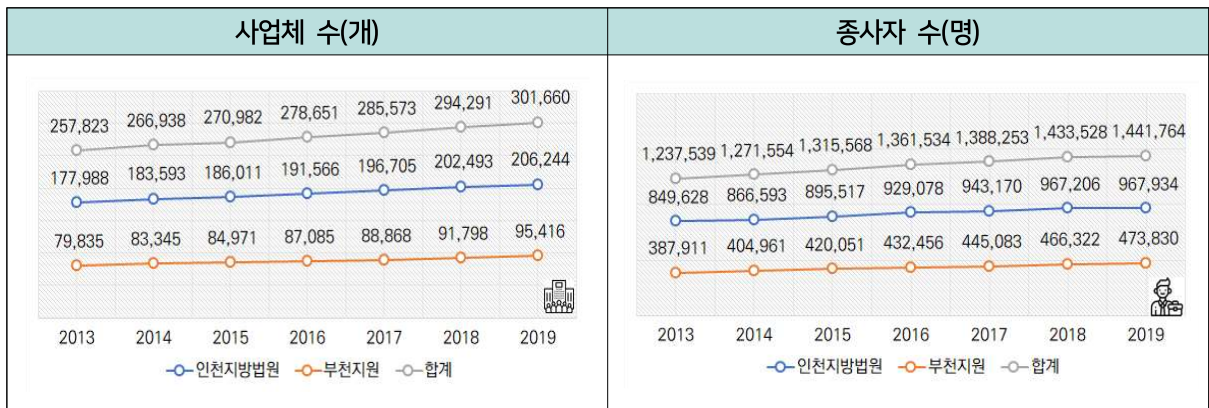


주1: 인천관할지역 인구추계는 시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고, 김포시와 부천시 는 경기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함

주2: 추계방법은 중위추계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장래인구추계, 경기도 시·군 단위 장래인구추계)

[요약 그림 4]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원자료: 인천광역시는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 김포시와 부천시는 각 시의 기본통계연보)

- 인천지역의 접근성은 도서지역 등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장 최근에 설립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바도 있음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으로 96.1분, 승용차로 71.5분으로,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왕복 거의 3~4시간 소요됨
- 특히, 강화군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대중교통 171.8분, 승용차 94.5분으로, 대중교통의 경우 거의 3시간이 소요되는데, 다수의 섬의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접근성은 더욱더 떨어짐
- 옹진군 섬 지역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옹진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소 1시간 10분(덕적도)에서 최대 4시간(백령도) 배를 타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온 다음(북도, 영흥도 제외), 다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 는 거의 2시간, 승용차로는 45분 정도 걸려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함
- 또한 1일 배편 횟수가 정해져 있어 1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등의 업무를 본 다음,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어려워,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틀이 소요됨

[요약 표 5]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성

(단위: 분, 명)

구분		평균 통행시간(분)		인구수 (2021)	노인인구수 (2021)
		대중교통	승용차		
인천광역시	계	96.3	78.5	2,948,375	435,431
	중구	112.7	90.5	143,633	21,735
	동구	108.5	88.8	61,486	14,670
	미추홀구	104.3	85.7	407,464	41,021
	남동구	92.2	74.0	389,644	75,633
	서구	98.0	63.8	518,272	76,493
	부평구	90.0	68.3	486,765	40,840
	계양구	103.7	71.5	295,696	63,203
	연수구	99.0	66.3	555,380	72,320
	강화군	171.8	94.5	69,693	23,751
	옹진군	-백령도(배편 4시간)+대중교통 120분(승용차 45분) -연평도*배편 2시간+대중교통 120분(승용차 45분)		20,342	5,765
경기도	부천시	91.2	63.5	806,067	118,668
	김포시	85.3	70.2	806,067	62,780
가중평균(합계)		96.1	71.5	4,240,950	616,879

주: 네이버지도서비스 이용, 주중 오전 9시~10시 및 오후 3시~4시 사이에 측정한 평균값. 섬 지역인 옹진군은 제외
 자료: 이인재 외(2020)를 토대로 재구성,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요약 그림 5] 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 비교



주: 네이버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고등법원과 각 지역들의 직선거리를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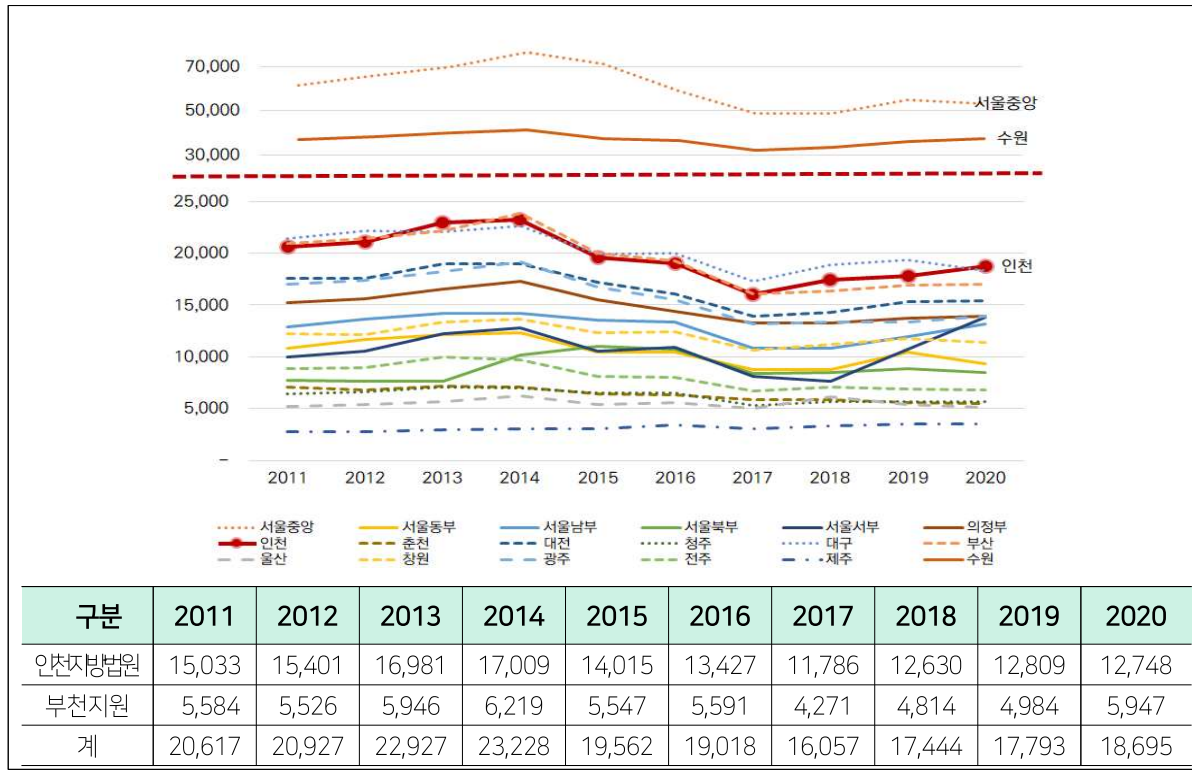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1심 민사본안 소송건수는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 수원 다음 3번째로 많으며,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중 10년 연평균 인천지방법원 비중은 13.6%로, 서울중앙지법(42.0%) 다음으로 높음¹⁾
- 2011~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은 2011년 2,646건에서 2020년 3,405건으로 10년간 700건 이상 증가함(인천지방법원 증가율 28.7%)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1년간 300건이 증가하여 9.9%의 증가율을 보임²⁾

- 1)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평균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 소송건수는 서울중앙 60,817건, 서울회생 102건, 서울동부 10,515건, 서울남부 12,872건, 서울북부 8,907건, 서울서부 10,732건, 의정부 14,869건, 인천 19,639건, 춘천 6,365건으로,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전체 소송건수(144,817건)에서 각 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법원행정처, 2021)
- 2) 지방법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서울 중앙	서울 회생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의정부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2019	46,141	8,426	5	1,611	2,304	1,438	1,526	2,617	3,097	1,049	2,858	984	3,487	3,361	970	2,245	2,371	1,219	821	5,752
2020	46,653	9,355	2	1,576	2,289	1,439	1,147	2,533	3,405	1,182	2,998	1,022	3,279	3,172	836	2,060	2,266	1,249	852	5,991
증감율	1.1	11.0	-60.0	-2.2	-0.7	0.1	-24.8	-3.2	9.9	12.7	4.9	3.9	-6.0	-5.6	-13.8	-8.2	-4.4	2.5	3.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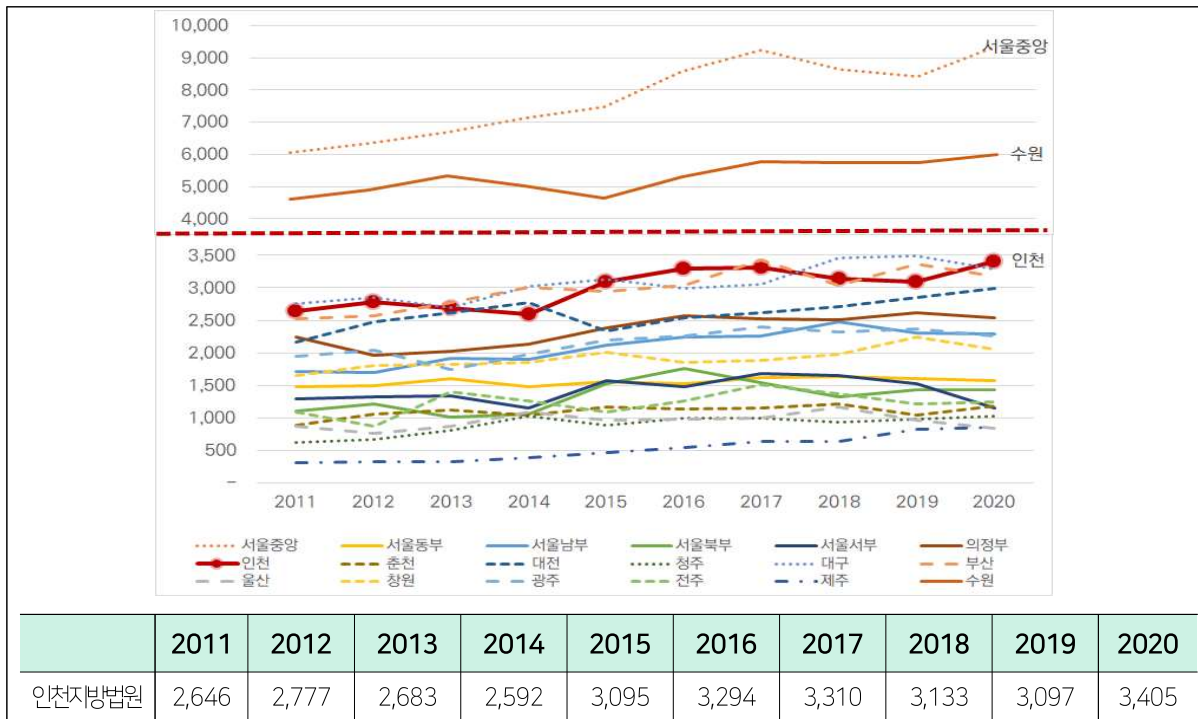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요약 그림 6]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요약 그림 7]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11년 835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10년간 677건 증가하여 8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은 2011년 21,945건(16,582건+5,363건)에서 2020년 24,863건(17,471건+7,392건)으로 10년간 13.3% 증가함
-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은 2011년 5,158건에서 2020년 5,510건으로 증가하여 10년간 6.8% 증가함. 2019년 대비 2020년 대부분 지방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 건수가 감소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오히려 증가함. 이에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 건수는 2020년 기준 5,510건으로, 수원(8,406건) 다음으로 많음

[요약 표 6] 인천지방법원 제1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사건 수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행정소송 (인천)	835	894	889	925	895	919	934	1,217	1,316	1,512
1심 형사공판 (인천+부천)	16,582	20,728	16,368	17,157	15,797	16,105	15,350	15,285	15,235	17,471
1심 형사공판 (부천)	5,363	5,772	5,946	6,129	6,227	6,325	5,490	5,598	6,685	7,392
항소심 형사공판 (인천)	5,158	4,529	4,496	5,865	5,765	6,298	5,568	5,019	5,176	5,510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건수를 추정한 결과는 최소 1,844건으로, 이는 현재 대구고등법원 건수 1,812건 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접수되는 항소심은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의 항소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면 되지만 해당 데이터가 없어 고등법원의 심판권을 근거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의 항소심 건수를 추정함
- 소송유형별 인천지방법원(1심 합의)의 사건 처리 중 ‘항소’ 수의 5년 평균값 산출 + 민사본안소송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을 초과하는 항소심 수 추정 = $(578+45+321+875) + 25 = 1,819 + 25 = 1,844$ 건

[요약 그림 8] 인천고등법원 접수될 항소심 건수 추정



○ 형사공판 합의 항소심 접수 건수(875건)는 대구고등법원 뿐만 아니라 대전고등법원보다 높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며, 원외 재판부에 형사재판부를 설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등법원 설립을 통하여 사법행정을 수행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요약 표 7]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단위: 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서울고등법원	18,815	12,066	469	3,749	2,530
인천고등법원(추정치)	1,844	603	45	321	875
대전고등법원	2,277	815	98	496	868
대구고등법원	1,812	725	65	284	738
부산고등법원	3,592	1,430	187	601	1,374
광주고등법원	2,532	914	80	502	1,036
수원고등법원	3,540	1,662	170	560	1,148

주1. 인천고등법원은 추정치이고, 나머지 고등법원은 2020년 자료임

주2: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자료에서 인천고등법원 추정치를 뺀 값임

○ 단위 인구(인구 10만 명)로 환산하면,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단위 인구당 43.5건으로,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보다 많음

[요약 표 8] 인구 10만 명당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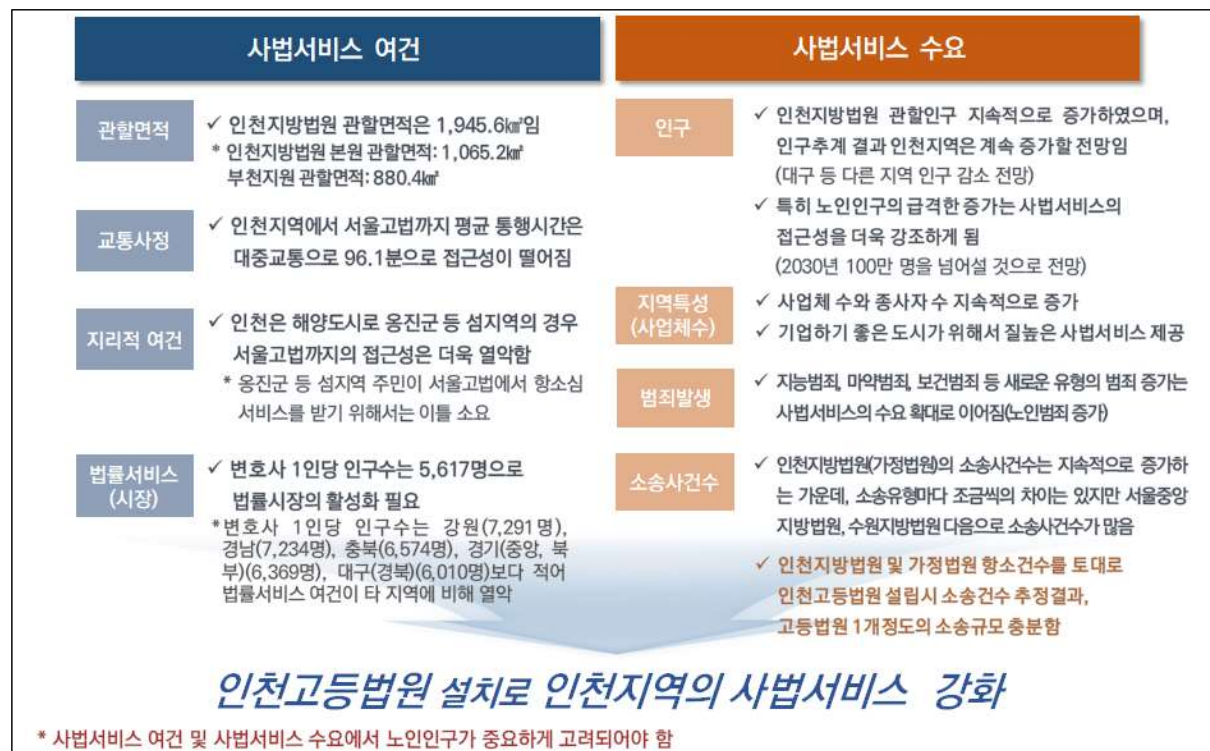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서울고등법원	127.9	82.0	3.2	25.5	17.2
인천고등법원(추정치)	43.5	14.2	1.1	7.6	20.7
대전고등법원	41.1	14.7	1.8	9.0	15.7
대구고등법원	35.8	14.3	1.3	5.6	14.6
부산고등법원	45.7	18.2	2.4	7.6	17.4
광주고등법원	43.8	15.8	1.4	8.7	17.9
수원고등법원	41.0	19.2	2.0	6.5	13.3

주1. 인천고등법원은 추정치이고, 나머지 고등법원은 2020년 자료임

주2: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자료에서 인천고등법원 추정치를 뺀 값임

[요약 그림 9]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



3.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 사례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로 본 설립 논거

1)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 사례에서 본 이슈 및 시사점

○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 사례에서 본 이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요약 표 9] 고등법원 설립 사례에서 본 추진 배경 및 주요 이슈

구분	추진 배경 및 주요 이슈	인천에의 시사점
수원시 고등법원 설치 사례	• 사법제도 발전의 필수요소(재판 비용의 최소화와 법원への 접근용이) 결여 • 경기도민의 법률서비스 질 저하 • 2006년 지방 법조인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관련 법안 첫 발의, 2011년 서명운동 전개, 2012년 3차 관련 법안 발의, 2015년 수원고법등 협치업무협약식, 2019년 고등법원 설치	• 수원시 고등법원 설치 사례에서 나타난 추진 배경은 인천시와 동일 •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장기간의 시간(13년 이상) 소요
울산시 원외재판부 설치 사례	• 사법서비스 질 향상 • 지방분권 정책으로서 사법권의 분권 필요 •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조차 없음을 강조 • 울산 및 양산 주민의 법원 접근권, 즉,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	• 인천시와 같은 광역시급에서 지방분권 정책으로서의 사법권 분권 필요 강조
의정부(경기 북부 지역) 고등법원 설치 요구 사례	•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의 분권화 • 최근 3년간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증가 •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 • 지방분권적 행정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사법행정의 자율성 보장	• 인천시와 같이 인구증가 지역, 통일 대비 고등법원 설치 요구 •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우 인천시와 권역 다름 여지
해외사례	• 미국은 각 주의 필요와 전통에 따라 독특한 법원 조직 구성, 지속적으로 연방고등법원 신설 요구가 있으나 13개로 유지, 다만, 순회법원제도로 문제 해결 • 독일은 토지와 인구 규모에 따라 복수의 고등법원 설치 가능, 지방분권 및 자치에 따른 자치적 사법시스템 정착	•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고등법원 설치 사례에 직접적 시사하는 바가 약함 • 지방자치, 지방분권 문화 맥락 재판수요 대응

2) 인천시민 및 전문가 수요조사 분석 결과로 본 설립 논거

(1) 조사개요

○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 2022.06.15.~2022.06.18. 인천지방법원 앞 직접 대면 설문조사
- 총 표본 수: 262명(남: 131명 / 여: 130명, 사법서비스 경험자 194명)

○ 전문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2022.06.12.~2022.06.15. 이메일, SNS를 활용한 서면조사

- 총 표본 수: 32명(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최대 유도)
- 인천지역 관내 업무 비율 73.06%, 자기 사건 항소심 사건 비율 20.52%

(2) 조사결과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음 90.8%
 -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증대 90.4%
- 고등법원 미설립 이유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 82.1%
 -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 79.1%
- 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 개인만족도
 - 이용자 시간적 비용 절약 93.1%
 -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 88.9%
 -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 82.5%
- 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 도시경쟁력
 - 지역 내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기대 87.4%
 -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85.5%
 - 지역 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 85.0%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방안 및 정책적 노력
 -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 필요 94.2%
 -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마련 91.2%
 -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 필요 90.5%
 - 인천 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 88.1%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 87.8%

◆ 전문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사법서비스 전문가(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인천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한 인식

-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음 100%
-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증대 100%

○ 고등법원 미설립 이유

-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 87.5%
- 인천 위상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 87.5%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 84.4%

○ 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 개인만족도

- 이용자 시간적 비용 절약 100%
-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 93.8%
- 인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 제공 효과 84.4%

○ 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 도시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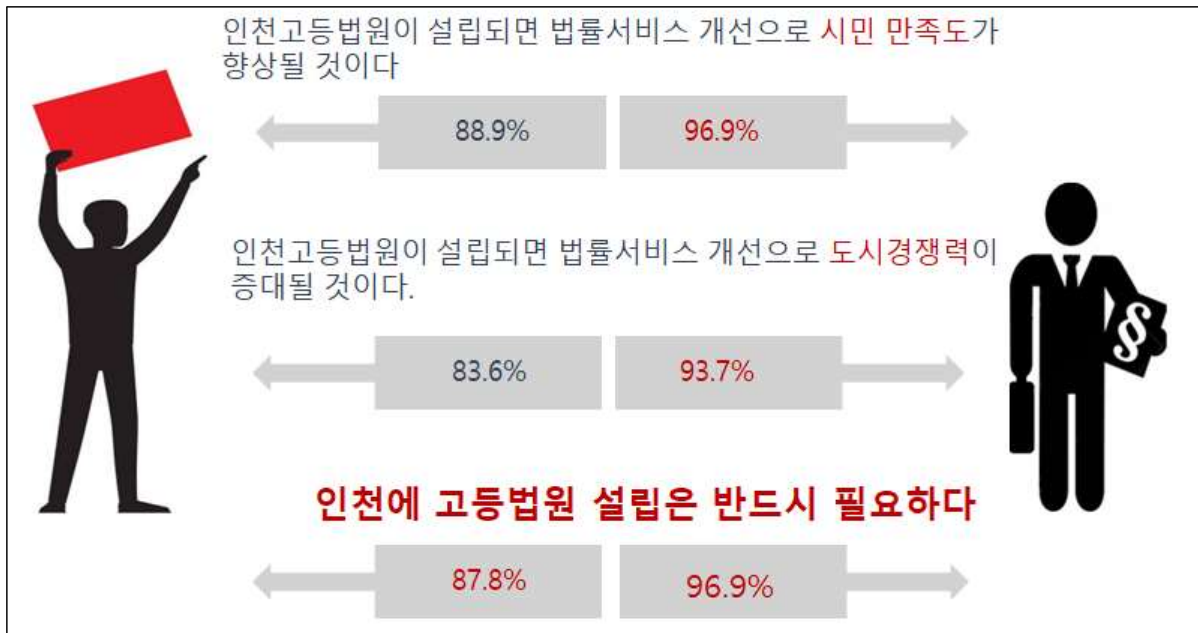
-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90.7%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 구축 90.6%
- 지역 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 87.6%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방안 및 정책적 노력

-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마련 96.9%
-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 필요 96.9%
-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 필요 96.9%
- 인천 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 93.8%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 96.9%

[요약 그림 10]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



3) 사례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로 본 시사점

- 사법서비스의 지역 분산과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외재판부 설립을 통한 고등법원 설립 이슈 제한에 대한 대응 필요
- 직접적인 사법서비스 경험자인 시민과 제공자인 변호사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고 주장하고 있음
-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편의성 측면 및 법원행정의 균형발전 취지 뿐만 아니라 대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주장 필요
- 인천 지역적 관점에서 사법서비스의 전문성, 도시경쟁력 및 지역 내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고등법원 설립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내 로스쿨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대법원과 국회,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해야 하며, 인천시민들의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노력들이 필요함이 제시되었음

4. 인천고등법원 설립 경제성 효과 분석

1) 전제 및 한계

- 사법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계열 통계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연구에서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추정과 산출의 어려움은 법원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한계로 이해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범위에 따른 법률 소외지역의 발생과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왕복하는 거리에 따른 불편함을 경제적 손실로 간주
- 이에 따라 비용은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건축비, 인건비 및 시설 유지 비용, 교통이용비용(통행시간 가치 1인 1시간 대중교통 비용 17,260원, 승용차 22,775원에 대하여 2016년 기준 국가교통 DB 활용)으로 추정
- 위와 같은 비용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함

2) 비용 추계 결과

-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 시 발생하는 접근시간 감소 효과를 화폐가치화 방법을 통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
 -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소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으로 나타남)
 - 국가교통DB(<https://www.ktdb.go.kr/www/index.do>) 2016년 “통행시간 가치”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시간을 가치로 환산한 연구를 참고하면, 1인, 1시간의 대중교통(버스)의 비용은 17,260원, 승용차는 22,775원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음

[요약 표 10] 접근시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단위: 명, 원)

구분	이용자 수			시간가치 (원/인 · 시간)	비용산정(원)		
	이용자수 (항소건수)	1건당 참석자수	1건당 방문횟수		소요시간	비용	계
승용차	738	4	3	22,775	1.192	27,149	240,431,544
대중교통(버스)	1,106	4	3	17,260	1.602	27,651	366,984,072
계	1,844	-	-	-	-	-	607,415,616

○ 비용절감효과는 2016년 국가교통DB 값에 대하여 매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도별 편익을 계산하였음

- 2016년 약 607백만 원 대하여 연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

[요약 표 11] 연도별 비용절감효과

(단위: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684,048,640	697,729,612	711,684,205	725,917,889	740,430,247	755,244,971

○ 이인재(2015)는 인천과 서울 원거리 이동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이상적인 기준 및 현실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재의 수치 및 기준을 적용하여 재검토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인재(2015)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고등법원 유치로 인해 형사와 행정소송 항소사건만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현실적인 기회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현재가치는 최소 12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외 사법서비스 향상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강화로 인하여 인천시민들이 얻는 심리적, 사회적 편익과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및 인천시의 위상 강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원외재판부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을 추가하면 이로 인한 추가 편익이 12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³⁾

[요약 표 12]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경제적 편익(행정, 형사공판 항소만을 계상할 때)

현재가치(순편익)	기준년 +1의 현재가치	기준년 +2의 현재가치	...	기준년 +40의 현재가치
약 126억 원 $= \sum_{i=1}^{40} (\text{기준년} + i \text{의 현재가치})$	736백만원 / 5%	736백만원 / 5% ⁽²⁾	...	736백만원 / 5% ⁽⁴⁰⁾

3) 위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만을 감안한 것으로 이인재(2015)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모두 합쳐서 40년간 320억 원으로 추정한 값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임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 인천지역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고려하여 분석된 연도별 비용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인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생산유발효과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3,202억 원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7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여 명이 발생함
- 모든 비용과 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지수입 및 주민만족도, 법률서비스 제공의 지방균형, 고등법원 이전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발생 등 정책적인 타당성 등을 고려한다면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경제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요약 표 1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경제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1.797)	30,053	253,267	11,997	12,277	12,563	320,157
	부가가치유발효과(0.774)	12,944	109,087	5,167	5,288	5,411	137,897
	취업유발효과(11.6)	186명	1,624명	78명	79명	81명	2,047명
효과 계		42,997	362,354	17,164	17,565	17,974	458,054

*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발생하는 취업유발인원으로 계상함

4) 비계량적 효과

-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계량적인 편익 이외에 비계량적인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주요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음
 -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분권의 효과성 제고
 - 법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 수도권 지역 교통체증의 완화
 - 고령화시대의 노령인구의 법원 접근성 증진 및 서비스 수요 충족
 - 인천지역 내 기업유치 가능성 제고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관리 방안

○ 인천지역 내 입지후보 선정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

- 입지선정을 위한 경쟁과열의 문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이익 실현을 위한 갈등으로 인한 인천지역 전체의 숙원사업으로써 절박성 저하의 부정적 요인
- 인천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찾기 위한 협력과 책임 있는 모습, 공통된 의지 필요

○ 인천지역 외 고등법원 설립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와의 갈등

- 의정부 및 경기북부의 자치단체들은 사법 접근성 향상, 주민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편익 창출 등을 위한 고등법원 설립 요구
- 인천광역시에는 보다 합당한 근거와 협력방안 모색, 경기북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권(고양, 파주) 조정 등 다양한 방향과 전략 도출 필요

○ 고등법원 설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갈등

- 수원고등법원 설립의 경우 부지와 설립방식의 갈등, 예산편성과 증액의 지연 문제 발생
- 고등법원 설립과 관계된 법 개정, 예산확보 등을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설득 과정 필요

○ 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치적 갈등

- 고등법원 설립법안은 회기 종료, 발의한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정치적 이슈가 높은 법안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 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도출 실패 등의 상황으로 폐기 또는 지연되는 경우 발생
- 법안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계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도출을 위한 합의된 노력 필요

○ 사법구조 및 사법분권의 문제

- 재판부 및 판사 증가로 인한 재판 결과의 통일성 저해, 지방의 우수한 법관확보의 어려움, 지역유착 우려, 법령해석의 이질성 등을 문제 제기 존재
-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의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법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 과정의 중요성 주장 필요

○ 지역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갈등

-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불일치, 변호사들의 사무소 위치에 따른 입지 입장차이 문제, 지역 주민들간의 민민갈등 발생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재의 다양화와 활성화 필요
- 이 외에 법원 설립 후의 청사주변 교통, 주차, 안전 등의 민원발생 예측과 사전점검, 선제적인 적극 행정 필요

[요약 표 14]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고등법원 설치기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검토의견
지역주민의 법원접근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강원, 경기북부 등의 지역)에 비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 다른 지방법원(강원, 경기북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소요됨(섬 지역 제외) - 옹진군 섬지역의 경우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요되고, 직선거리도 강원지역보다 훨씬 떨어져 있음 - 지역주민의 접근성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노인인구로, 인천지역의 경우 10년 후인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고등법원 규모 측면 (관할구역 및 인구수 측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규모(4,224,243명)는 현재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의 관할인구보다 90만명 적음	- 인천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인구추계 결과 2037년 43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임 - 이에 반해 대구고등법원 2022년, 광주고등법원 2049년부터 관할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인구추계 결과 2037년 대구고등법원 관할지역 인구는 450만 명으로 감소하여 인천지법 관할인구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사건수 측면	2019년 기준 기존 고등법원과 비교시 인천고등법원(안)의 접수 사건 수는 현재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의 접수 사건 수보다 적을것으로 예상	- 인천지방법원의 소송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타 지방법원과 비교시, 인천지방법원의 소송사건 수는 많은 편으로, 대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음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접수 건수는 최소 1,844건으로 추정,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접수 건수 1,812건(2020년 기준) 보다 많음
원외재판부 설치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내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위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개원되어 운영중임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함 * 원외재판부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 - 다른 원외재판부와 비교 시 인천지역의 항소심 수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함 * 민사와 가사재판부의 규모도 인천의 소송건수에 비해 작음 - 따라서 원외재판부에 형사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목차

chapter 1

연구개요

03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03
04

chapter 2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11

1.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제도 및 객관적 기준 검토
2. 인천지역 특성과 사법서비스 현황
3.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추가 이슈 및 검토사항

11
37
65

chapter 3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사례

79

1. 고등법원 설립 국내사례
2. 고등법원 설립 해외사례

79
85

chapter 4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95

1. 조사개요
2. 일반시민 수요조사 결과
3. 전문가(변호사) 수요조사 결과

95
98
104



목차

chapter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115

- 1.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115
- 2. 비계량적 효과 분석 134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9

- 1. 현황분석으로 본 고등법원 설립 논거 139
- 2. 사례와 수요분석 결과로 본 설립 논거 145
- 3. 고등법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이슈 147
- 4. 경제성 분석결과와 한계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57

표 목차

[표 2-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별표 1] 일부)	12
[표 2-2] 고등법원 관할구역	12
[표 2-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3] 일부)	13
[표 2-4]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5] 일부)	13
[표 2-5] 각급 법원의 심판권 규정	16
[표 2-6] 고등법원 관할범위	22
[표 2-7] 고등법원의 법관현황	22
[표 2-8]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변화와 비중	23
[표 2-9]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2020년 기준)	24
[표 2-10] 고등법원 본안소송 비중(2020년 기준)	26
[표 2-11] 고등법원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 연도별 변화	27
[표 2-12] 고등법원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 연도별 변화	28
[표 2-13] 고등법원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 연도별 변화	29
[표 2-14] 고등법원 항소심 행정소송 수 연도별 변화	29
[표 2-15] 인구 10만 명당 전체 항소심 건수	31
[표 2-16]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	32
[표 2-17]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	32
[표 2-18]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	33
[표 2-19]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행정소송사건 수	34
[표 2-2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 종합	36
[표 2-21]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면적	38
[표 2-22]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성	39
[표 2-23] 인천 도서 지역의 배편 운항시간	41
[표 2-24] 변호사 현황	44
[표 2-25] 인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1심 합의사건 및 항소 수	62
[표 2-26] 1심 단독 소송물가액 2억 원 초과 사건과 항소율 5년 평균	62
[표 2-27]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63
[표 2-28] 인구 10만 명당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64
[표 2-29] 고등법원 심판권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재판사무 범위	66
[표 2-30] 원외재판부 설립 현황(2022년 8월 기준)	66
[표 2-31] 원외재판부에 설립된 재판부 비교	69
[표 2-32] 원외재판부가 설립된 지방법원의 소송유형별 1심 합의사건의 항소율(2020년)	72

표 목차

[표 2-33] 항소법원으로 원외재판부 설치 주장 이유	74
[표 2-34] 인천고등법원 설립 노력	74
[표 2-35] 인천고등법원 설립 비용	75
[표 3-1] 수원고등법원 설립 추진 타임라인	81
[표 4-1] 응답자(일반시민) 특성	96
[표 4-2] 응답자(전문가) 특성	97
[표 4-3] 일반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98
[표 4-4]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미설립에 대한 인식	99
[표 4-5]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100
[표 4-6]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101
[표 4-7]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요소에 대한 인식	102
[표 4-8]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103
[표 4-9] 전문가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104
[표 4-10]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미설립에 대한 인식	105
[표 4-11]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106
[표 4-12]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107
[표 4-13]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요소에 대한 인식	108
[표 4-14]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109
[표 5-1]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기준	118
[표 5-2] 인천고등법원 설립 비용요소	119
[표 5-3] 고등법원 관할구역 및 사건현황	120
[표 5-4]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비용추계	120
[표 5-5] 접근시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122
[표 5-6] 연도별 비용절감 효과	122
[표 5-7]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경제적 편익	124
[표 5-8] 연도별 비용 추계와 비용절감 효과	125
[표 5-9] 지역산업연관표 대분류 및 통합부문 대조표	126
[표 5-10] 지역경제의 산업별 구성	127
[표 5-11] 총산출액, 최종수요 및 취업자 구성	127
[표 5-12] 총공급 및 총수요 구성	128
[표 5-13] 산업별 부가가치율	128
[표 5-14] 최종수요 구성 및 지역자급율	128



표 목차

[표 5-15]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	130
[표 5-16]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130
[표 5-17]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131
[표 5-18]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131
[표 5-19] 분류별 경제 파급효과 분석	132
[표 5-20] 분류별 경제 파급효과 지역간 비교 분석(건설부문)	133
[표 6-1]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가정법원의 소송사건 수 종합비교	142
[표 6-2]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	144
[표 6-3]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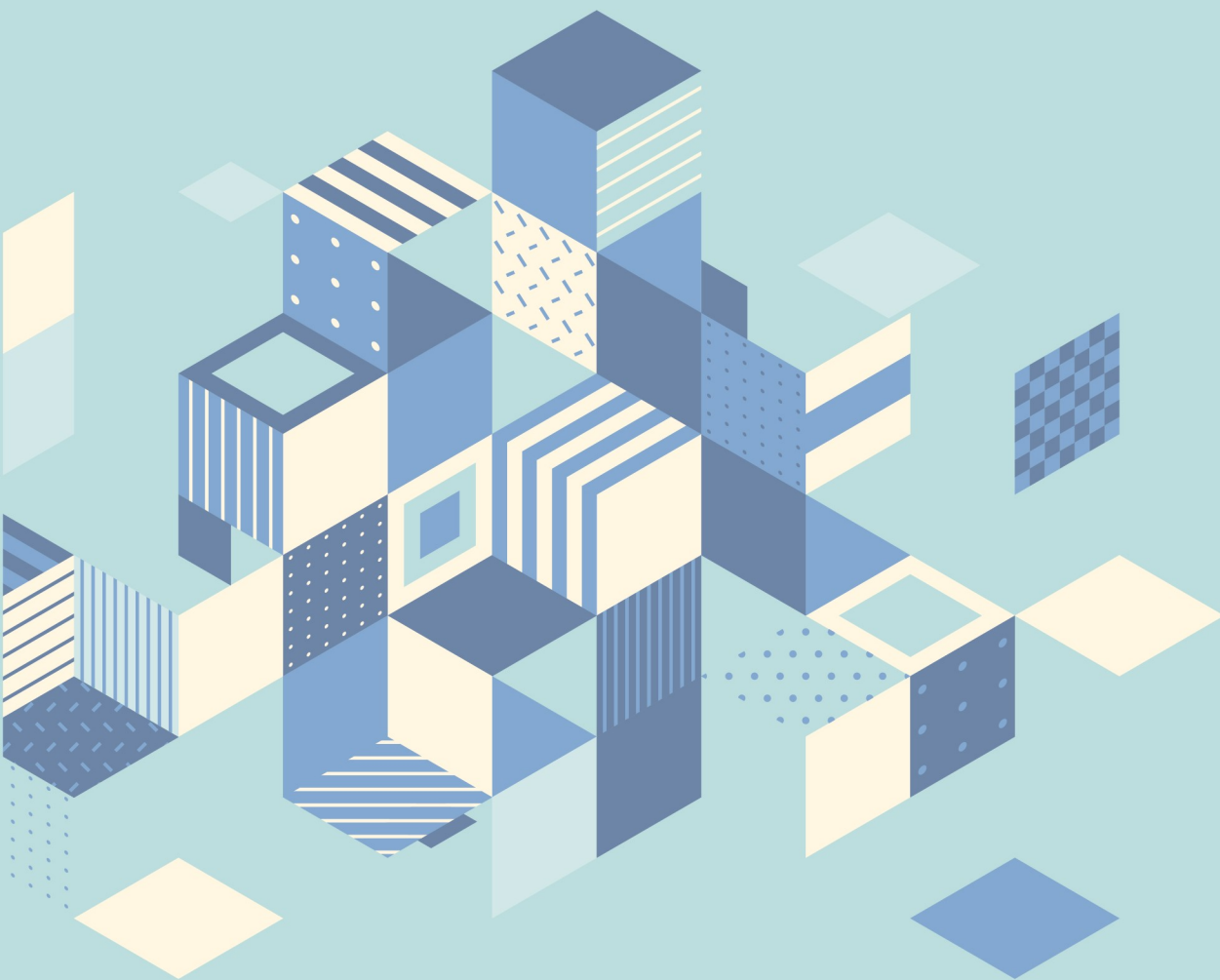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범위	4
[그림 1-2] 연구 방법	5
[그림 1-3] 연구흐름도	7
[그림 2-1] 심급제 및 상소절차	15
[그림 2-2] 각급 법원의 심판권	15
[그림 2-3] 법원 조직도	17
[그림 2-4]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18
[그림 2-5]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18
[그림 2-6]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변화	23
[그림 2-7]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2020년 기준)	25
[그림 2-8] 고등법원 본안소송 비중	26
[그림 2-9] 판사 1인당 소송 건수(2020년 기준)	27
[그림 2-10]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 연도별 변화	30
[그림 2-11]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	35
[그림 2-12]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수요 분석틀	37
[그림 2-13]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38
[그림 2-14] 인천지역 도서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접근성	40
[그림 2-15] 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 비교 ..	42
[그림 2-16] 전국 변호사 현황	43
[그림 2-17]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수	45
[그림 2-18]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 및 노인인구 추계	46
[그림 2-19]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48
[그림 2-20] 인천지역 범죄발생 건수	49
[그림 2-21] 노인피해자(60세 초과) 및 노인범죄자(65세 이상) 현황	50
[그림 2-22]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사건 수	51
[그림 2-23]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 수	52
[그림 2-24] 제1심 민사본안사건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소송 건수	53
[그림 2-25] 제1심 가사소송 사건 수	54
[그림 2-26]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 수	55
[그림 2-27] 1심 및 항소심 가사소송 중 '재판상 이혼' 현황	55
[그림 2-28] 제1심 행정소송 사건 수	57
[그림 2-29]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 수	58

[그림 2-30] 항소심 형사공판 사건 수	59
[그림 2-31]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수	60
[그림 2-32] 인천고등법원 접수 항소심 사건 수 추정 방법	61
[그림 2-33] 인천고등법원 접수될 항소심 건수 추정	63
[그림 2-34] 인천원외재판부의 조직도	68
[그림 3-1] 미 연방순회법원	85
[그림 3-2] Germany Judicial Map	89
[그림 3-3] Japan Judicial Map	90
[그림 5-1] 지역간 이출입 구조	129
[그림 6-1] 서울고등법원 현황 및 사법서비스 시사점	140
[그림 6-2]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	143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자치분권 제도가 정착화되고 정치와 입법, 행정 분야에서는 자치분권적 맥락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사법제도에서는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사법서비스 전달과 자치분권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에 제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으로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대두
- 이에 반하여 인천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서 미래적 수요에 대한 사법서비스 전달보다는 과거 현황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음. 공급적 측면에서는 사법적 서비스 전달에 대한 현행 제도 유지라는 입법 부문 및 사법 부문의 입장만이 관철되고 있음
- 더군다나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은 수원고등법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는 접근성의 관점에서 거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의 인구 및 사건 수의 추이, 관할지역의 면적 및 교통 접근성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함
- '20.6월 고법 설립을 위한 신동근, 김교홍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고등법원 설립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인천지역 내 사법서비스 수요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연구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강화를 위한 객관적·합리적 논리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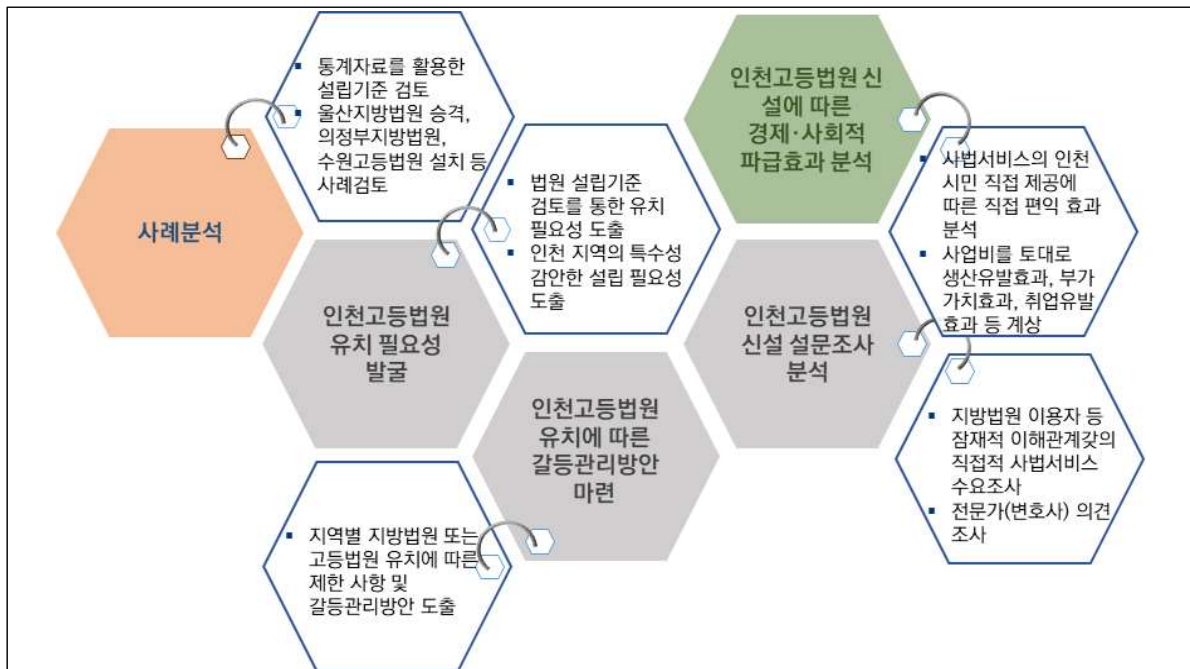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1)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운영 사례 분석
- 설립기준에 따른 인천시 사법서비스 전달 현황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추가발굴 및 갈등관리 방안 마련

[그림 1-1] 연구범위



◆ 연구 방법

○ 사례조사 분석

- 제도 검토: 법원 설치 관련 근거 법령, 고등법원 유치 관련 근거 법령, 설립기준 등 검토
- 사례조사: 의정부, 울산, 수원고등법원 등 검토
- 원내 연구과제 내용을 통한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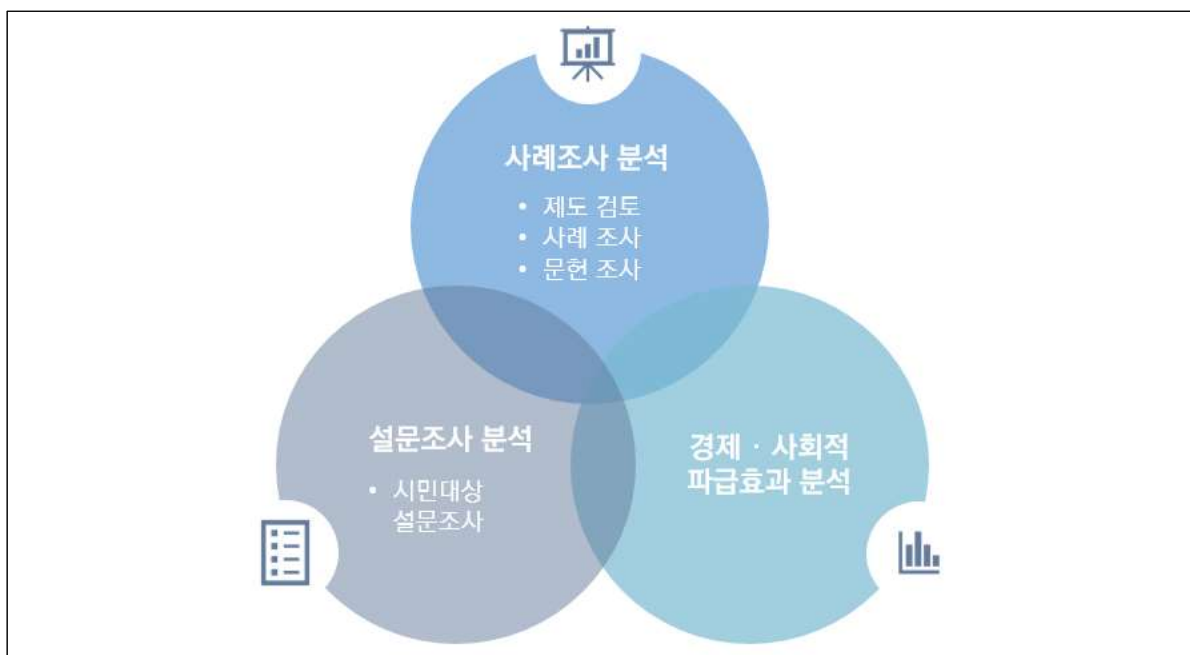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인천시민 직접 제공에 따른 비용분석 및 비경제적 가치 도출
-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계상

○ 설문조사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그림 1-2] 연구 방법



2) 연구 주요 내용 및 연구흐름도

연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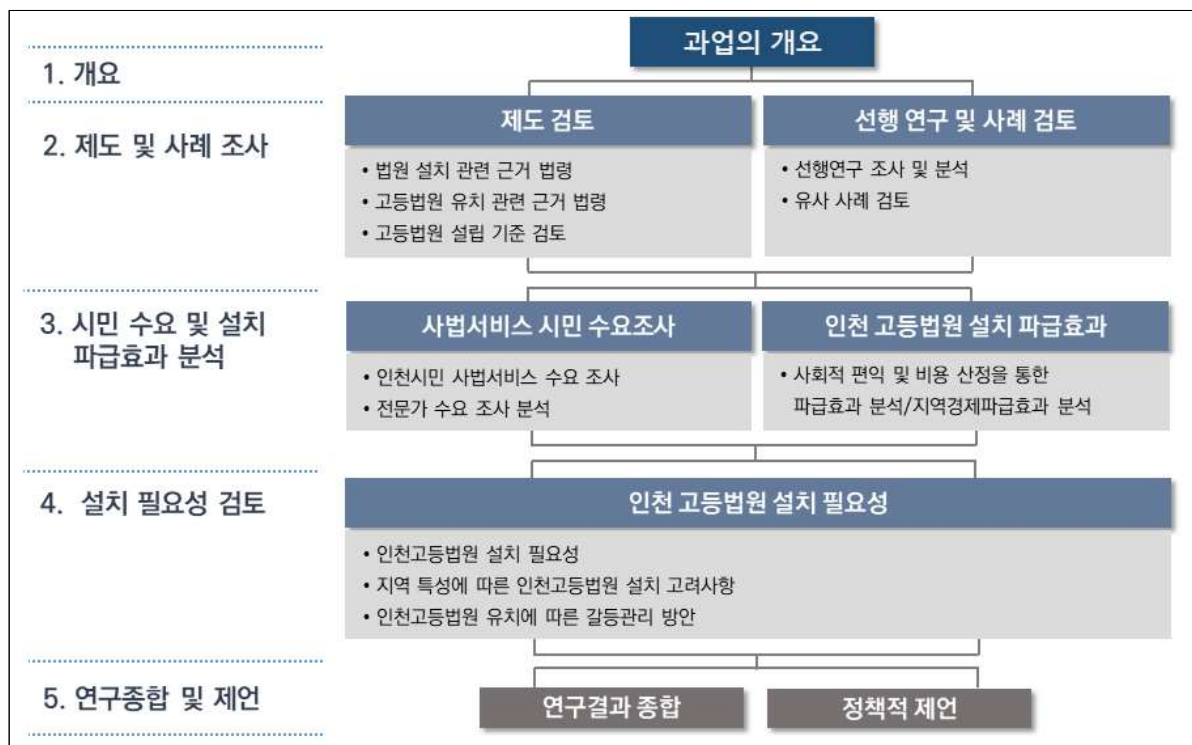
-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운영 사례분석
 - 수원고등법원 추진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한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 과정 등 검토, 그 외 울산지방법원 승격 사례(1998), 의정부지방법원 승격(2004) 등 검토
 - 인천지방법원의 민·형사 및 행정, 가사사건 중 고액사건 수, 항소심 건수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한 설립기준 등의 검토
 - 고등법원별 관할 인구 및 규모, 최근 10년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 인구변화율, 고등법원별 항소심 접수건수,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접수 건수 등
 - 기타 인천시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설립 필요성 제시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인천시민 직접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한국은행(2020)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기관의 사업비를 토대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상
 - 그 외 비경제적 편익효과 도출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고등법원에 대한 인천시민의 직접적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변호사) 대상 수요조사를 통하여 직접적 서비스 대리인(agent)에 대한 고등법원 수요조사
 - 사법지원시설과 사법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필요도 조사
 - 현 인천시민의 사법지원시설 및 사법서비스 활용에 대한 불편도 조사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추가발굴 및 갈등관리 방안 마련
 - 현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 지방분권적 차원에서의 사법서비스 제공 시각 변화 요구
 -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추가 지역적 특성 고려사항 검토

- 인천시는 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법 서비스 접근성 미흡
-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필요
-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갈등 및 제한사항 검토

◆ 연구흐름도

○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3] 연구흐름도



제2장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1.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제도 및
객관적 기준 검토
2. 인천지역 특성과 사법서비스 현황
3.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추가 이슈 및
검토사항



제2장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1.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제도 및 객관적 기준 검토

1) 고등법원 설립 법·제도

(1) 고등법원 설치 근거법령

○ 헌법

- 제101조 제2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2조 제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하위법원의 종류와 조직은 법률에 위임함

○ 법원조직법

-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함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음.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함(동조 제3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함(제2조 제1항)

[표 2-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별표 1] 일부)

고등법원	소재지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수원고등법원	수원시

-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을 보면 각 고등법원 [별표 3], 특허법원 [별표 4],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 [별표 5], 행정법원 [별표 6], 각 사·군 법원 [별표 7],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 [별표 8],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별표 9], 회생법원 [별표 10]에 따라 설정함 (제4조)
- 6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중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도 12개 시군,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함

[표 2-2] 고등법원 관할구역

고등법원	관할구역(광역/기초 기준)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12개 시군) -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부천시, 김포시 강원도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수원고등법원	경기도(19개 시군)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3]을 재구성

- 서울고등법원의 각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표 2-3]과 같음. 이중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함

[표 2-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3] 일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고 양	고양시·파주시
		남양주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	부천시·김포시
	춘천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강릉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원주	원주시·횡성군
		속초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영월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주: 2025.3.1.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 북부지원이 신설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됨

- 서울고등법원에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됨. 인천가정법원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함

[표 2-4]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5] 일부)

고등법원	가정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
	인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수원	수원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부천	부천시·김포시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여주	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	평택시·안성시
		안산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이 외에 서울고등법원에 서울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설치함

(2) 각급 법원의 심판권

- 각급 법원의 심판권은 심급제와 연관됨
-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은 1심, 고등법원은 2심(항소심), 대법원은 3심(상고심)의 형태를 취함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단독재판부가 1심인 경우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재판부가 2심이 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재판부가 1심인 경우 고등법원이 2심이 됨
 - 그러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단독재판부가 1심인 경우에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은 고등법원이 2심이 됨
- 이에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과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즉, 소송가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짐

대법원

재판부(4인) 또는 전원합의체

상고

고등법원

합의재판부(3인)

청구소송물가액
(2억원 이상)

항소

지방법원
(가정·행정법원)

합의재판부(3인)

항소

단독재판부(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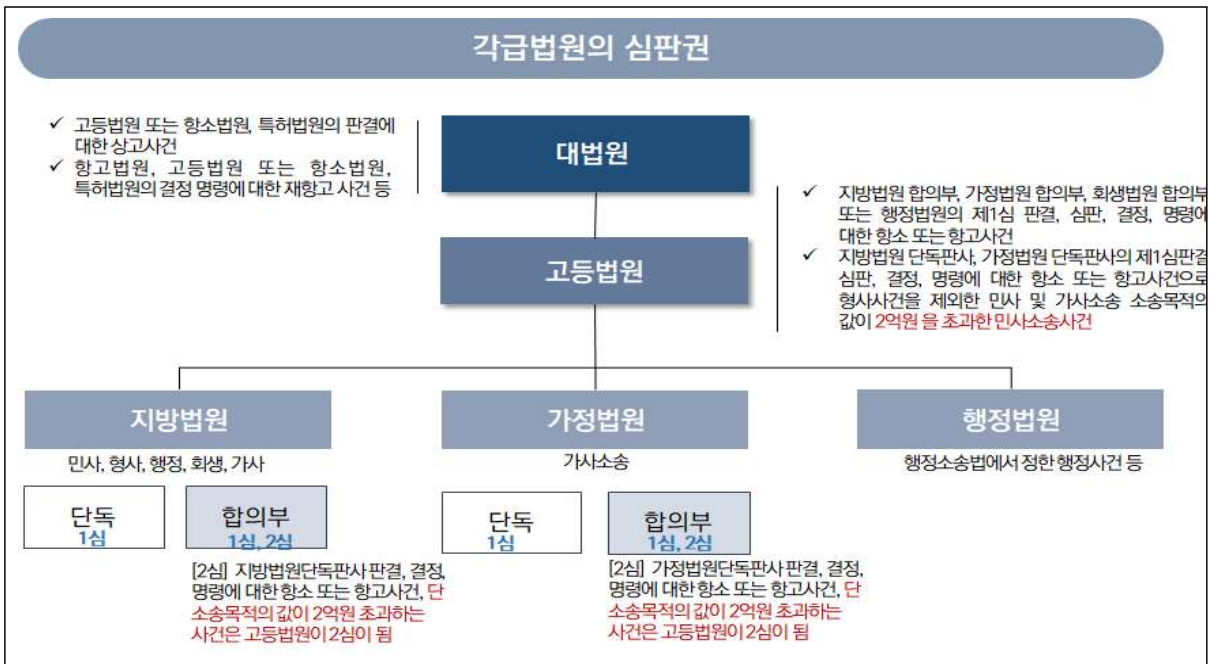
합의 재판부(3인)

상고심 항소심 제1심

<참고> 심급제 및 용어

- 판결형식의 재판: 판결(1심)-항소(2심)-상고(3심)
- 결정과 명령형식의 재판: 결정, 명령(1심)-항고(2심)-재항고(3심)

[그림 2-2] 각급 법원의 심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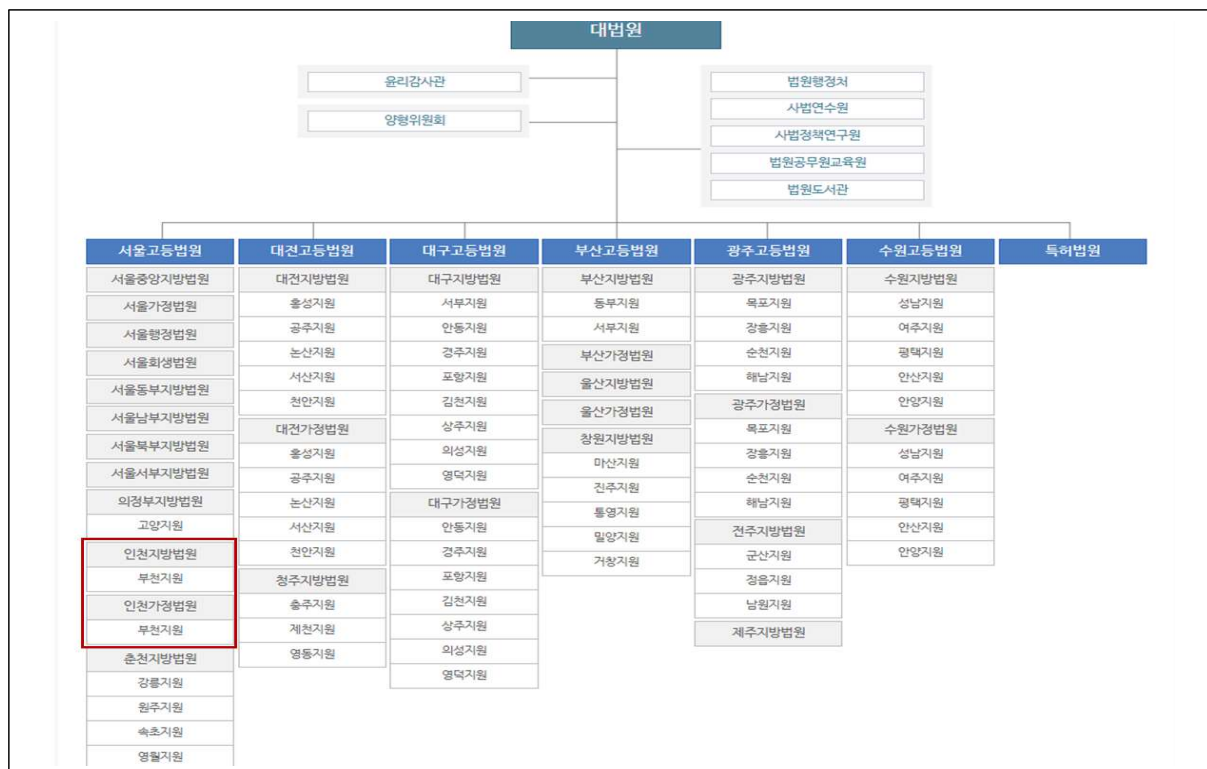
[표 2-5] 각급 법원의 심판권 규정

구분	심판권	규정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권(1심)]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민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을 제외함 -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의 심판권(2심)] -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참고] (28조 2호)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대법원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원조직법 제32조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권(1심)]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대법원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마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 기타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합의부의 심판권(2심)] -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
행정법원	[합의부의 심판권(1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의 4
회생법원	[합의부의 심판권(1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의 심판권(2심)] -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의 7
고등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28조 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28호)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정(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제1호의 사건을 본인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통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28조
대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14조

(3) 우리나라 법원의 구조와 관할구역

- 우리나라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6개 고등법원, 19개 지방법원(42개 지원), 8개 가정법원(22개 지원), 1개 행정법원, 1개 특허법원, 1개 회생법원으로 이루어짐
- 고등법원은 6개가 설치되어 있고,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 청주, 창원, 전북, 제주, 인천, 울산 7개 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방법원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포함하며, 19개의 지방법원과 42개의 지원을 둬
 -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이 그 역할을 함
-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 8개의 가정법원과 22개의 지원이 설치됨
-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 사건을 심판하는데, 서울에 1개의 행정법원이 설치됨
-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 서울에 1개 설치됨
-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으로 대전에 1개 설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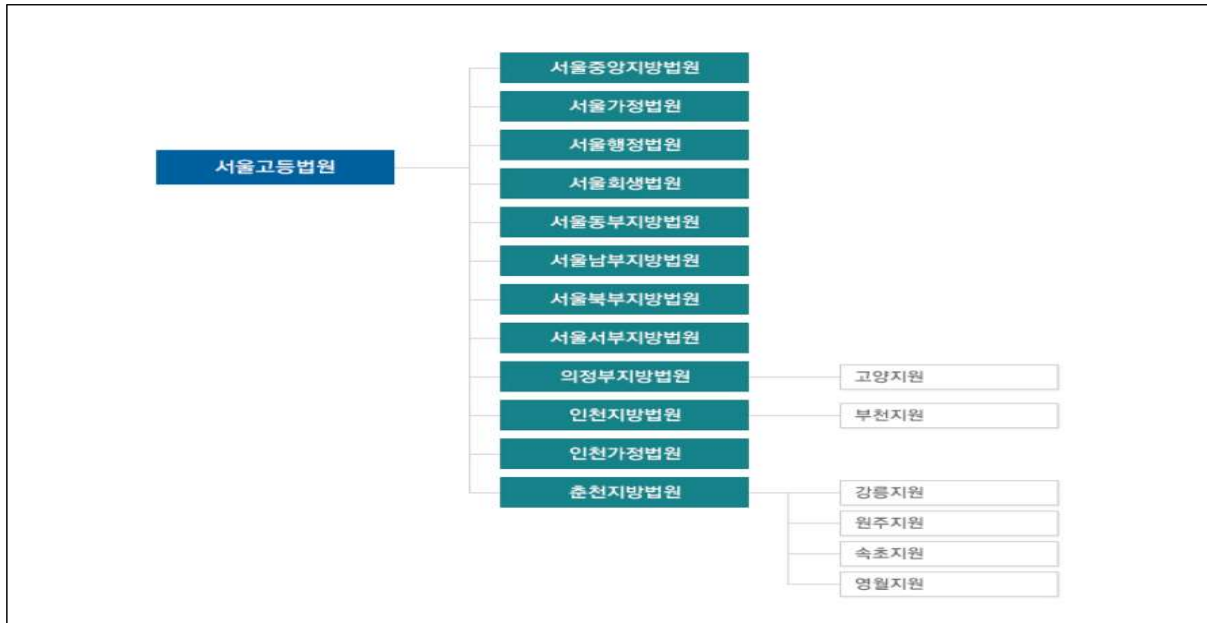
[그림 2-3] 법원 조직도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

-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을 관할함
-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서울, 인천, 강원도와 경기 일부임

[그림 2-4]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자료: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slgodung.scourt.go.kr/slgodung/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그림 2-5]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자료: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

2) 고등법원 설치 시 고려요소

(1) 고등법원 설치기준

-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의 헌법적 기준(백윤기 외, 2007; 이재호 외, 2019; 한광수, 2009)
 -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임
 -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백윤기 외, 2007)
 -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됨(헌법재판소, 1996.1.25. 선고 95헌가5 결정). 이에 1심 법원의 심리구조가 공격·방어를 행사하는데 불충분하여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최대호, 2019)
 - 신속은 재판의 생명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인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백윤기 외, 2007; 송상훈·류민정, 2013; 이재호 외, 2019; 최대호, 2019; 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2헌마44 결정)
-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지방분산 배치(백윤기 외, 2007; 최대호, 2019)
 - 사법서비스의 양적·질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분산배치를 통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으로,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또한 법원에 대한 접근용이성은 현실적으로 재판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음
 -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공간적 편리성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최대호, 2019) 법원의 지방분산 배치의 필요성이 강조됨
 - 따라서 현재 중앙집권적 법원조직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산되어야 함(최대호, 2019)

○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백윤기 외, 2007; 이재호 외, 2019)

- 지방자치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현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구조 역시 분권화를 통하여 사법자치를 실현할 수 있음
-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법자치를 통해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검찰이 상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백윤기 외, 2007)
- 사법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제정하여 분권사법 또는 사법자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최대호, 2019)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원의 지방분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 기존 고등법원이 신설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1986년 부산고등법원, 1992 대전고등법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항소사건을 위하여 대구-서울을 왕래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관할사건 처리의 능률도 저해하고 있으므로 (중간생략) 설치함(손상훈 외, 2013; 이재호 외, 2019)
- (2019년 수원고등법원)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 지역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14.3.18. 개정이유)
- 결론적으로 수원고등법원의 설치에 경기남부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및 사건 수의 증가와 함께 관할기관인 서울고등법원의 업무 과다에 기인함(최대호, 2019)

(2) 고등법원 설치 객관적 지표

○ 고등법원 설치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는 소송사건 수, 장래 인구동향, 관할지역의 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을 들 수 있음(백윤기 외, 2007)

- 법제사법위원회(2020)에 따르면 고등법원을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는 ①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효과, ② 고등법원이 설치될 지역의 인구 및 사건 수, ③ 법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⁴⁾

- **소송사건 수:** 어떤 지역에 고등법원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처리되는 소송사건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점이 검증되어야 함. 이는 소송사건의 적절한 지역적 분산처리로서 의미가 있음
- **인구수:** 소송사건 수는 인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본권의 주체이면서 사법서비스의 이용 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임
- **관할 면적:** 관할 면적의 광대함은 지역주민에게는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사법서비스의 수월한 이용을 위해서는 관할 면적을 고려한 고등법원 배치가 필요함
- **교통 접근성:** 비록 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 고등법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정이 불편하다면 현실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신설이 강력하게 요구됨
- **지역적 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고려할 것이 산업적·경제적 측면으로, 국가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오늘날 기업활동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함. 어떤 지역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의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3) 고등법원 현황 및 사법서비스

(1) 관할범위 및 법관현황

-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인구와 관할 면적 등 관할범위는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월등히 넓음
 - 관할인구는 고등법원 중 가장 많고, 관할인구가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3배 이상,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등법원의 2배 이상임
 - 관할 면적은 고등법원 중 가장 넓음
 -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이 가장 많고, 춘천과 인천 2개 지역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

4) 관련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되어 운영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함

[표 2-6] 고등법원 관할범위

(단위: 명, km)

고등법원	관할인구(명)	관할 면적(km)	관할구역 내 지법·지원 수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18,941,683	23,787	8개 지법 7개 지원	2개 가정, 1개 지원	춘천, 인천
대전고등법원	5,541,579	16,658	2개 지법, 8개 지원	1개 가정, 5개 지원	청주
대구고등법원	5,057,768	19,918	1개 지법, 8개 지원	1개 가정, 7개 지원	-
부산고등법원	7,868,179	12,373	3개 지법, 7개 지원	2개 가정	창원, 울산
광주고등법원	5,780,350	22,769	3개 지법, 7개 지원	1개 가정, 4개 지원	제주, 전주
수원고등법원	8,639,464	4,909	1개 지법, 5개 지원	1개 가정, 5개 지원	-

주: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이후 분석에서 이용하는 사법연감 통계가 2020년 자료로 분석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2020년 인구를 제시함. 다만, 인구현황 분석에서는 최근 통계인 2021년 통계를 이용함
자료: 관할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관할 면적-법제사법위원회(2020)

- 고등법원 법관 수는 서울고등법원이 209명으로 가장 많음
 - 판사 1인당 인구는 서울고등법원이 142,419명으로 가장 적어, 전반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역량과 전문성이 집중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7] 고등법원의 법관현황

(단위: 명)

고등법원	법관 수(명)				인구수(명)	판사 1인당 인구(명)
	법원장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판사	계		
서울고등법원	1	75	133	209	18,941,683	142,419
대전고등법원	1	10	22	33	5,541,579	251,890
대구고등법원	1	8	17	26	5,057,768	297,516
부산고등법원	1	14	30	45	7,868,179	262,273
광주고등법원	1	10	25	36	5,780,350	231,214
수원고등법원	1	13	26	40	8,639,464	332,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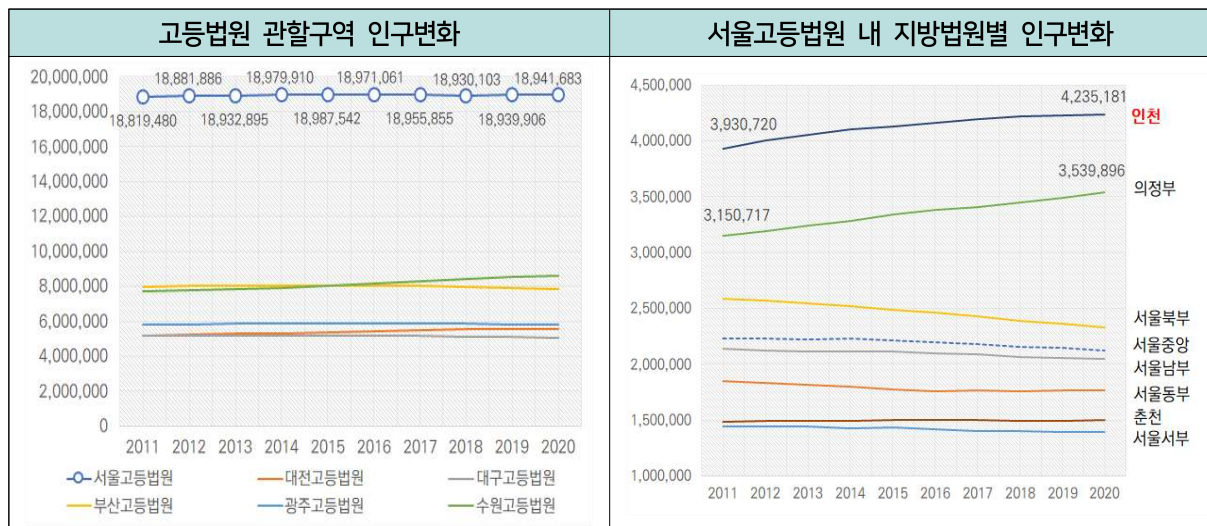
주: 법관 수와 인구수는 2020년 기준임
자료: 법관수-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인구수-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2)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변화

-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2020년 18,941,683명으로 고등법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1년 대비 2020년 12만 명 이상 증가함

- 2020년 기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인구는 전체 고등법원의 36.5%로, 전체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해,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집중 현상을 보임
- 서울고등법원의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증가는 인천지방법원의 인구와 의정부지방법원의 인구증가에 의한 것임
- 즉,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중 서울지역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한데 반해,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인구는 증가함
- 인천지방법원의 인구는 2011년 3,930,720명에서 2020년 4,235,181명으로 10년간 304,461명(7.7%) 증가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의 인구는 2011년 3,102,633명에서 2020년 3,495,197명으로 10년간 392,564명(12.7%) 증가하여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증가를 추동함

[그림 2-6]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표 2-8]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변화와 비중

(단위: 명, %)

구분	2020-2011 관할구역 인구 변화(명)	비중(%), 2020년 기준
서울고등법원	122,203	36.5
대전고등법원	361,789	10.7
대구고등법원	-148,698	9.8
부산고등법원	-127,043	15.2
광주고등법원	-47,640	11.2
수원고등법원	934,128	16.7

(3)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중현황

○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

- 2020년 고등법원 전체 소송사건은 본안 34,412건, 본안 외 42,944건이고,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20,659건, 본안 외 23,557건으로 가장 많음
-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모든 분야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사건 수가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서울고등법원과 다른 고등법원의 사건 수를 서울고등법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을 비교한 결과,
 -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소송사건 중 본안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부산고등법원의 5.8배,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11.4배에 달함
 - 서울고등법원 민사소송 사건 중 본안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등법원의 7.6배,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17.5배임
 - 서울고등법원의 가사소송 사건 중 본안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부산고등법원의 2.7배,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7.9배임
 -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사건 중 본안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부산고등법원의 6.8배,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14.3배임
 -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소송 사건 중 공판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부산고등법원의 2.5배,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4.7배임

[표 2-9]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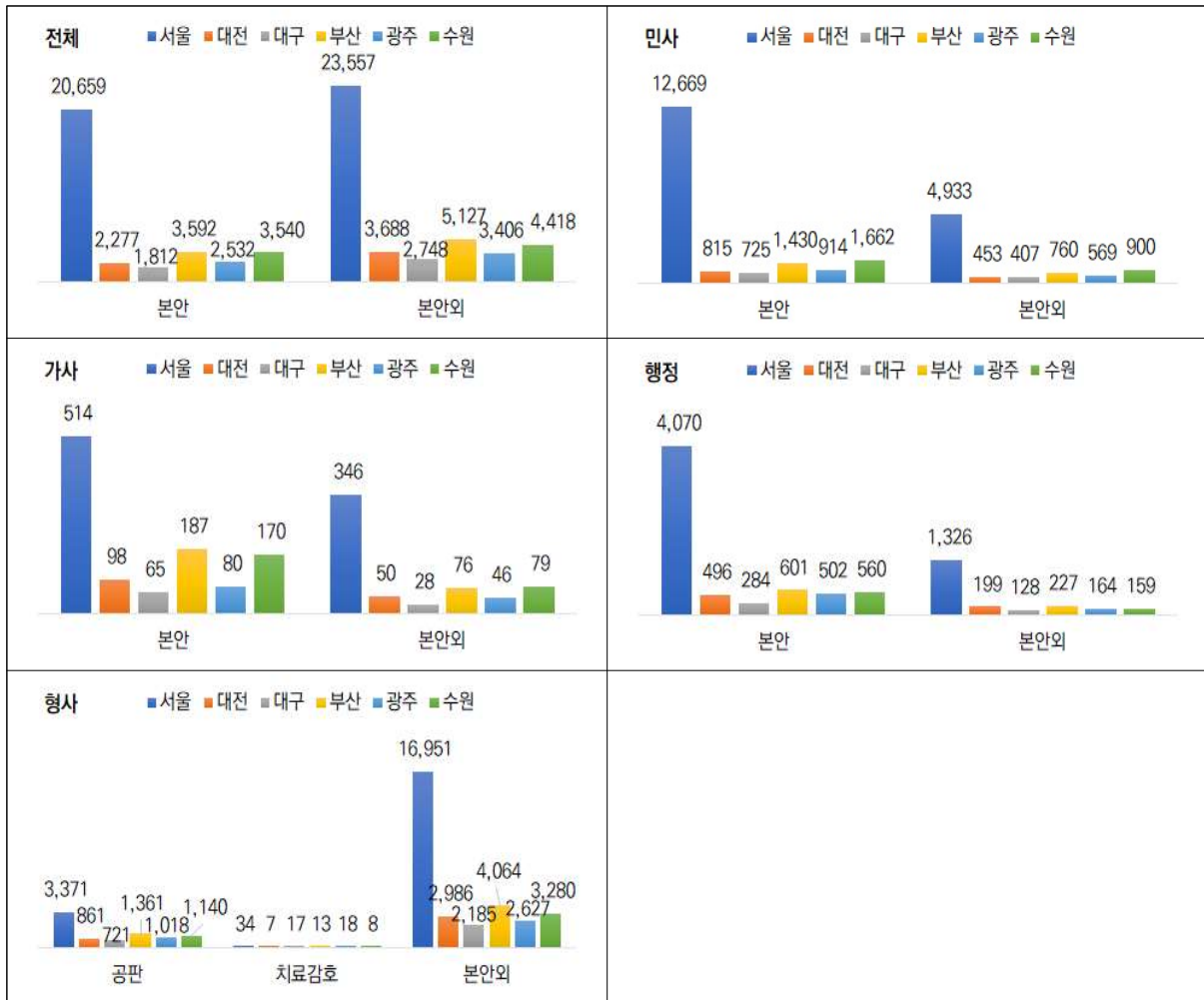
(단위: 건)

2020년 기준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공판	치료 감호	본안 외
서울고등법원	20,659	23,557	12,669	4,933	514	346	4,070	1,326	3,371	34	16,951
대전고등법원	2,277	3,688	815	453	98	50	496	199	861	7	2,986
대구고등법원	1,812	2,748	725	407	65	28	284	128	721	17	2,185
부산고등법원	3,592	5,127	1,430	760	187	76	601	227	1,361	13	4,064
광주고등법원	2,532	3,406	914	569	80	46	502	164	1,018	18	2,627
수원고등법원	3,540	4,418	1,662	900	170	79	560	159	1,140	8	3,280
계	34,412	42,944	18,215	8,022	1,114	625	6,513	2,203	8,472	97	32,093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그림 2-7]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2020년 기준)

(단위: 건)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본안소송의 서울고등법원 비중

- 전체 본안소송 중 서울고등법원의 비중이 60.0%로, 본안소송 절반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됨
- 소송유형별로 보면, 민사소송 69.6%, 가사소송 46.1%, 행정소송 62.5%, 형사소송 39.7%로 서울고등법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절반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됨

[표 2-10] 고등법원 본안소송 비중(2020년 기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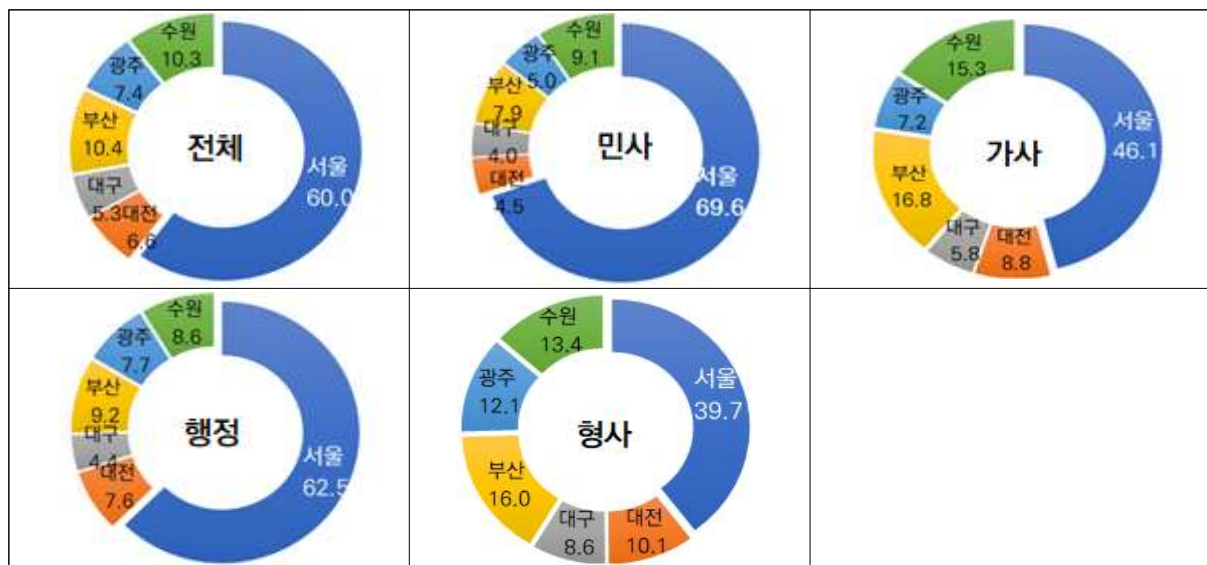
2020년 기준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본안	비중	본안	비중	본안	비중	본안	비중	공판 (지료검호 포함)	비중
서울고등법원	20,659*	60.0	12,669	69.6	514	46.1	4,070	62.5	3,405	39.7
대전고등법원	2,277	6.6	815	4.5	98	8.8	496	7.6	868	10.1
대구고등법원	1,812	5.3	725	4.0	65	5.8	284	4.4	738	8.6
부산고등법원	3,592	10.4	1,430	7.9	187	16.8	601	9.2	1,374	16.0
광주고등법원	2,532	7.4	914	5.0	80	7.2	502	7.7	1,036	12.1
수원고등법원	3,540	10.3	1,662	9.1	170	15.3	560	8.6	1,148	13.4
계	34,412	100	18,215	100	1,114	100	6,513	100	8,569	100.0

주: *는 선거 본안소송이 포함된 값임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그림 2-8] 고등법원 본안소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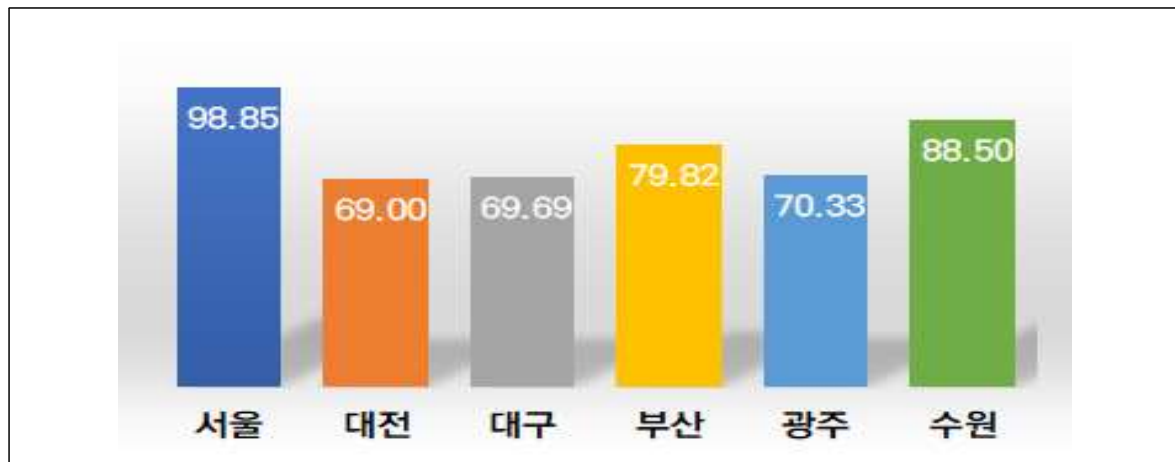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

-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는 서울고등법원이 98.8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원 88.50건, 부산 79.82건, 광주 70.33건, 대구 69.69건, 대전 69.00건 순임
- 서울고등법원은 판사 1인당 거의 100건의 소송을 다루고 있는데, 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소송 건수도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업무가 다른 고등법원보다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9] 판사 1인당 소송 건수(2020년 기준)

(단위: 건)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 연도별 변화

-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 전체 항소심 민사 본안사건 수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2,377건 증가하여 14.9%의 증가율을 보임
- 각 고등법원 별로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대비 2020년 소송 건수가 증가한데 반해,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2011년 대비 2020년 항소심 소송 건수가 감소함
-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9년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8,860건에서 2019년 13,89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20년 다소 감소함

[표 2-11] 고등법원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11,135	11,046	11,839	11,897	11,350	11,586	11,822	8,860	13,897	12,669
대전고등법원	1,065	1,232	1,201	1,373	1,161	1,206	865	849	929	815
대구고등법원	826	813	867	919	879	984	711	685	736	725
부산고등법원	1,741	1,796	2,048	2,067	1,955	1,870	1,487	1,418	1,379	1,430
광주고등법원	1,197	1,219	1,409	1,537	1,520	1,424	1,135	1,049	1,127	914
수원고등법원	-	-	-	-	-	-	-	-	1,246	1,662
계	15,964	16,106	17,364	17,793	16,865	17,182	16,204	13,005	19,427	18,341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 전체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537건 증가하여 93.1%의 증가율을 보임
- 각 고등법원 별로 보면 모든 고등법원의 항소심 가사본안사건이 2011년 대비 2020년 증가함
-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470건에서 2019년 480건, 2020년 514건으로 증가함

[표 2-12] 고등법원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392	440	427	364	461	444	458	470	480	514
대전고등법원	26	47	63	49	34	39	39	54	75	98
대구고등법원	16	10	33	32	28	26	24	17	36	65
부산고등법원	97	81	113	97	54	106	163	131	181	187
광주고등법원	46	57	27	26	35	41	62	61	82	80
수원고등법원	-	-	-	-	-	-	-	-	193	170
계	577	635	663	568	612	656	746	733	1,047	1,114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 전체 항소심 형사공판사건은 2011년 대비 2012년 대폭 증가했다가 감소추세에 있고, 2011년 대비 2020년 882건(-9.3%) 감소함
- 각 고등법원 별로 보면 2019년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의 2011년 대비 2020년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가 감소함
-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1년 대비 2020년 1,689건이 감소하여 33.0%의 감소율을 보여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감소율(-33.0%)이 높음. 이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 영향으로, 2018년까지 서울고등법원 관할 사건이 2019년 수원고등법원 관할로 넘어감에 따라 사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표 2-13] 고등법원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5,094	6,843	5,890	5,834	5,594	6,129	5,728	5,203	4,232	3,405
대전고등법원	938	1,313	1,052	1,127	1,143	996	1,020	1,012	1,050	868
대구고등법원	841	1,186	896	1,046	920	902	846	797	815	738
부산고등법원	1,357	1,551	1,468	1,889	1,685	1,750	1,458	1,572	1,327	1,374
광주고등법원	1,221	1,408	1,222	1,510	1,379	1,350	1,304	1,235	1,243	1,036
수원고등법원	-	-	-	-	-	-	-	-	816	1,148
계	9,451	12,301	10,528	11,406	10,721	11,127	10,356	9,819	9,483	8,569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항소심 행정소송

- 전체 상소심 행정소송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2011년 대비 2012년 대폭 증가했다가 감소추세에 있음. 2011년 대비 2020년 99건 증가함
- 각 고등법원 별로 보면 2019년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의 경우 2011년 대비 2020년 항소심 행정소송 건수가 감소함
-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1년 대비 2020년 672건이 감소하여 14.2%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는 서울고등법원 자체 행정소송 건수 감소와 함께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따른 것임

[표 2-14] 고등법원 항소심 행정소송 수 연도별 변화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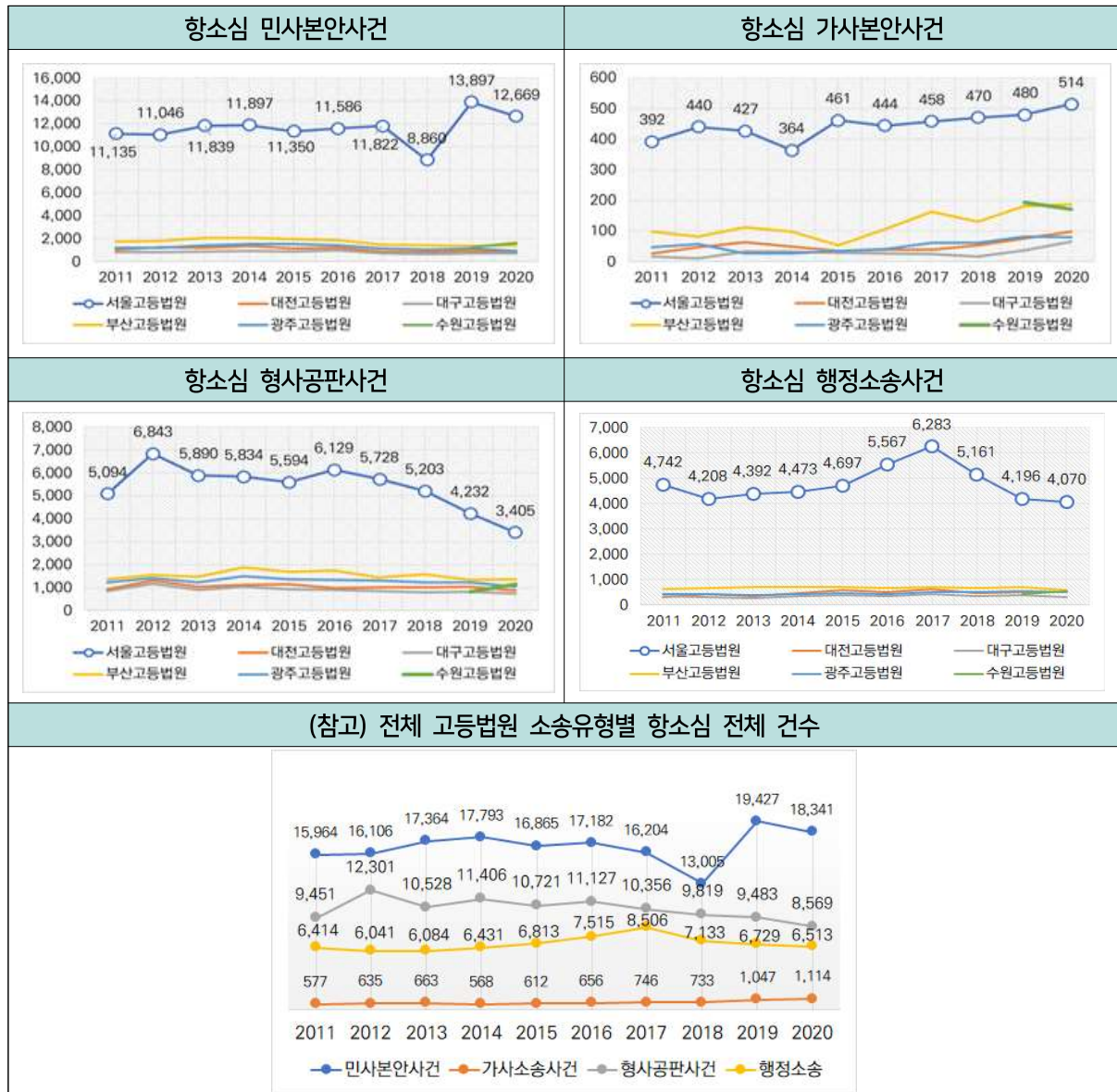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4,742	4,208	4,392	4,473	4,697	5,567	6,283	5,161	4,196	4,070
대전고등법원	318	436	358	478	580	503	614	471	492	496
대구고등법원	328	307	263	358	364	356	409	344	376	284
부산고등법원	622	649	707	690	708	681	712	664	699	601
광주고등법원	404	441	364	432	464	408	488	493	524	502
수원고등법원	-	-	-	-	-	-	-	-	442	560
계	6,414	6,041	6,084	6,431	6,813	7,515	8,506	7,133	6,729	6,513

자료: 법원행정처(각 년도). 사법연감

- 종합하면, 2019년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사건 수는 행정소송과 형사공판사건을 제외하고 항소심 민사본안사건과 가사본안사건은 증가함

[그림 2-10]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건)



자료: 법원행정처(각 년도), 사법연감

○ 단위 인구(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 연도별 변화

- 단위 인구당 전체 항소심 접수 건수

- 인구 10만 명당 민사본안, 가사본안, 형사공판, 행정 전체 항소심 접수 건수는 2011년 이래 등락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고,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접수 건수는 316.4건임
- 10만 명을 기준으로 한 단위 인구당 항소심 건수가 가장 많은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2020년 기준 109.1건) 다른 고등법원의 2배 이상이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4.0건에서 최대 128.1건의 범위에서 움직임
- 흥미로운 점은 모든 고등법원의 2011년 대비 2020년 단위 인구당 항소심 접수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의 감소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 따른 것임. 즉, 2020년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합치면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접수 건수는 150.1건으로 이는 2011년 113.5건에 비해 증가함

[표 2-15] 인구 10만 명당 전체 항소심 건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113.5	119.4	119.1	118.9	116.4	125.1	128.1	104.0	120.4	109.1
대전고등법원	45.3	57.9	50.7	56.8	54.1	50.4	46.2	43.1	46.0	41.1
대구고등법원	38.6	44.5	39.6	45.3	42.2	43.7	38.5	35.9	38.5	35.8
부산고등법원	47.7	50.9	54.1	59.0	54.7	54.8	47.7	47.5	45.3	45.7
광주고등법원	49.2	53.5	51.7	59.8	57.8	54.8	50.9	48.5	51.2	43.8
수원고등법원									31.6	41.0
계	294.4	326.2	315.1	339.9	325.2	328.8	311.4	279.1	332.9	316.4

주: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각년도),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단위 인구당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 수는 149.1건으로 2011년 이후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음. 이러한 증가추세는 서울고등법원이 추동함
- 즉,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대비 2020년 소송사건 수가 증가한데 반해,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고등법원의 단위 인구당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의 수가 2011년 대비 2020년 감소함

- 서울고등법원의 2020년 기준 단위 인구당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은 66.9건으로, 다른 고등법원의 3~4배 이상임. 그리고 10년간 2018년(46.8건)을 제외하고 60~70건의 범위를 유지함

[표 2-16]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59.2	58.5	62.5	62.7	59.8	61.1	62.4	46.8	73.4	66.9
대전고등법원	20.6	23.5	22.8	25.8	21.5	22.1	15.7	15.4	16.8	14.7
대구고등법원	15.9	15.6	16.7	17.7	16.9	19.0	13.8	13.3	14.4	14.3
부산고등법원	21.8	22.4	25.5	25.7	24.3	23.2	18.5	17.8	17.4	18.2
광주고등법원	20.5	20.9	24.1	26.2	25.9	24.2	19.3	17.9	19.4	15.8
수원고등법원									14.6	19.2
계	137.9	141.0	151.6	158.1	148.4	149.7	129.8	111.2	156.0	149.1

주: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단위 인구당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는 11.5건으로, 2018년까지 5~7건이었던 것이 2019년, 2020년에 약 11건으로 증가함
-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모든 고등법원의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가사본안사건은 2011년 이후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증가추세에 있음
- 서울고등법원의 2020년 기준 단위인구당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는 2.7건으로 가장 많고, 2014년을 제외하고 2.0건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8년 이후에는 2.5건 이상으로 증가함

[표 2-17]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가사본안사건 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2.1	2.3	2.3	1.9	2.4	2.3	2.4	2.5	2.5	2.7
대전고등법원	0.5	0.9	1.2	0.9	0.6	0.7	0.7	1.0	1.4	1.8
대구고등법원	0.3	0.2	0.6	0.6	0.5	0.5	0.5	0.3	0.7	1.3
부산고등법원	1.2	1.0	1.4	1.2	0.7	1.3	2.0	1.6	2.3	2.4
광주고등법원	0.8	1.0	0.5	0.4	0.6	0.7	1.1	1.0	1.4	1.4
수원고등법원									2.3	2.0
계	4.9	5.4	6.0	5.1	4.9	5.6	6.7	6.5	10.6	11.5

주: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단위 인구당 항소심 형사공판 본안사건

-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는 96.9건으로, 2011년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2019년 105.0건으로 증가 후 2020년 다시 96.9건으로 감소함⁵⁾
- 이러한 경향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모든 고등법원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즉, 2011년 대비 2020년 단위인구당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는 부산고등법원을 제외한 모든 고등법원에서 감소함
- 서울고등법원의 2011년 단위인구당 사건 수는 27.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감소 폭이 가장 큰데, 이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 따른 영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광주고등법원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의 단위 인구당 항소심 형사공판 사건 수가 가장 많음

[표 2-18]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27.1	36.2	31.1	30.7	29.5	32.3	30.2	27.5	22.3	18.0
대전고등법원	18.1	25.1	19.9	21.1	21.2	18.3	18.6	18.3	19.0	15.7
대구고등법원	16.2	22.8	17.2	20.1	17.7	17.4	16.4	15.5	16.0	14.6
부산고등법원	17.0	19.4	18.3	23.5	20.9	21.8	18.2	19.7	16.7	17.5
광주고등법원	21.0	24.1	20.9	25.8	23.5	23.0	22.2	21.1	21.4	17.9
수원고등법원									9.6	13.3
계	99.3	127.6	107.5	121.3	112.8	112.7	105.6	102.1	105.0	96.9

주: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단위 인구당 항소심 행정소송사건

-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행정소송사건 수는 58.9건으로, 2011년 이후 등락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2011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모든 고등법원이 2011년 대비 2020년 단위인구당 항소심 행정소송사건 수가 증가하거나 동일하고, 서울고등법원만 감소함. 서울고등법원이 감소한 이유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 따른 것임

5) 이는 이후에 분석하는 바와 같이 범죄의 감소에 따른 것임

- 그리고 인구 10만명당으로 표준화시켜서 비교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단위인구당 항소심 행정소송사건 수는 대전, 부산, 광주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대구와 수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음

[표 2-19]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행정소송사건 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25.2	22.3	23.2	23.6	24.7	29.3	33.1	27.3	22.2	21.5
대전고등법원	6.1	8.3	6.8	9.0	10.8	9.2	11.2	8.5	8.9	9.0
대구고등법원	6.3	5.9	5.1	6.9	7.0	6.9	7.9	6.7	7.4	5.6
부산고등법원	7.8	8.1	8.8	8.6	8.8	8.5	8.9	8.3	8.8	7.6
광주고등법원	6.9	7.6	6.2	7.4	7.9	6.9	8.3	8.4	9.0	8.7
수원고등법원									5.2	6.5
계	52.3	52.2	50.1	55.4	59.2	60.9	69.4	59.2	61.4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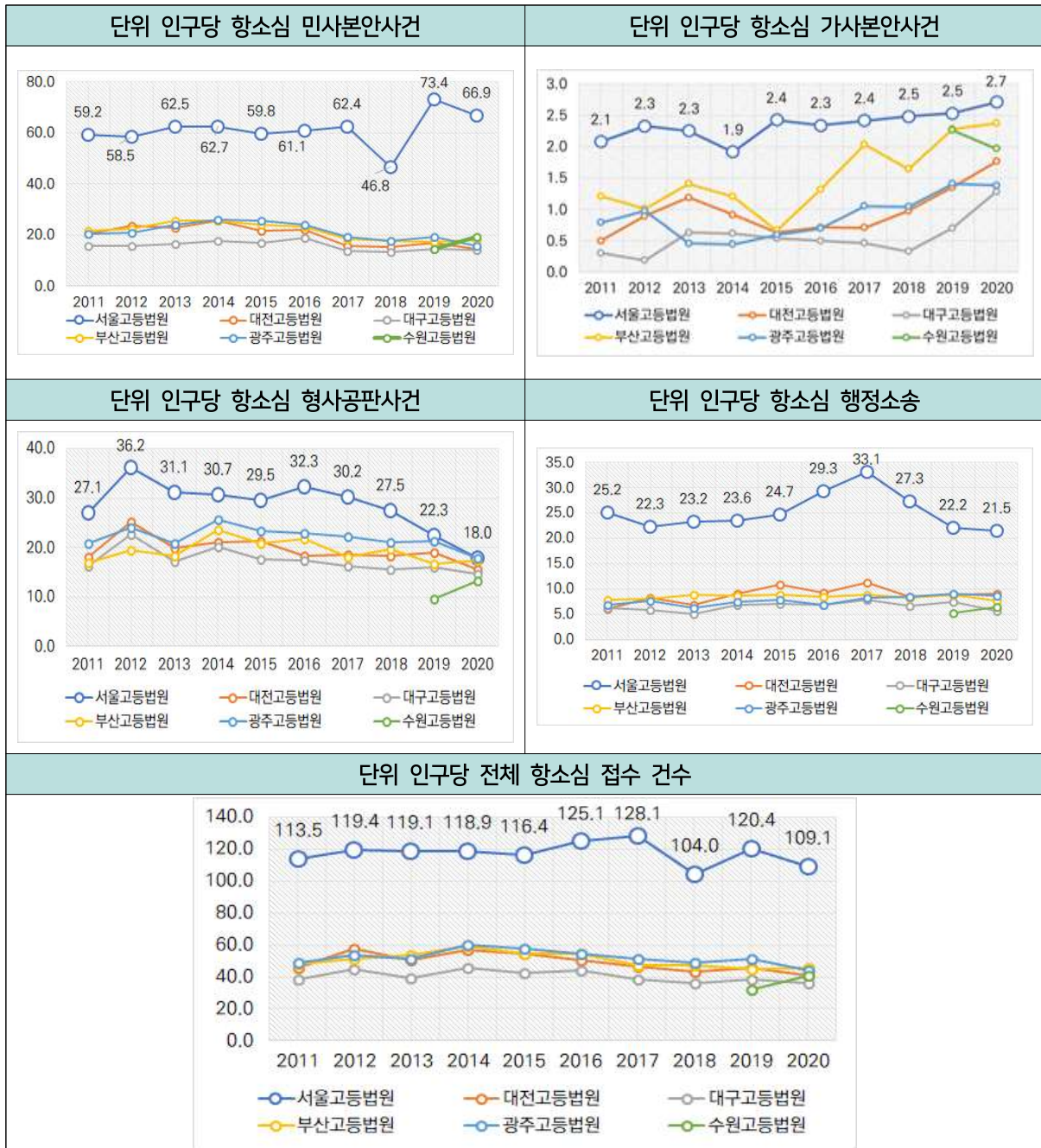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체(각년도),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의 단위인구당 항소심 접수 건수는 다른 고등법원의 2배 이상 이고, 특히 항소심 민사본안 접수 건수는 다른 고등법원보다 3~4배 많음
-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항소심 접수 건수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명으로 표준화한 단위 인구당 항소심 접수 건수 모두 다른 고등법원보다 월등히 많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집중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1]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

(단위: 건/10만 명)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각년도),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각년도 주민등록인구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 현황 종합

-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본안소송 항소심 건수가 고등법원 중 가장 많고,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도 가장 많음. 이를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하더라도 다른 고등법원 보다 2배 이상 많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집중되어 과포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10년간 변화를 보더라도 행정소송과 형사공판사건은 감소하지만,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증가함. 형사공판의 경우 서울고등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법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과 형사공판사건의 감소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에 따른 영향임. 한편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경우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 종합

(단위: 건, %)

		전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종합
고등법원 본안소송 사건 수	20 11	21,363	11,135	392	4,742	5,094	고등법원 중 가장 많음, 두 번째로 많은 부산고등법원의 5.8배, 가장 적은 대구고등법원의 11.4배임
	20 20 (수원)	20,658 (3,540)	12,669 (1,662)	514 (170)	4,070 (560)	3,405 (1,148)	
	증감	- 170 (감소율 0.8%)	+1,534 (증가율 13.8%)	+122 (증가율 31.1%)	-672 (감소율 14.2%)	- 1,689 (감소율 33.1%)	- 민사, 가사 증가 - 민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함 - 행정, 형사 감소는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따른 영향임 - 형사공판은 모든 고등법원 감소
본안소송 비중 (2020년 기준)		60.0	69.6	46.1	62.5	39.7	항소심 본안소송 절반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됨
판사1인당 소송사건 수 (2020년 기준)		98.85					- 고등법원 가장 많음 * 수원 88.5, 부산 79.82, 광주 70.33, 대구 69.69, 대전 69.00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 (2020년 기준)		109.1	66.9	2.7	21.5	18.0	2020년 기준 단위 인구당 항소심 접수 건수는 다른 고등법원의 2배 이상 10년간 형사공판을 제외하고 증가함 - 민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만 증가하고 다른 고등법원 감소함

2. 인천지역 특성과 사법서비스 현황

- 서울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 분산과 관련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여건과 사법서비스 수요를 심도 깊게 분석함
- 사법서비스 여건은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면적, 교통사정 등 접근성, 지리적 특성 등 접근성, 법률서비스 여건 등을 분석함
- 사법서비스 수요는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한 것으로, 인구수(노인인구수), 지역특성(기업체 수 등), 범죄발생건수 등 치안현황, 소송사건 수 등을 분석함
 - 인구수는 사법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노령화와 함께 노인인구수도 중요한 고려 요소임
 - 소송사건 수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의 소송사건 수를 분석하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하는 사건 수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많을수록 고등법원으로의 항소심 건수도 많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각 소송유형별 인천지역의 소송 건수를 분석함

[그림 2-12]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수요 분석틀

사법서비스 여건	사법서비스 수요
 관할면적	 인구수와 노인인구수
 접근성(교통사정)	 지역특성(사업체수 등)
 접근성(지리적 특성)	 범죄발생건수 등 치안현황
 법률서비스 여건(변호사 수 등)	 소송사건수

1) 인천광역시 사법서비스 여건

(1) 관할 면적

- 인천지방법원은 본원과 부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과 경기도의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고, 전체 관할 면적은 1,945.6km²임
-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 면적은 1,065.2km²이고, 부천지원의 관할 면적은 880.4km²임

[그림 2-13]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자료: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incheon.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표 2-21]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면적

(단위: km²)

구분		면적(km)	
본원	인천광역시	1,065.2	
부천 지원	부천	53.5	880.4
	김포	826.9	
계		1,945.6	

(2) 접근성: 교통사정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으로 96.1분, 승용차로 71.5분으로,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왕복 거의 3~4시간 소요됨

- 특히, 강화군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대중교통 171.8분, 승용차 94.5분으로, 대중교통의 경우 거의 3시간이 소요되는데, 다수의 섬의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접근성은 더욱더 떨어짐. 이는 다음에 더 상세하게 분석함

○ 최근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2021년 노인인구 비중 15.7%), 노인범죄와 함께 노인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법원 접근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2-22]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성

(단위: 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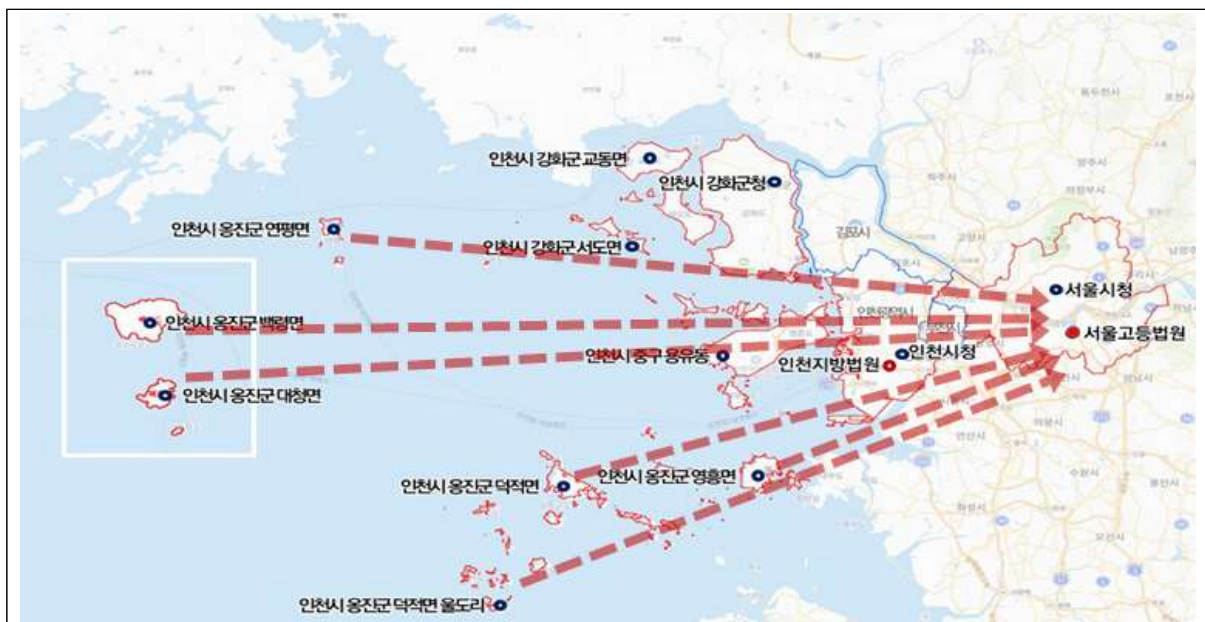
구분		평균 통행시간(분)		인구수 (2021)	노인인구수 (2021)
		대중교통	승용차		
인천광역시	계	96.3	78.5	2,948,875	435,431
	중구	112.7	90.5	143,633	21,735
	동구	108.5	88.8	61,486	14,670
	미추홀구	104.3	85.7	407,464	41,021
	남동구	92.2	74.0	389,644	75,633
	서구	98.0	63.8	518,272	76,493
	부평구	90.0	68.3	486,765	40,840
	계양구	103.7	71.5	295,696	63,203
	연수구	99.0	66.3	555,380	72,320
	강화군	171.8	94.5	69,693	23,751
	옹진군	-	-	20,342	5,765
경기도	부천시	91.2	63.5	806,067	118,668
	김포시	85.3	70.2	806,067	62,780
가중평균(합계)		96.1	71.5	4,240,950	616,879

주: 네이버지도서비스 이용, 주중 오전 9시~10시 및 오후 3시~4시 사이에 측정한 평균값. 섬 지역인 옹진군은 제외
 자료: 이인재 외(2020)를 토대로 재구성

(3) 접근성: 지리적 특성

- 인천시는 해양도시로,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져, 인천 도서 지역 주민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성은 더 열악함
 - 옹진군은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는 20,342명(노인인구수 5,765명)으로 영흥면 6,561명, 백령면 4,969명, 북도면 2,151명, 연평면 2,048명, 덕적면 1,894명, 대청면 1,399명, 자월면 1,32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그림 2-14] 인천지역 도서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접근성



자료: 이인재 외(2020)를 이용하여 재작성

- 웅진군 섬 지역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웅진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소 1시간 10분(덕적도)에서 최대 4시간(백령도) 배를 타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온 다음(북도, 영흥도 제외), 다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2시간, 승용차로는 45분 정도 걸려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함
 - 특히 백령도 주민이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총 6시간, 승용차로는 4시간 45분 소요됨
 - 또한 1일 배편 횟수가 정해져 있어 1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등의 업무를 본 다음,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어려워,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틀이 소요됨

[표 2-23] 인천 도서 지역의 배편 운항시간

	인천여객터미널	섬	섬	인천여객터미널
	출발	도착1)	출발	도착
북도면(북도)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신도까지 약 20분, 신도에서 장봉도까지 15분 정도 소요됨 오전 7시 10부터 저녁 18시 10분까지 매시간 배편이 있음			
백령면(백령도)	7:50	11:50	12:50	16:50
	8:30	12:30	13:30	17:30
	12:30	16:30	7:00	11:00
대청면(대청도)	대청도를 가기 위해서는 백령도 배편을 이용함 노선: 인천 출항-소청도-대청도-백령도			
덕적면(덕적도) ²⁾	8:30	9:40	10:00	11:10
	9:10	10:20	15:30	17:20
	13:40	14:50	16:00	17:50
	14:30	15:40	16:00	17:10
영흥면(영흥도) ³⁾	육로(대부도)로 연결됨 대중교통: 153분 승용차: 74분			
자월면(대이작도)	7:50	10:00	9:50	12:00
	8:30	9:55	10:00	11:25
	12:00	13:30	14:40	16:10
	13:10	15:00	15:10	17:20
연평면(연평도)	8:00	10:00	10:30	12:30
	13:00	15:00	15:30	17:30

주1: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섬(기항지)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각 배의 기항지(섬)에서 인천여객터미널 도착시간을 이용하여 도착시간을 산출함

주2: 동일한 경로라 하더라도 요일에 따라 운행 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덕적도 항로의 경우 2022년 8월 1일 3회, 8월 2일 4회 운행함

주3: 육로로 연결된 영흥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서비스 이용, 주중 오전 9시~10시 및 오후 3시~4시 사이에 측정하여 시간 계산함

자료: 연안여객터미널 홈페이지 운항현황(<http://icferry.or.kr/dmstc/nvg/monthlist.do?menuKey=595>)(검색일 2022.8.15.)

○ 인천 도서 지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강원도 북부지역의 접근성보다 더 좋다고 보기 어려움

- 이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지역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결과, 강원도 고성 161.8km, 강릉 166.9km로 200km 미만이지만, 인천의 섬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는 200km가 넘음
- 강원도 각 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의 교통상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고성은 대중교통 276분, 승용차 154분, 강릉은 대중교통 201분, 승용차 135분, 철원은 대중교통 183분, 승용차 77분 거리임

[그림 2-15] 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 비교



주: 네이버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고등법원과 각 지역들의 직선거리를 측정함

○ 따라서 인천지역이 강원북부보다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법제사법위원회(2020)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강원, 경기북부)에 비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론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소요되고, 일부 지역은 왕복 4~6시간 소요되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없음(섬 지역 제외)

• 옹진군 섬 지역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백령도 등 섬 지역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요됨

*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지역의 직선거리 측정 결과, 강원북부 고성 161.8km, 강릉 166.9km인데 반해 인천의 섬 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는 200km가 넘고, 배편을 이용해야 해서 접근성은 더욱더 떨어짐

	옹진군		고성군
인구 (2021년 기준)	20,342 백령면 4,969		27,249
교통상황	백령도	연평도	대중교통 276분 승용차 154분
	배편 4시간 (240분)	배편 2시간 (120분)	
	<연안여객터미널에서-서울고등법원> 대중교통 120분, 승용차 45분		

•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와 함께 노인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필요함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 다른 지방법원(강원, 경기북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더 중요해짐

(4) 법률서비스 여건: 등록변호사 현황

- 2022년 4월 기준 전체 변호사 31,426명 중 74.9%에 해당하는 23,539명이 서울에 등록하여, 변호사의 서울 집중 현상이 매우 크고, 서울 외 지역주민과 서울주민의 법률서비스 격차가 상당히 큼⁶⁾

- 서울지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404명으로 서울 외 가장 작은 지역인 부산(2,818명)보다 5배 이상 적어, 서울시민들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반해 인천지역(부천, 김포 포함)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755명으로 서울, 경기(중앙, 북부) 1,927명, 부산 1,189명, 대구(경북) 834명보다 적어, 법률서비스 여건이 이들 지역보다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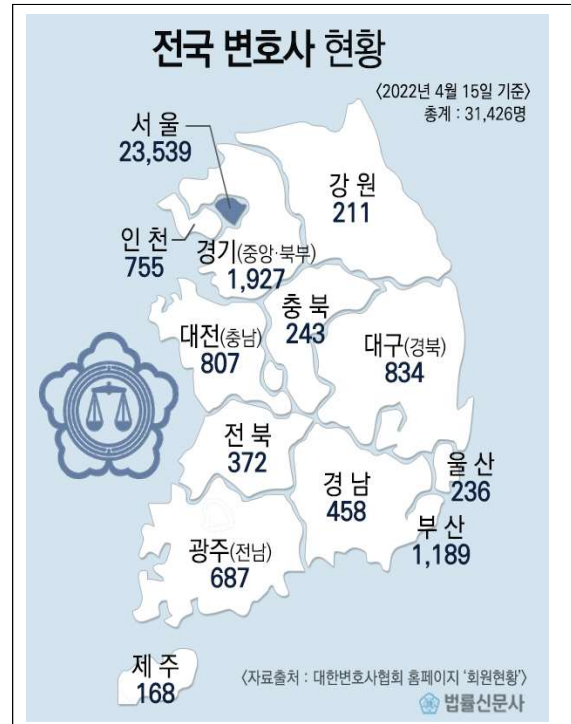
-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강원(7,291명), 경남(7,236명), 충북(6,574명), 경기(중앙, 북부)(6,369명), 대구(경북)(6,010명)보다 적은 5,617명으로, 주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인천지역의 인구 비중은 8.2%인데 반해 변호사 수 비중은 2.4%로, 인천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유사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법률서비스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서울에 변호사 집중 현상 및 지역의 변호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고등법원의 존재 여부도 그 하나로 볼 수 있음

- 인천(부천, 김포 포함)지역보다 변호사 수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며, 해당 지역들은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인천지역보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도 적어 인천시민보다 법률서비스 여건이 좋음

[그림 2-16] 전국 변호사 현황



자료: 법률신문(2022.4.18.)(<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741>)

6) 이는 9년 전인 2013년 73.8%에 비해 1.1% 상승한 수치임(법률신문, 2022.4.18.)

[표 2-24] 변호사 현황

(단위: 명)

변호사회 지부	변호사 수(비중) (2022.4. 기준)		인구수(비중) (2021)		변호사 1인당 인구수
서울	23,539	74.9	9,509,458	18.4	404
인천(부천, 김포 포함)	755	2.4	4,240,950	8.2	5,617
경기(중앙, 북부)	1,927	6.1	12,272,875	23.8	6,369
강원	211	0.7	1,538,492	3.0	7,291
대전(충남, 세종)	807	2.6	3,943,403	7.6	4,886
충북	243	0.8	1,597,427	3.1	6,574
대구(경북)	834	2.7	5,012,021	9.7	6,010
경남	458	1.5	3,314,183	6.4	7,236
부산	1,189	3.8	3,350,380	6.5	2,818
울산	236	0.8	1,121,592	2.2	4,753
전북	372	1.2	1,786,855	3.5	4,803
광주(전남)	687	2.2	3,274,414	6.3	4,766
제주	168	0.5	676,759	1.3	4,028
합계 (평균)	31,426	100	51,638,809	100	1,643*

주1: *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643명은 평균값임

주2: 변호사 수는 2022.4.기준이지만 인구수는 2021년 주민등록인구수를 이용함

자료: 변호사 수-법률신문(2022.4.18.); 인구수-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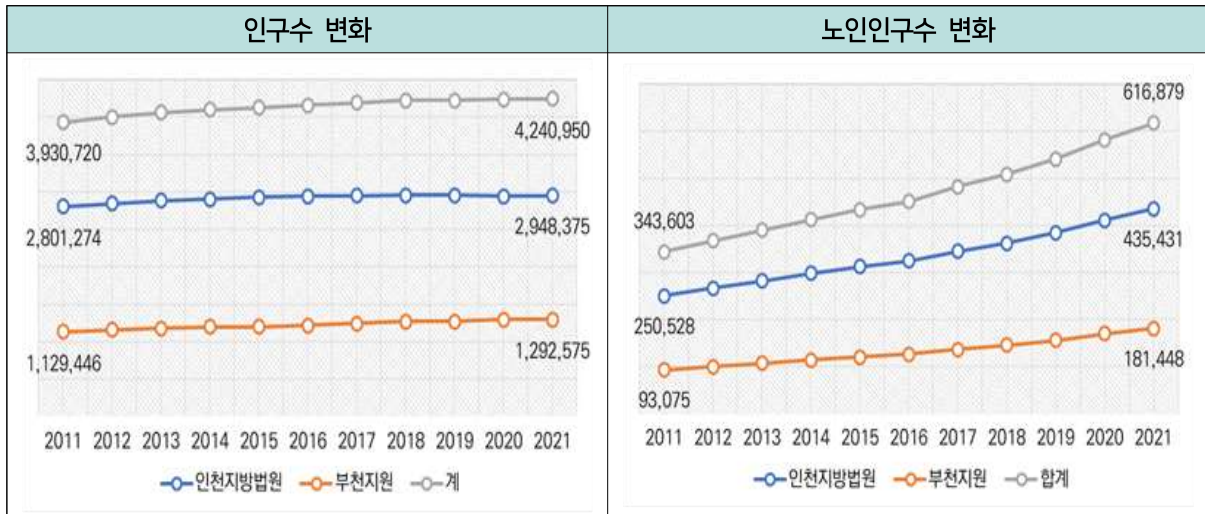
2) 인천광역시 사법서비스 수요

- 인천광역시 사법서비스 수요분석은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인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을 대상으로 함

(1) 인구수 및 인구추계

- 인구수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의 총인구는 2011년 393만 명에서 2021년 424만 명으로 11년간 21만 명 이상 증가함(증가율 8.0%)
 - 한편, 노인인구는 2011년 34만 명에서 2021년 61만 명으로 11년간 27만 명 증가함(증가율 79.5%)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법원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짐

[그림 2-17]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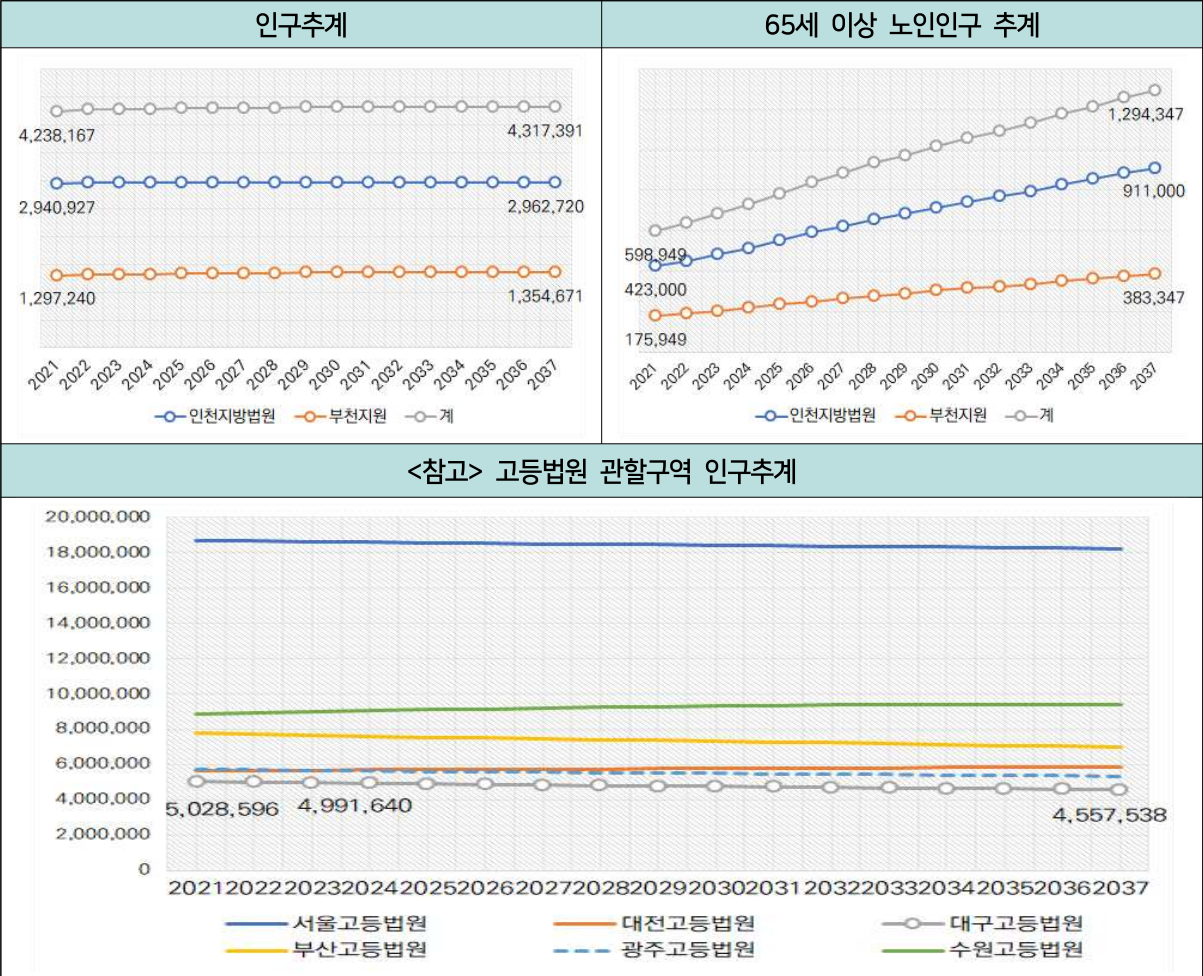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인구추계

- 장래인구추계 결과, 인천지역의 인구는 2037년까지 4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노인인구가 2037년 1,294,347명으로 증가하는데, 2030년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7년에 20%를 넘어서고, 2037년에는 30.5%로, 인천지역 인구의 약 1/3가량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일 것으로 추정됨
- (참고) 모든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를 추계한 결과, 대전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가 202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구고등법원은 2022년부터 500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고, 2037년에는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법제사법위원회(2020)는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데 있어, 인구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보았음. 그러나 인구추계 결과 인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0만 명을 넘지는 못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대구고등법원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광주고등법원은 2049년부터 관할구역 인구가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⁷⁾. 최근 인구 감소에 따라서 관할구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500만 명을 고등법원 설치기준 인구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7) 실제 2022년 7월 주민등록기준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4,986,136명임

[그림 2-18]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 및 노인인구 추계



주1: 인천관할지역 인구추계는 시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고, 김포시와 부천시 는 경기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함

주2: 추계방법은 중위추계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장래인구추계, 경기도 시·군 단위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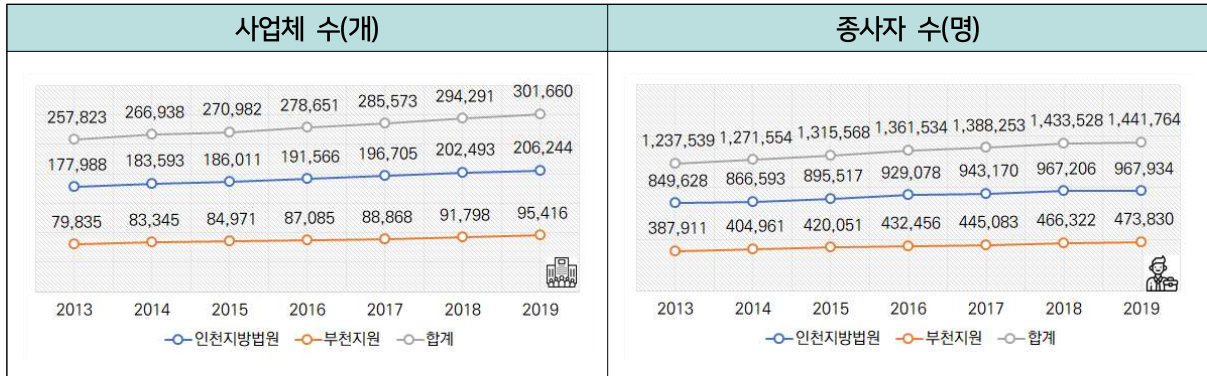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규모가 4,224,243명으로,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보다 90만 명이 작음
↓	
반론	• 인천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고, 인구추계 결과, 다른 고등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인천 관할구역 인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인구추계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2022년, 광주고등법원은 2049년에 관할구역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 특히 2037년 인천지역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대구고등법원은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규모에 차이가 크지 않음 •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인의 법원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관련하여 인천 관할구역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노인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중 노인수, 노인범죄수가 지난 10년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사법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함 * 노인피해자: 2011년 76,624명 → 2020년 176,621명(2.3배) * 노인범죄자: 2011년 68,836명 → 2020년 138,376명(2.0배) ☞ 인구추계 결과, 인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을 관할인구 규모 차이가 크지 않을 전망이고, 대구고법, 광주고법 관할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관할 인구 규모가 고등법원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사법서비스 수요에서 노인인구 증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2) 지역특성: 사업체 수 등

- 기업 및 근로자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체 수는 2013년 257,823개에서 2019년 301,660개로 6년간 43,837개가 늘어남
 - 종사자 수는 2013년 1,237,539명에서 2019년 1,441,764명으로 6년간 20만 명 이상 증가함
- 2020년 9월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집단소송제의 확대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 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2019.1.15.)등 기업 관련 법 제도 등이 변화하면서 기업 관련 사법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체와 종사자의 증가는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짐

8) 2022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등 17건의 제정안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민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을 연내 국내에 제출하여 처리할 방침으로(법률신문, 2022.1.25.), 집단소송은 과거 증거 분야에 한정된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함

[그림 2-19]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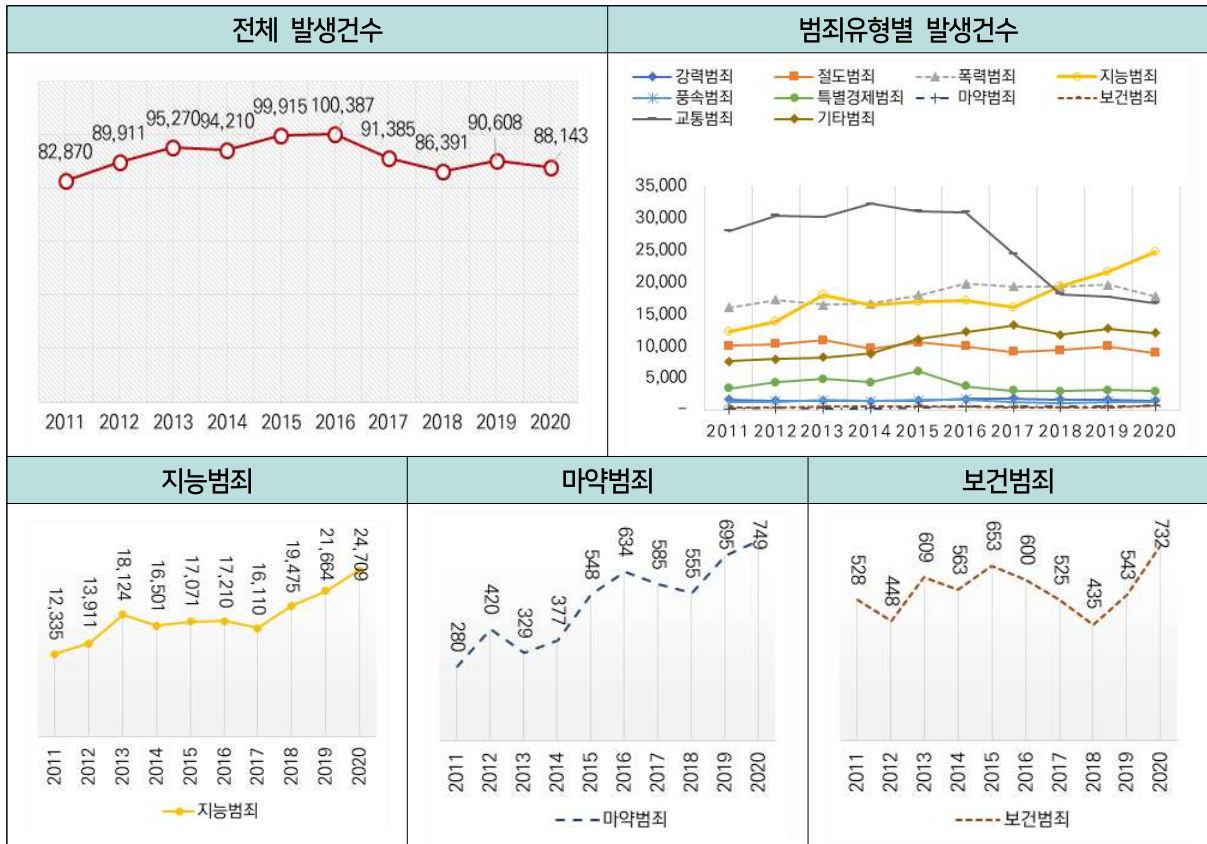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원자료: 인천광역시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 김포시와 부천시는 각 시의 기본통계연보)

(3) 범죄발생 건수 등 치안현황

- 범죄발생은 형사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함.
그 결과, 인천지역의 범죄발생 건수는 2011년 82,870건에서 2020년 88,143건으로 증가함⁹⁾
- 범죄유형 중 기존 5대 범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는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지능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대비 2020년 범죄 건수 변화를 보면 강력범죄, 절도범죄, 특별경제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병역범죄는 감소한데 반해, 폭력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등은 증가함
 - 특히 지능범죄와 마약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지능범죄는 2011년 12,335건에서 2020년 24,709건으로 100.3% 증가했고, 마약범죄는 2011년 280건에서 2020년 749건으로 167.5% 증가함

9) 경찰청범죄통계는 경찰청 단위로 통계가 제시되고 경찰서 단위는 제시되지 않아 부천과 김포에서 발생한 범죄통계를 파악할 수 없어 인천경찰청 범죄통계만을 분석함

[그림 2-20] 인천지역 범죄발생 건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원자료: 경찰청범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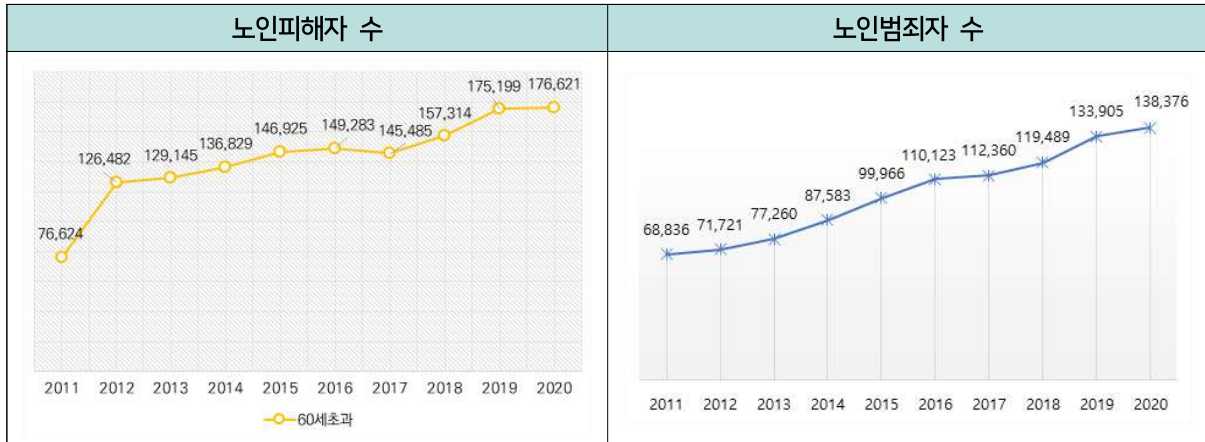
○ 한편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노인이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범죄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 전국기준 범죄피해자 중 노인수가 2011년 76,624명에서 2020년 176,621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노인범죄자 수도 2011년 68,836명에서 2020년 138,376명으로 2배 증가함. 노인범죄 중 2020년 기준 교통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절도범죄 순으로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1년 대비 2020년 2배 이상 증가한 범죄는 절도범죄(3.9배), 마약범죄(3.5배), 강력범죄(2.6배), 환경범죄(2.6배), 교통범죄(2.0배)로 분석됨

○ 노인범죄자 수와 노인피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에서 노인인구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그림 2-21] 노인피해자(60세 초과) 및 노인범죄자(65세 이상) 현황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경찰청 범죄통계

3) 인천광역시 사법서비스 현황: 소송사건 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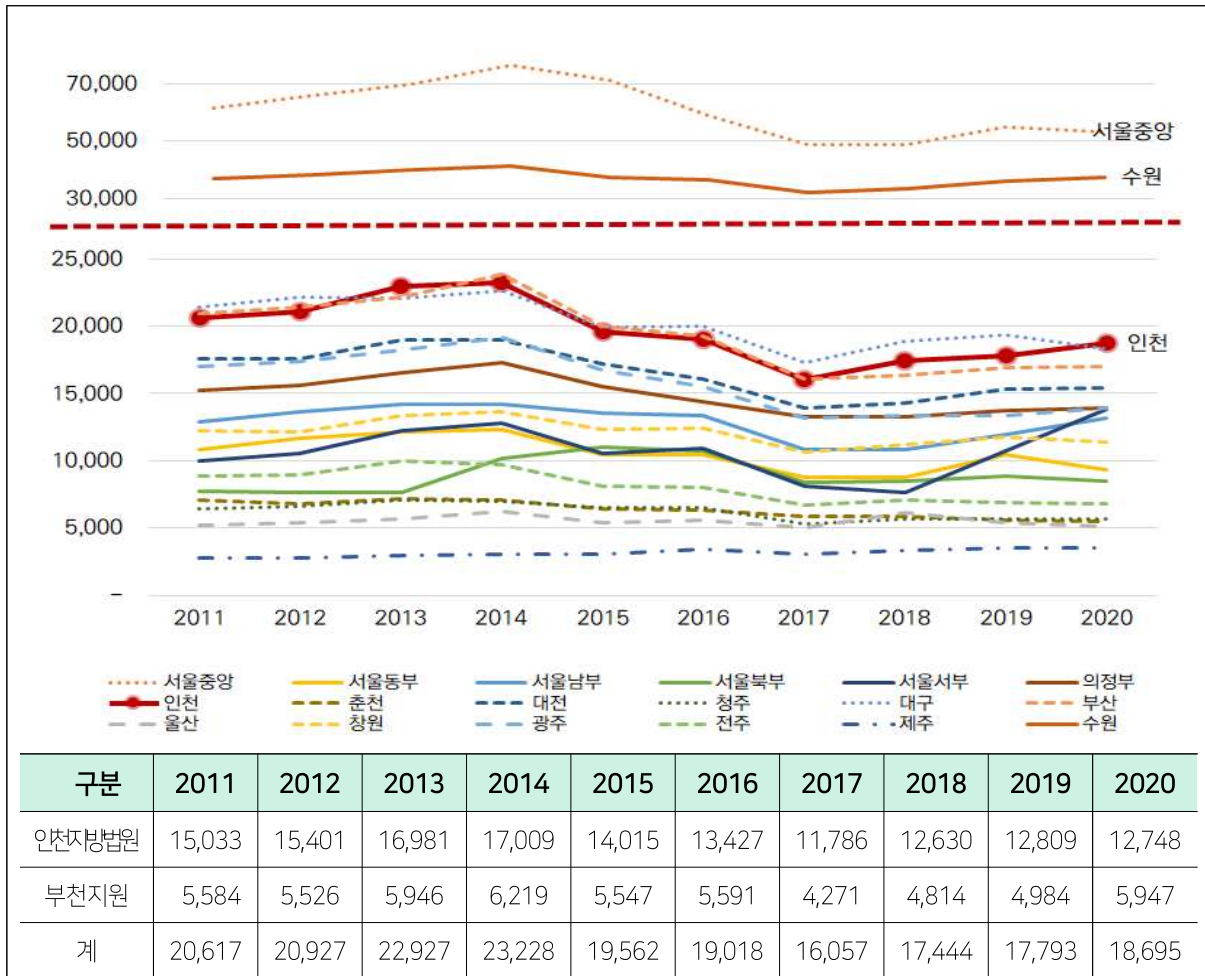
- 2011~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사건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사건 수는 제1심 사건, 항소심 사건, 청구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사건을 검토하여, 실제 고등법원과 관련된 사법서비스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함

(1) 민사소송

-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
 - 최근 3년(2018~2020년)의 지방법원별 1심 민사본안 소송사건 증가율을 보면, 서울 서부, 서울남부, 제주, 인천, 수원, 대전 순으로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두드러짐
 - 인천지방법원의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소액사건 제외)사건은 등락을 보이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한 후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2020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1심 민사본안 소송 건수는 18,695건으로 서울중앙, 수원 다음, 3번째로 많음
 -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중 10년 연평균 인천지방법원의 비중은 13.6%로 서울중앙지법(42.0%) 다음으로 높음¹⁰⁾

10)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평균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 소송건수는 서울중앙

[그림 2-22]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항소심 민사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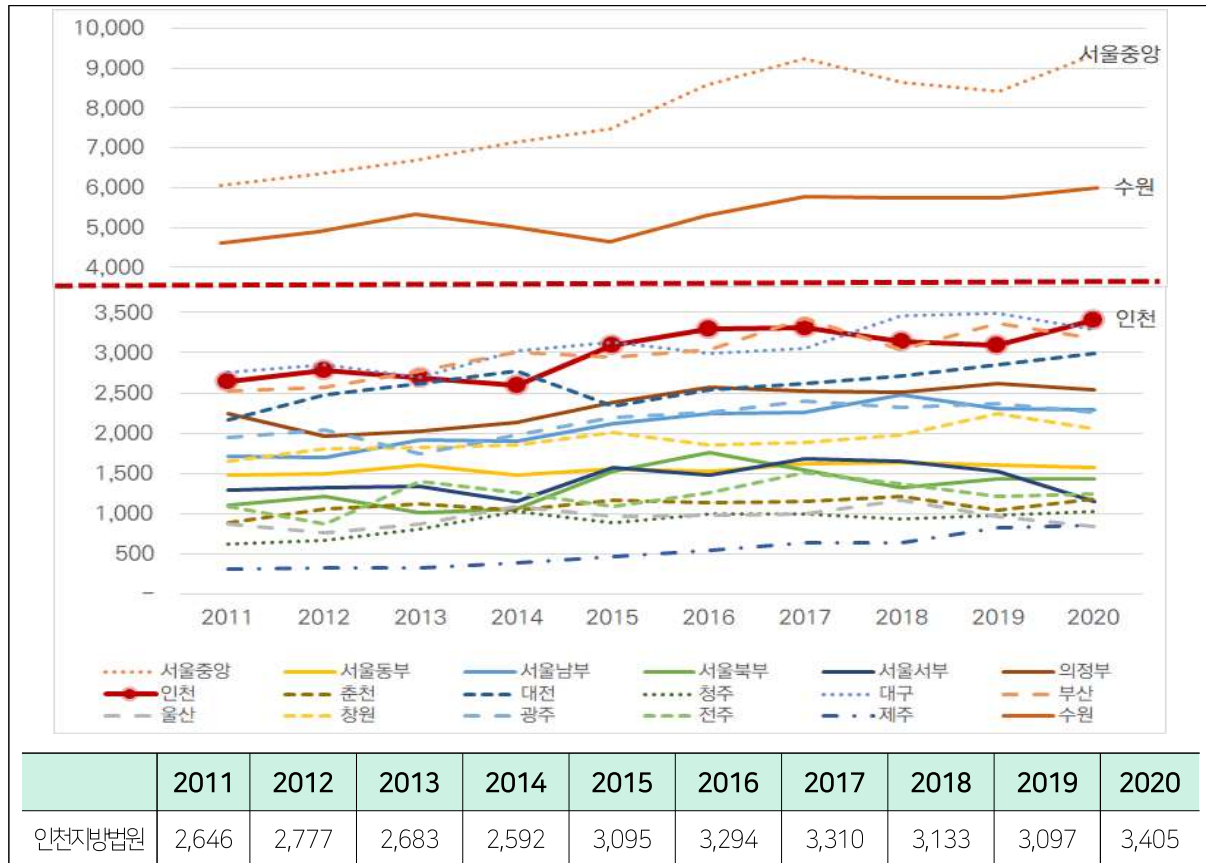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이 10년 동안 증가한 가운데(전체 평균 29.7% 증가),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1년 2,646건에서 2020년 3,405건으로 10년간 700건 이상 증가함(인천지방법원 증가율 28.7%)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1년간 300건이 증가하여 9.9%의 증가율을 보임
 - 2019년 대비 2020년 사건 수가 증가한 지방법원은 9개로 춘천(12.7%), 서울중앙(11.0%), 인천(9.9%)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¹¹⁾

60,817건, 서울회생 102건, 서울동부 10,515건, 서울남부 12,872건, 서울북부 8,907건, 서울서부 10,732건, 의정부 14,869건, 인천 19,639건, 춘천 6,365건으로,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전체 소송건수(144,817건)에서 각 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법원행정처, 2021)

11) 지방법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민사본안 건수는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 수원 다음 3번째로 많음
-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중 10년 연평균 인천지방법원 비중은 14.5%로, 서울중앙 지법(37.7%) 다음으로 높음¹²⁾

[그림 2-23]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연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서울 중앙	서울 회생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의정 부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수원
2019	46,141	8,426	5	1,611	2,304	1,438	1,526	2,617	3,097	1,049	2,858	984	3,487	3,361	970	2,245	2,371	1,219	821	5,752
2020	46,653	9,355	2	1,576	2,289	1,439	1,147	2,533	3,405	1,182	2,998	1,022	3,279	3,172	836	2,060	2,266	1,249	852	5,991
증감률	1.1	11.0	-60.0	-2.2	-0.7	0.1	-24.8	-3.2	9.9	12.7	4.9	3.9	-6.0	-5.6	-13.8	-8.2	-4.4	2.5	3.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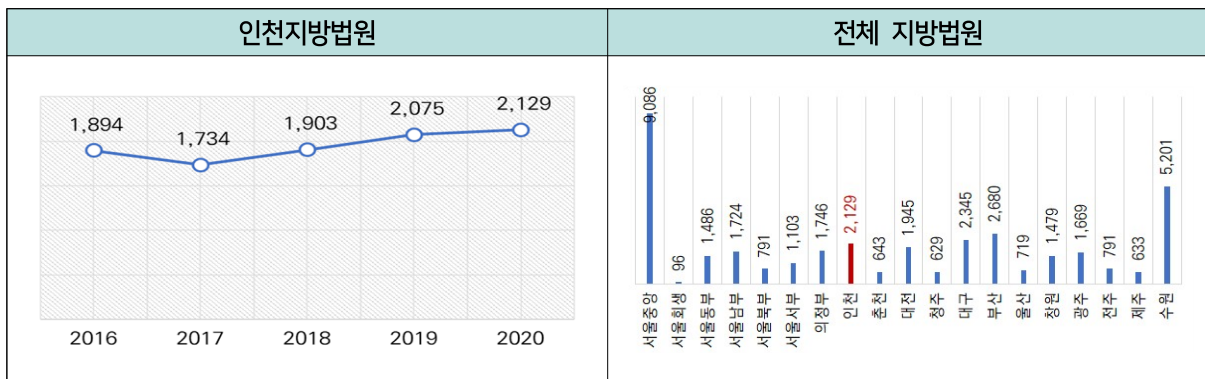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12)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수는 서울중앙 7,796건, 서울회생 5건, 서울동부 1,558건, 서울남부 2,092건, 서울북부 1,344건, 서울서부 1,417건, 의정부 2,351건, 인천 3,003건, 춘천 1,102건으로,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전체 소송건수(20,668건)에서 각 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 (법원행정처, 2021)

○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 지방법원이 1심(합의, 단독 모두),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는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의 사건은 2016년 1,894건에서 2020년 2,129건으로 5년간 235건 증가함
 -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소송 건수는 서울중앙, 수원, 부산, 대구, 인천 순임
 - 한편,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로 서울중앙(48.3%) 다음으로 많음
- 각급 법원의 심판권을 보면, 민사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처리함
 - 따라서 고액사건의 항소심 접수 건수 증가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의 고등법원 이용 수요가 늘어남을 의미함

[그림 2-24] 제1심 민사본안사건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소송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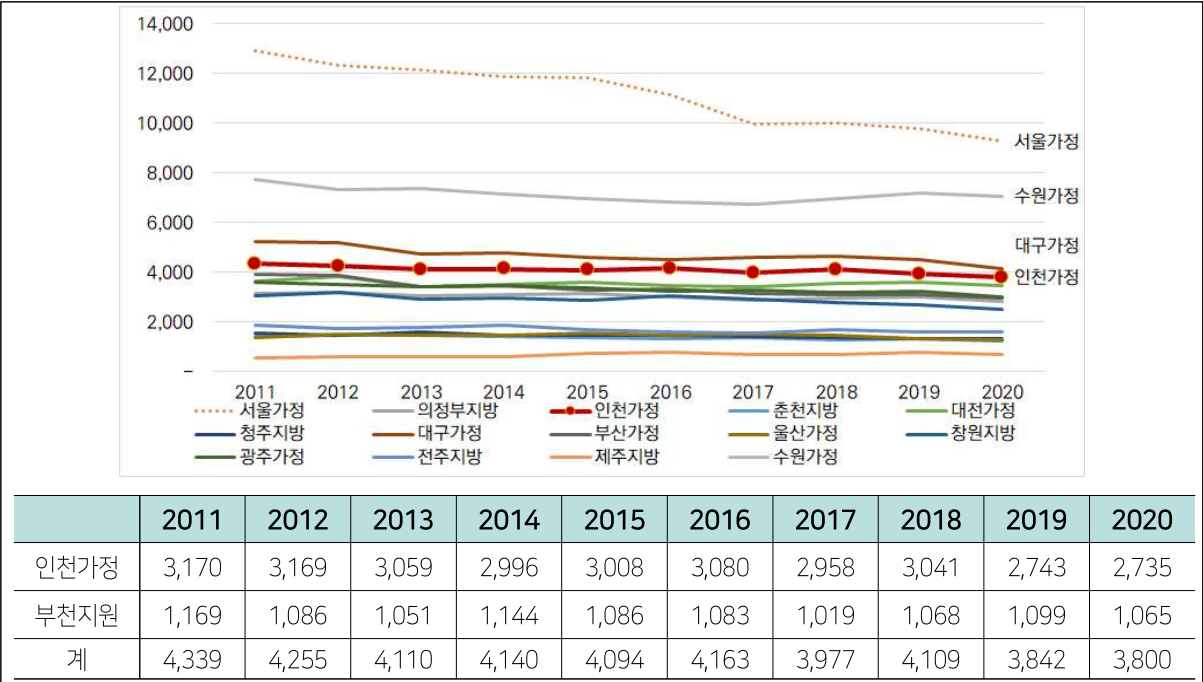
자료: 법원행정처(2017~2021), 각 년도 사법연감

(2) 가사소송

○ 제1심 가사소송(단독+합의)

- 인천가정법원의 제1심 가사소송 사건 수는 2011년 4,339건에서 2020년 3,800건으로 감소함
 - 울산가정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 및 가정법원의 제1심 가사소송 사건 수는 지난 10년간 감소한 가운데, 인천의 감소율이 전체 평균 감소율보다 낮음
 - * 지난 10년간 소송사건 수 변화율: 전체 평균 -8.3%, 인천가정법원 -5.7%
- 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비교 시, 2020년 기준 소송사건 수는 서울, 수원, 대구 다음 4번째로 많음

[그림 2-25] 제1심 가사소송 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항소심 가사소송

- 인천가정법원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 수는 2011년 138건에서 2020년 249건으로 10년간 111건 증가함
- 지난 10년간 전체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 수가 증가한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증가율은 80.4%로, 청주지방법원(133.4%), 춘천지방법원(181.8%), 부산가정법원(131.0%), 청주지방법원(131.0%), 제주지방법원(104.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¹³⁾
- 2020년 기준 타 지역과 비교 시, 인천지역의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 수는 서울, 수원 다음 3번째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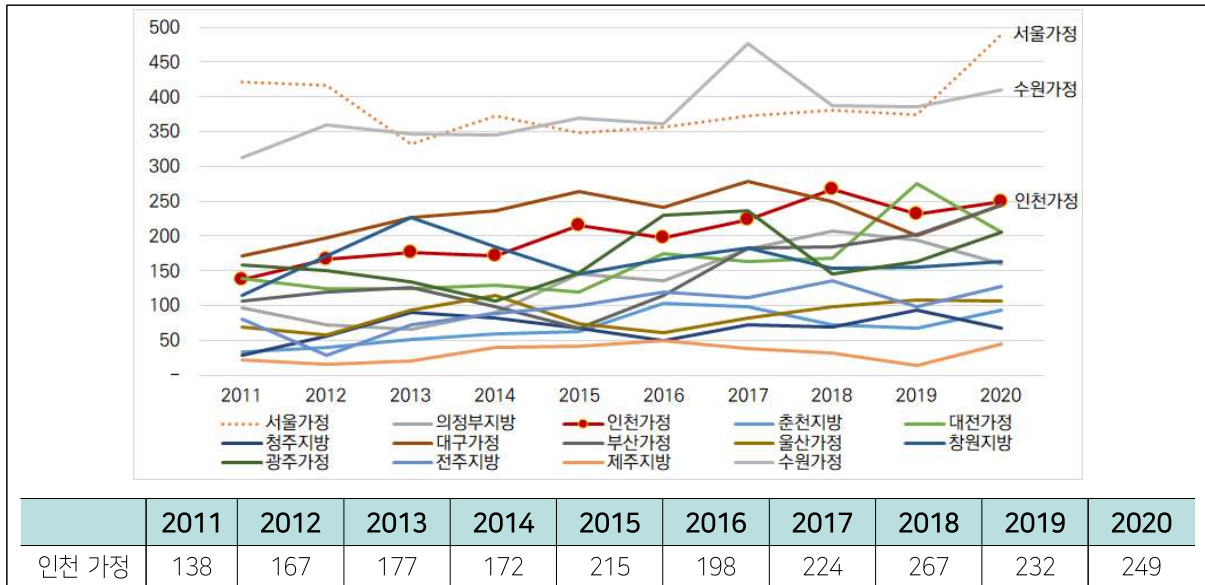
13) 항소심 가사소송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10년간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서울 가정	의정부 지방법	인천 가정	춘천 가정	대전 가정	청주 지방법		부산 가정	울산 지방법	창원 지방법	광주 가정	전주 지방법	제주 지방법	
2011	1,892	421	97	138	33	139	29	172	106	70	114	158	80	22	313
2020	2,813	490	160	249	93	206	67	244	245	107	163	206	128	45	410
증감율 (10년)	48.7	16.4	64.9	80.4	181.8	48.2	131.0	41.9	131.1	52.9	43.0	30.4	60.0	104.5	31.0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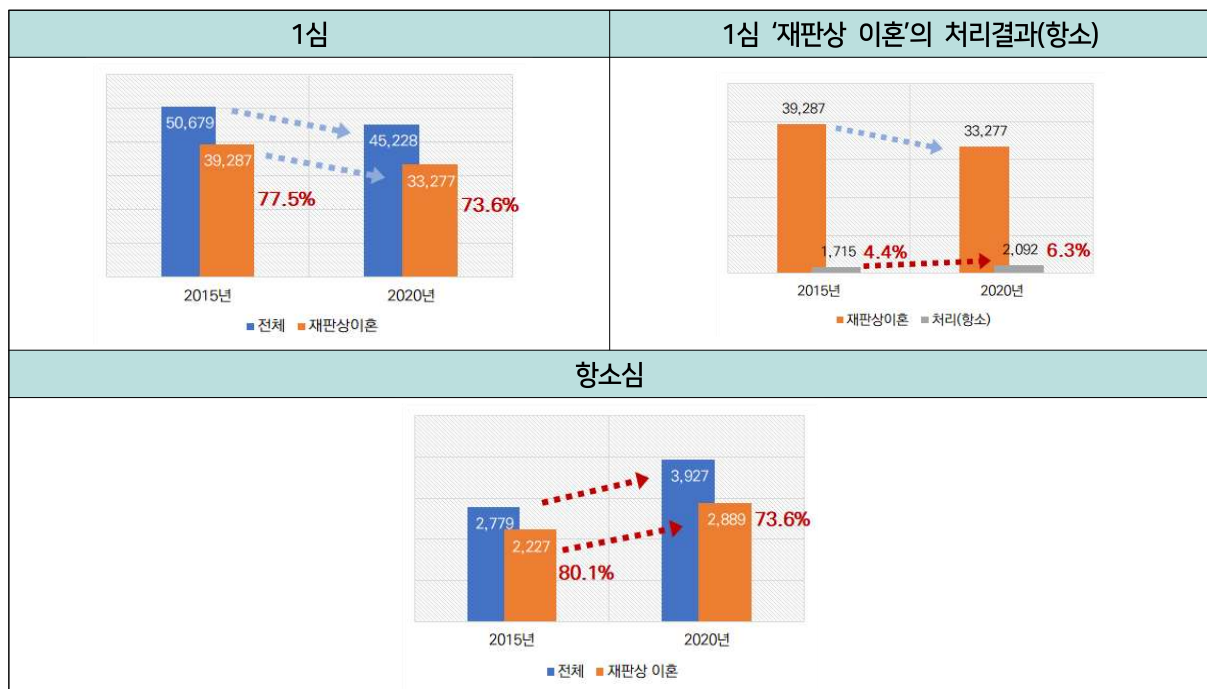
- 흥미로운 점은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줄어든데 반해,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은 늘어남. 이는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1심 가사소송 사건이 줄어든데 반해, 이혼소송의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임([그림 2-27] 참고)

[그림 2-26]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그림 2-27] 1심 및 항소심 가사소송 중 '재판상 이혼' 현황



자료: 법원행정처(2016, 2021). 각 년도 사법연감

(3) 행정소송

○ 제1심 행정소송¹⁴⁾

-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11년 835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10년간 677건 증가하여 81.1%의 증가율을 보임
 - 전체적으로 10년간 제1심 행정소송 수가 증가한 가운데(증가율 33.0%), 인천지방법원의 증가율(81.1%)은 제주(110.8%), 대전(98.3%), 광주(97.6%), 울산(86.7%) 다음으로 높음¹⁵⁾
 - 이에 전체 1심 행정소송 사건 중 인천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9%에서 2020년 6.7%로 상승하여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음¹⁶⁾
-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하는데, 행정청의 승소율이 2020년 기준 55.5%¹⁷⁾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향후에도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증가할 전망이다

14) 민사·가사·형사소송은 항소심(2심) 기관이 지방법원이 될 수 있으나 행정법원은 2심이 고등법원임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소송 사건 수를 제시하지 않음

15) 제1심 행정소송의 지방법원의 10년간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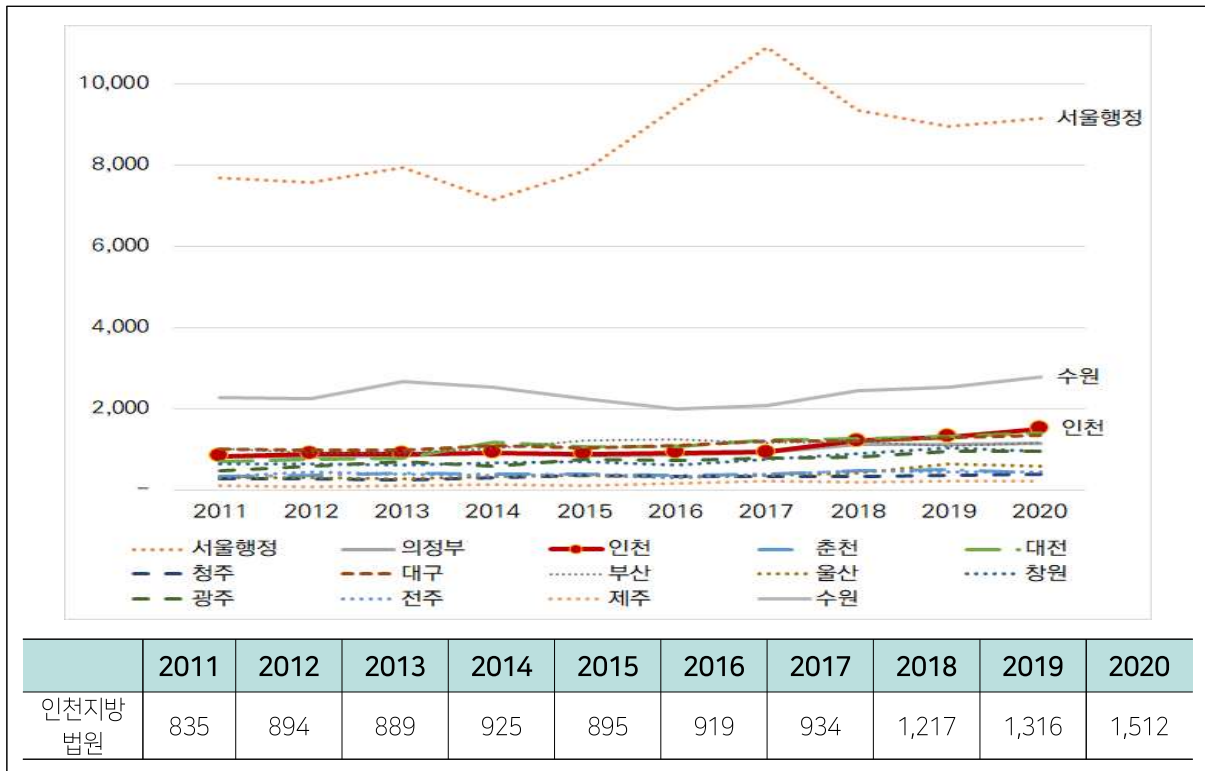
연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서울 행정	의정부 지방법	인천 지방법	춘천 지방법	대전 지방법	청주 지방법	대구 지방법	부산 지방법	울산 지방법	창원 지방법	광주 지방법	전주 지방법	제주 지방법	수원 지방법
2011	16,924	7,669	855	835	345	713	276	1,015	1,030	315	648	491	339	111	2,282
2020	22,509	9,146	1,157	1,512	423	1,414	395	1,342	1,154	588	959	970	441	234	2,774
증감율 (10년)	33.0	19.3	35.3	81.1	22.6	98.3	43.1	32.2	12.0	86.7	48.0	97.6	30.1	110.8	21.6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16) 제1심 행정소송 사건 전체 건수는 2011년 16,924건이고 2020년 22,509건임.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행정소송사건 수를 보면 2011년 835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이고, 2020년에는 1,512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임(법원행정처, 2021)

17) 2020년 행정소송 사건수 40,073건 중 처리건수는 18,868건이고 이 중 승소건수는 10,478건으로 승소율은 55.5%임(e-나라지표(<http://index.go.kr>), 행정소송 사건수)

[그림 2-28] 제1심 행정소송 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4) 형사소송

○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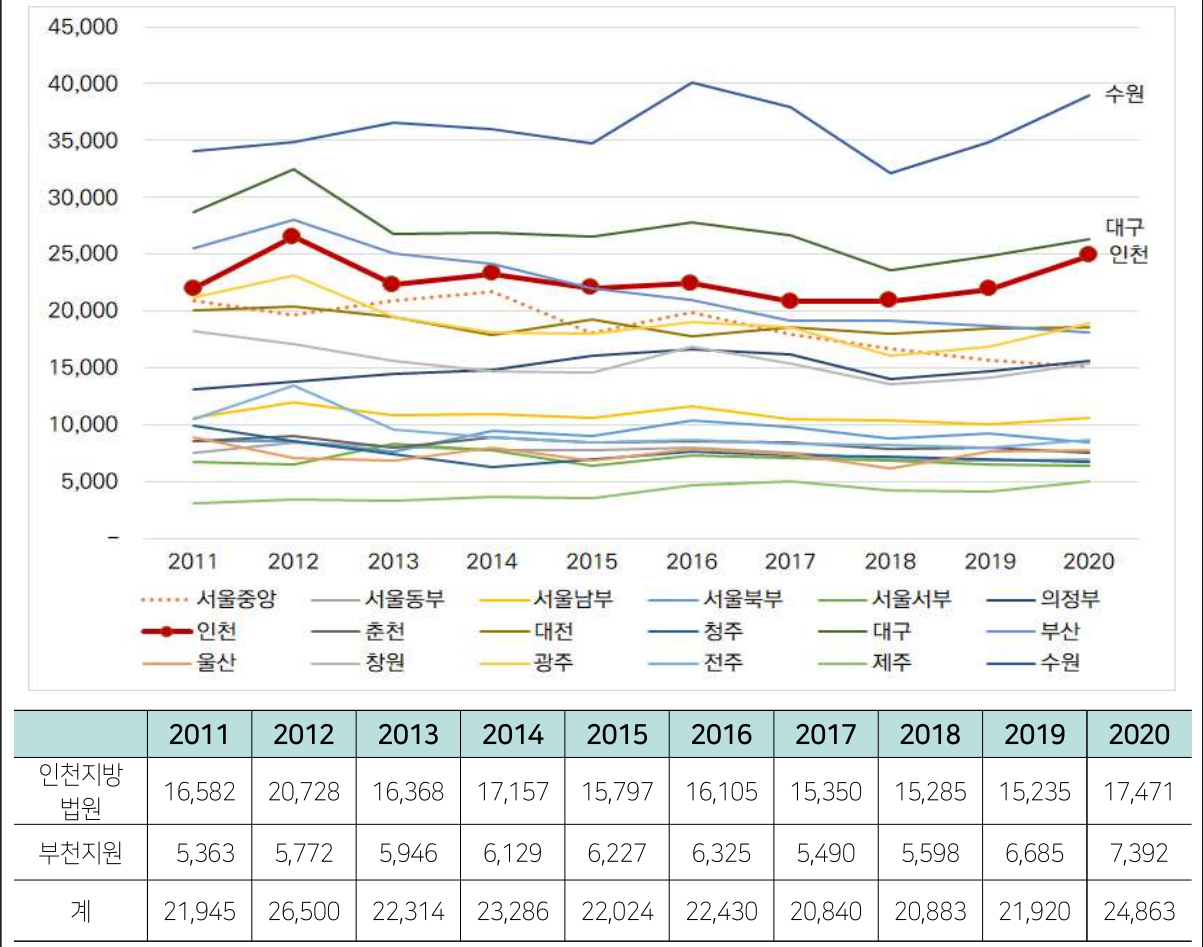
-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은 2011년 21,945건에서 2020년 24,863건으로 10년간 13.3% 증가함
- 전국적으로 10년간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이 감소했지만(2011년 278,166건 → 2020년 260,300건)¹⁸⁾, 인천지방법원은 증가함
- 2020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은 수원, 대구 다음으로 많고, 서울고등법원 관할 중에서는 가장 많음

18) 각 연도별 전체 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은 다음과 같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78,166	293,053	270,842	269,077	259,673	276,324	262,815	240,416	247,365	260,300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그림 2-29]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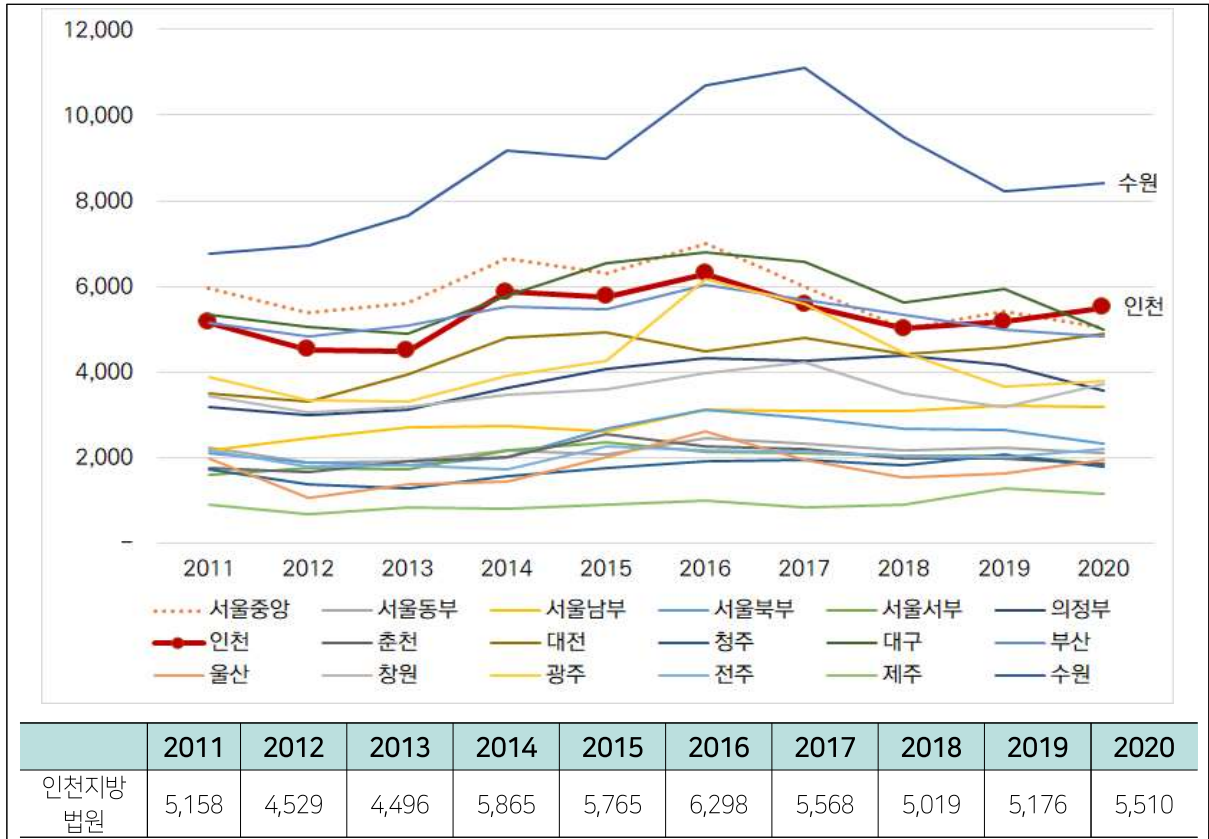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항소심 형사공판

-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은 2011년 5,158건에서 2020년 5,510건으로 증가하여 10년간 6.8% 증가함
- 2019년 대비 2020년 대부분 지방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 건수가 감소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오히려 증가함. 이에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 건수는 2020년 기준 5,510건으로, 수원(8,406건) 다음으로 많음

[그림 2-30] 항소심 형사공판 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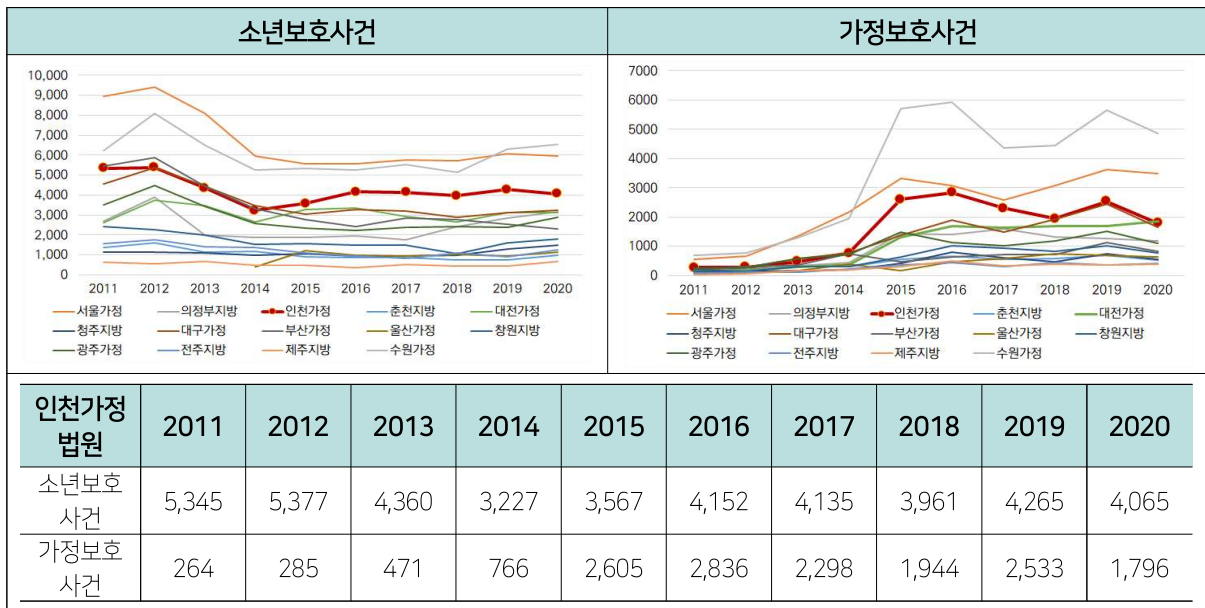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사건은 전체적으로 10년간 감소한 가운데, 인천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수도 2011년 5,345건에서 2020년 4,065건으로 감소함
- 2020년 기준 인천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수는 수원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다음으로 많고, 2016년 이후부터는 4천 건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인천가정법원의 10년간 증가율은 498.4%로 매우 높음
- 2020년 기준 인천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은 1,796건으로 수원, 서울, 대전 다음으로 많음

[그림 2-31]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수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6)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의 항소심 건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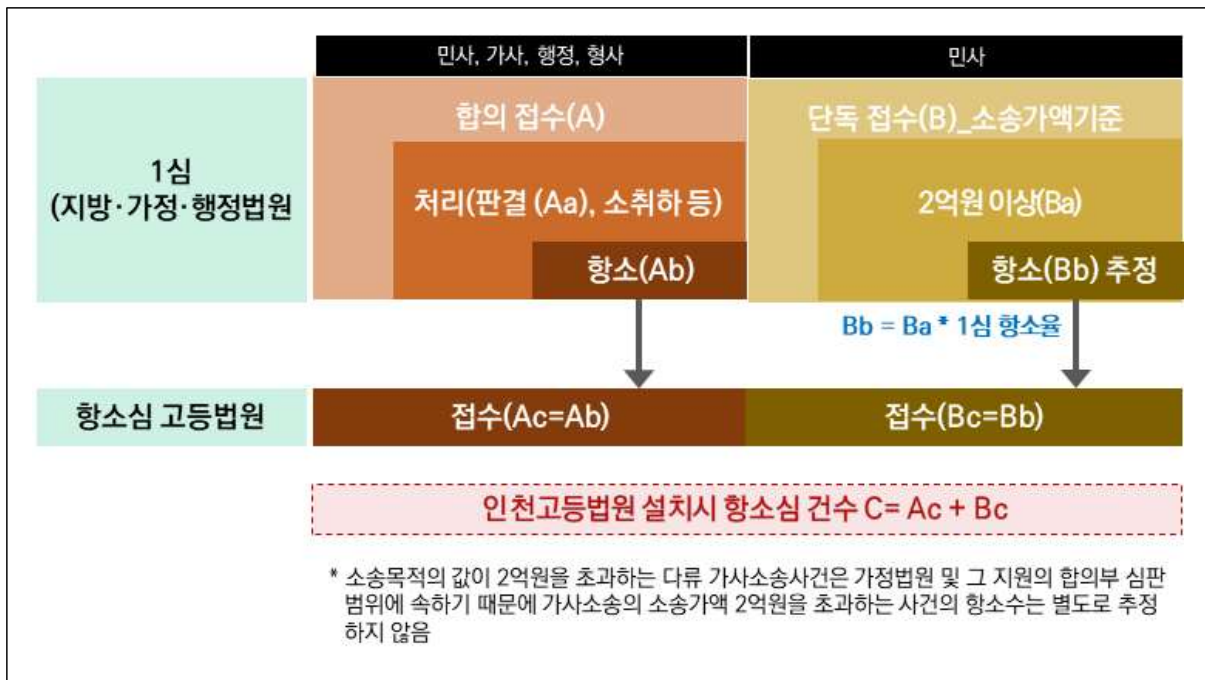
○ 추정방법¹⁹⁾

-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접수되는 항소심은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의 항소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면 되지만 해당 데이터가 없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접수되는 항소심 수를 추정해야 함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항소심 수를 추정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심판권을 근거로 함([그림 2-2] 참고)
 - 지방법원 단독재판부가 1심인 경우 지방법원 합의재판부가 2심 기관이 되지만,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의 합의재판부가 1심인 사건과 청구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인 사건은 고등법원이 2심 기관이 됨
 -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항소되는 사건 수를 추정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1심 합의사건 처리 유형 중 ‘항소’한 사건 수^㉔와 단독사건의 청구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인 사건 수^㉕를 파악함

19)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위에서 계속 이용한 사법연감 자료임

- ⑤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한 모든 사건의 관할이 인천고등법원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사법연감에 제시된 1심 합의사건 처리에서 제시된 '항소' 사건 수를 그대로 이용함
- ⑥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의 사건 중 합의부 사건은 지방법원 1심 합의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을 포함할 경우 중복 카운팅 되어 과대 추정될 수 있음. 따라서 단독사건 수만 이용함. 또한 해당 자료는 1심 접수건수로 이중 일부만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기 때문에 항소건수를 추정하기 위해 항소율을 이용함
- 항소율은 1심 민사본안 단독사건의 항소율을 이용함
- 추정 시 1개년도 자료만 이용할 경우 매년 소송사건 수가 달라짐에 따라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져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2016~2020년 5년 평균값을 이용함

[그림 2-32] 인천고등법원 접수 항소심 사건 수 추정 방법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 추정

- 소송유형별 인천지방법원(1심 합의)의 사건 처리 중 '항소' 수의 5년 평균값 산출 (Ab): 민사본안 578건, 가사소송 45건, 행정소송 321건, 형사공판 875건으로 전체 1,819건이 합의사건 중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사건 수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항소 건수 전체가 인천고등법원(항소심)에 접수됨(Ac)

[표 2-25] 인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1심 합의사건 및 항소 수

(단위: 건)

구분	1심 합의 접수 건수					처리 중 '항소'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민사 본안	2,016	2,136	2,339	2,521	2,613	714	623	466	583	504	578
가사 소송	206	242	315	288	318	55	42	40	55	31	45
행정 소송	895	919	1,217	1,316	1,512	304	276	330	330	366	321
형사 공판	1,742	1,433	1,577	1,646	1,565	860	850	909	948	809	875
계	4,859	4,730	5,448	5,771	6,008	1,933	1,791	1,745	1,916	1,710	1,819

자료: 법원행정처(각년도), 사법연감

- 민사본안소송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을 초과하는 항소심 수 추정(Bb):

$$\begin{aligned}
 Bb &= 1\text{심 단독 소송물가액 } 2\text{억 원 초과하는 사건 수 } 5\text{년 평균} \times 1\text{심 민사본안 단독 항소율} \\
 &= 236\text{건} \times 10.7\% = 25\text{건}
 \end{aligned}$$

[표 2-26] 1심 단독 소송물가액 2억 원 초과 사건과 항소율 5년 평균

(단위: 건,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1심 단독 소송가액 2억 원 초과	424	161	179	234	181	236
1심 민사본안 단독 항소율	10.7	11.9	11.1	10.5	9.4	10.7

-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사건 수 전체(C)

$$C = Ab + Bb = Ac + Bc = (578+45+321+875) + 25 = 1,819 + 25 = 1,844$$

[그림 2-33] 인천고등법원 접수될 항소심 건수 추정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1,844건으로, 이는 대전고등법원 1,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형사공판 합의 항소심 접수 건수(875건)는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보다 높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²⁰⁾

[표 2-27]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단위: 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서울고등법원	18,815	12,066	469	3,749	2,530
인천고등법원(추정치)	1,844	603	45	321	875
대전고등법원	2,277	815	98	496	868
대구고등법원	1,812	725	65	284	738
부산고등법원	3,592	1,430	187	601	1,374
광주고등법원	2,532	914	80	502	1,036
수원고등법원	3,540	1,662	170	560	1,148

주1. 인천고등법원은 추정치이고, 나머지 고등법원은 2020년 자료임
주2: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자료에서 인천고등법원 추정치를 뺀 값임

20) 원외재판부에 대한 논의하는 차후에 더 자세히 진행하고 함

- 단위 인구(인구 10만 명)로 환산하면, 인천고등법원 설치시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단위 인구당 43.5건으로,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보다 많음
- 특히, 형사공판 합의 항소심 접수 건수(20.7)는 모든 고등법원에 비해 높고, 행정 항소심 접수 건수(7.6건)는 대구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보다 높음

[표 2-28] 인구 10만 명당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단위: 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서울고등법원	127.9	82.0	3.2	25.5	17.2
인천고등법원(추정치)	43.5	14.2	1.1	7.6	20.7
대전고등법원	41.1	14.7	1.8	9.0	15.7
대구고등법원	35.8	14.3	1.3	5.6	14.6
부산고등법원	45.7	18.2	2.4	7.6	17.4
광주고등법원	43.8	15.8	1.4	8.7	17.9
수원고등법원	41.0	19.2	2.0	6.5	13.3

주1. 인천고등법원은 추정치이고, 나머지 고등법원은 2020년 자료임

주2: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자료에서 인천고등법원 추정치를 뺀 값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2019년 기준 기존 고등법원과 비교 시 인천고등법원(안)의 접수 사건 수는 현재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의 접수 사건 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반론	- 인천지역의 소송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소송유형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음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접수 건수는 1,844건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구고등법원 1,812건(2020년 기준)보다 많음 - 인천지방법원의 소송 건수 현황과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하는 사건 수와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인천고등법원 접수 건수 추정 결과,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규모로 충분함

3.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추가 이슈 및 검토사항

1) 원외재판부와 고등법원

(1) 개요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관할 지방법원 내에 고등법원 담당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설치함을 의미함(이재호 외, 2019)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일종의 고등법원의 분사무소의 개념임
- 「법원조직법」 제27조에 고등법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제27조(부)

-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 ② 삭제 <2020. 3. 24.>
-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 3. 24.>
-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함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인 사건’임

[표 2-29] 고등법원 심판권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재판사무 범위

고등법원 심판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재판사무 범위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u>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u>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2022년 8월 기준 7개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원외재판부 설치 순서는 제주(1995) → 전주(2005) → 청주(2010) → 창원(2010), 춘천(2010) → 인천(2019) → 울산(2021)

[표 2-30] 원외재판부 설립 현황(2022년 8월 기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방법원(설치연도)
서울	춘천(2010), 인천(2019)
대전	청주(2008)
부산	창원(2010), 울산(2021)
광주	제주(1995), 전주(2006)

(2)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와 인천고등법원 설치 현황 및 이슈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현황

- 인천과 부천, 김포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관할구역 인구가 400만 명이 넘고, 서울고법 항소심 중 인천지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이인재, 2015), 수도권 서부지역의 높은 사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됨
- 인천광역시의회는 청와대, 대법원, 국회사무처 등에 2015년 7월, 2017년 9월에 계속해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²¹⁾
- 이에 2018년 6월 1일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고등법원 부의 가정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공고 제2018-104호) 개정함
-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이유로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법원행정처, 2018.6.1.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제 2018-104호))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조직

- 2020년 8월 기준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재판부 2개, 가사재판부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사재판부는 설치되지 않음
- 2019년 3월에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재판부 1개, 가사재판부 1개, 형사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로 운영될 전망이었으나 형사재판부가 빠진 채로 출발함(연합뉴스, 2019.11.06.)
- 2019년 3월 민사재판부 1개, 가사재판부 1개로 출발했다가 2020년 6월에 민사재판부가 추가되어 민사재판부 2개, 가사재판부 1개가 됨(인천투데이, 2019.11.12.)

21)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2008년부터 있었음. 2008년 당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예산과 부지확보 등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 이에 2015년 인천지방법변호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지지성명 등의 활동을 함

[그림 2-34] 인천원외재판부의 조직도



자료: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incheon.scourt.go.kr/jibubmgr/trial/new/TrialList.work>), 검색일: 2022.8.10.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관련 이슈

- 인천원외재판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항소심을 담당할 형사부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원외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것임

① 인천원외재판부 형사부 부재 이슈

- 당초 가사 담당, 민사 담당, 형사 담당 각 1개씩 총 3개의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실제 개원 시에는 형사부가 빠져 있었고 이것이 2022년 현재까지 이어짐
- 이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형사부가 빠져 있는 ‘반쪽짜리’, ‘생색내기 사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속됨(인천투데이, 2019.11.12.)
-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2019년 3월 수원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앞두고, 인구 300만 명의 광역시인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대법원에서 인천원외재판부를 다급하게 개원한 탓임(배영철, 2021.10.17.)

-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민사재판부만 설치하여 비정상적으로 반쪽 운영 중으로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됨(배영철, 2021.10.17.)
- 당초 인천원외재판부를 출범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천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편안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그 기능을 하지 못함(배영철, 2021.10.17.). 따라서 형사와 행정은 서울로 항소심을 받으러 가야 해서 인천 시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원외재판부 중 형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함. 즉 인천을 제외한 춘천, 청주, 창원, 울산, 제주, 전주 6개 모두 형사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창원시의 경우 6개의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표 2-31] 원외재판부에 설립된 재판부 비교

원외재판부	설치연도	설치재판부(조직)
인천(4)	2019	제1민사부, 제2민사부, 제1가사부, 제2가사부
춘천(3)	2010	민사항소부, 가사항소부, 형사항소부
청주(3)	2008	민사항소부, 가사항소부, 형사항소부
울산(2)	2021	형사·민사·행정·가사 담당, 파기환송심 담당
창원(6)	2010	제1민사부, 제2민사부, 제3민사부, 제1가사부, 제1형사부(소년, 성폭력, 부패), 제3형사부(환경, 식품, 보건), 제5형사부
전주(3)	2005	민사항소부, 형사항소부, 가사항소부
제주(4)	1995	민사항소부 1개, 가사항소부 2개, 형사항소부 1개

주1: ()은 재판부 숫자임

주2: 각 지방법원의 조직도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식별함. 다만 울산원외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없어, 개원 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파악함

자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 부산일보(2021.01.05.)

② 인천원외재판부와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

- 또 하나의 이슈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를 들 수 있음. 인천은 당초에 고등법원 설치가 목적이었으나 여건상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장하여 2019년부터 개원함. 따라서 여전히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여러 가지 여건 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지만, 인천지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임
-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미 인천에 항소심 역할을 담당하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의 소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부는 없고, 규모도 충분하지 않아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인천시는 울산시와 더불어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에 해당함

(3) 인천원외재판부 형사부 설치 및 인천고등법원설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거

- 인천지역의 높은 사법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천고등법원이 없고, 항소심 역할을 하는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부가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 등 인천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원외재판부 형사부 설치, 더 나아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여기서 먼저, 인천원외재판부 형사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인천지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들을 간단히 살펴봄
- 인천원외재판부 형사부 설치 필요성 논거(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인천지역의 범죄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노인피해자 및 노인범죄자 수가 증가함
 - 2020년 인천지역의 범죄발생수는 88,143건,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수는 30.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범죄가 많이 발생함

Ⅰ 범죄발생 수: 경기도 > 서울 > 부산 > 경남 > **인천**

Ⅰ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수: 제주 > 부산 > 서울 > 대전 > **인천**

-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자 및 노인 범죄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노인의 법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해짐
- 두 번째, 인천지방법원의 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 수와 항소심 형사공판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서도 많음
- 전국적으로 10년간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이 감소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수원, 대구 다음으로 많고, 서울고등법원 관할 중에서 가장 많음
- 항소심 형사공판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수원 다음 두 번째로 많음

[10년간 변화]

- 전국: 2011년 278,166건 → 2020년 160,300건 (↓)
- 인천: 2011년 21,945건 → 2020년 24,863건 (↑)

[타 지역 비교]

- 전국기준(2020년): 수원 > 대구 > 인천 > 부산 > 광주
- 서울고등법원 관할(2020년): 인천 > 서울중앙 > 의정부 > 서울남부 > 서울북부 > 서울동부 > 서울서부

- 세 번째, 실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제1심 형사공판 합의 사건 처리 결과 중 ‘항소’ 수는 2020년 기준 809건으로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형사공판 사건 수(738건)보다 많고, 대전고등법원(868건)에 근접함
- 2016년부터 2020년 5년 평균치(875건)의 경우에는 대구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수보다 많음

■ 인천지방법원 제1심 형사공판 합의 사건 중 ‘항소’ 수

- 2020년 809건
- 2016~2020년 5년 평균: 875건

■ 고등법원 항소심 형사공판 사건 수와 비교(2020년)

- 서울(3,405) > 부산(1,374) > 수원(1,148) > 광주(1,036) > 대전(868) > 인천(809) > 대구(738)

*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 중 항소수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형사공판수에 포함될 수도 있음.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형사공판수는 해당년도에 접수된 건수로 인천지방법원 제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 중 항소가 해당년도에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의 접수건수를 그대로 표시함

- 인천지방법원의 항소 수가 고등법원의 항소심 건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음

- 네 번째, 이러한 인천지역의 형평성 문제는 다른 원외재판부의 항소 수(1심 합의22))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짐
- 2020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1심 합의 사건의 항소 건수 1,710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 중 가장 많음

Ⅰ 항소 수 비교

- 인천(1,710) > 창원(1,218) > 전주(852) > 춘천(688) > 울산(650) > 청주(571) > 제주(377)

- 심지어 인천지방법원 1심 합의 형사공판의 항소 수는 809건으로 다른 원외재판부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형사공판 항소 수가 549건인 창원원외재판부에 형사부가 2개 설치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인천원외재판부에도 최소한 2~3개의 형사부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
- 인천지방법원 1심 합의 사건의 항소율이 모든 소송유형에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보다 낮은 이유로 이러한 항소심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²³⁾

[표 2-32] 원외재판부가 설립된 지방법원의 소송유형별 1심 합의사건의 항소율(2020년)

(단위: 건, %)

	민사			가사			행정			형사공판		
	1심 합의	항소	항소율	1심 합의	항소	항소율	1심 합의	항소	항소율	1심 합의	항소	항소율
인천	2,613	504	19.3	318	31	9.7	1,512	366	24.2	1,565	809	51.7
춘천	875	209	23.9	89	23	25.8	423	122	28.8	508	334	65.7
청주	840	148	17.6	83	16	19.3	395	105	26.6	522	302	57.9
울산	888	212	23.9	106	12	11.3	588	82	13.9	530	344	64.9
창원	1,918	423	22.1	170	40	23.5	959	206	21.5	997	549	55.1
전주	958	241	25.2	91	16	17.6	441	100	22.7	696	495	71.1
제주	599	88	14.7	26	7	26.9	234	100	42.7	661	182	27.5

22) 1심 합의 항소수만 분석한 이유는 1심 단독의 항소심은 지방법원이 심판권을 갖지만 1심 합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심판권을 갖기 때문임

23) 항소 및 항소포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 즉, 제주는 민사, 형사공판의 항소율은 낮는데 반해 가사, 행정소송의 항소율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모든 소송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항소율이 낮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 심층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함

-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형사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1심 법원의 소송구조는 업무량의 과다, 소송 경제상의 이유, 즉 1심 법원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들은 1심 법원보다는 항소심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최대호, 2019), 접근성의 문제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인천지역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함
 - 또한 인천지역의 범죄 건수 증가(노인범죄수, 노인피해자수)에 따라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항소 수도 가장 많은 인천지역에 원외재판부 형사부가 없다는 것은 인천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는 법률서비스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²⁴⁾
- 따라서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부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닌 ‘당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형사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 검사도 인천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종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던 구속 피고인들을 이미 과밀수용상태인 인천구치소로 보내야 해서 수용공간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배영철, 2021.10.17.),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해당 기회를 통해 인천구치소의 시설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위에서 제시한 논거들은 인천원외재판부 형사부 설치뿐만 아니라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논거들로도 가능함
 - 기존 원외재판부를 설치한 지역들이 고등법원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원외재판부를 설치함. 그러나 법률행정의 완결성 등을 고려할 때 원외재판부보다는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재호 외(2019)는 울산고등법원이 아닌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이유로 예산절감 효과를 들었고, 최대호(2019)와 최성환 외(2019)는 의정부에 고등법원이 아닌 원외재판부

24) 제주를 제외하고 1심 합의 형사공판소송 수가 인천의 절반 이하인 지역(춘천, 청주, 울산)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됨

설치이유로 수원고등법원 설치시기에 따른 시기 문제와 함께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이 원외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함

[표 2-33] 항소법원으로 원외재판부 설치 주장 이유

연구자	지역	고등법원이 아닌 원외재판부 설치 주장 이유
이재호 외 (2019)	울산	- 예산절감 효과 - 고등법원 설치 위한 별도 건물부지 마련과 건축을 위한 예산이 들어감
최대호 (2019)	의정부	- 수원고등법원(2019)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 설치 주장은 시기상조임 * 수원고등법원 설치이유: 경기남부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및 사건 수의 증가, 관할기관인 서울고등법원의 업무과다 -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임
최성한 외 (2019)	의정부	-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의 설치형태임

-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지역의 행정, 정치인, 법조인, 시민단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은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된 2019년에도 나타났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만 제시함

[표 2-34] 인천고등법원 설립 노력

구분	내용	출처
시민단체 인천고법 설치 공동성명 발표 (2019.11.12.)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 경제단체 등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원외재판부로는 항소심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사건은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다른 지역보다 많음	인천투데이(2019.11.12.)
인천지역 고등법원 설치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1.11.11.)	- 인천정치인과 법조인 등 304명이 인천 지역 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 -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곳으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임	인천투데이(2021.11.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2020.6.24.)	2025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김교홍(인천서구갑),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계류중(의안번호 2100941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참고로,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는 2023년 160억 2,600만 원, 2027년 69억 9,100만 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767억 5,200만 원(연평균 353억 5,0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함

[표 2-35] 인천고등법원 설립 비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연평균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설치비용	16,026	140,227	6,676	6,832	6,991	176,752	35,350
비용추계 전제	•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이 같이 설치됨(경찰청법 제3조) •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개정안 시행일 2025년 3월 1일 - 2023년 및 2024년 청사 건축 - 2025년부터 인력증원 • 추가재정소요=청사건립비용 + 운영비용 - 청사건립비용: 토지매입비+공사비+부대경비(설계, 감리, 시설부대비) - 운영비용: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주: 이와 같은 비용 추계는 청사건립비용과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토지 확보 방안에 따라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 권역별 지방분권: 서부 수도권으로서 메가시티

- 다음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분권 및 행정개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09년 9월 28일 발표한 「향소심구조개편안」에서 고등법원 지부 기준으로 관할인구, 사건수, 지리적 접근도, 정서적 접근도, 실제 생활권, 교통권, 발전 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함. 이는 고등법원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향소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권의 충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최대호, 2019)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법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제정하여 분권사법 또는 자치사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사법의 주된 임무인 재판은 대전제인 법률 및 규칙의 해석과 소전제인 사실의 확정 과정으로서, 사실의 확정이 재판과정의 주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의 확정을 위해 소송자료의 추가·보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야 함
- 사실의 발견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가까울수록 용이하고 또한 사실심 재판권을 지방에 이전하여 자치사법을 실현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음
- 따라서 국가사법의 틀 속에서 분권사법을 구축하는 작업은 사실심을 중심으로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는 재판구조를 확립하는 것임

○ 행정개편과 관련하여 인천, 부천, 김포, 시흥을 묶는 500만 메가시티, 즉 서부 수도권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21년 10월 정부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권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이남 4개 권역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고, 수도권 중 인천이 서울·경기 틈에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인천투데이, 2022.1.4.)
- 2040년 부울경은 인구 1,000만 명,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600만 명, 대구·경북은 550만 명, 광주·전남은 500만 명의 거대 생활권을 이룬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고, 전북·제주·강원 등도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이에 인천도 주변 지역들과 함께 500만²⁵⁾ 광역단체를 만들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천이 겪는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참고로 2022년 7월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지원’을 제시하고 있어 초광역 메가시티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 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정부 현장 기반 통합 지원

25) 일반적으로 도시인구가 500만명 이상은 되어야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봄

제3장 국내·외 고등법원 설립사례

1. 고등법원 설립 국내사례
2. 고등법원 설립 해외사례



1. 고등법원 설립 국내사례

1) 수원고등법원 사례

(1) 추진 배경 및 주요 이슈

○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인구 및 면적

- 2004년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외 경기남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하였음
- 성남지원과 여주지원, 안산지원, 평택지원까지 포함하면 그 면적이 약 5,558km²로 관할구역 면적이 수원시의 약 45배에 달하는 매우 넓은 면적이었음
-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인 16시 3군의 총인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68.96%의 증가율을 보여 관할인구 또한 급속도로 증가
- 당시 수원지방법원 관내의 인구수는 타 지방법원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단일지방법원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관할

○ 소송사건 수

- 1995년 대비 2005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제1심 평균 88.42%, 항소심 평균 392.64%의 급증세를 보임(백윤기 외, 2007)
- 타 지방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접수된 사건 수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보임
- 전체 본안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사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4%인 반면 비송사건은 전체 중 15.5%를 차지하며, 비송사건 비율이 타 지방법원에 비하여(대전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하고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남(백윤기 외, 2007)

○ 서울고등법원 이용으로 인한 사법서비스 질 저하 문제

- 경기도민은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됨
-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중에 경기도민의 항소사건 비율은 약 21.6%를 차지
- 재판 지연으로 인한 재판 결과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으며, 지역민 사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등의 ‘재판청구권’ 피해가 존재함(경기개발연구원, 2014)

-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부담해야 하며,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여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도민들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²⁶⁾

(2)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지역적·경제적 파급효과

- 수원고등법원의 설치는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함(경기개발연구원, 2014)
 -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법률시장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경기개발연구원, 2014)
 -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설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85억 원, 고용유발효과 1,318명으로 전망
 - 경기지역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유입되면서 법률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467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었음
 - 경기도민은 서울로의 왕복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연간 약 3만 4천 시간의 절감효과와 약 7억 원 이상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
- 법률서비스 개선 및 사법분권 강화 등 비경제적 효과 유발(경기개발연구원, 2014)
 - 경기도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판사들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리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재판 기간의 장기화를 해소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서울로 집중된 사법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지역법학전문대학원을 활성화하여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수원고등법원의 설치로 지역 내 인구 및 사건 수에 부합하여 지역균형을 도모함
 - 경기도 내에 위치한 687개의 사업체(전국의 20.5%)의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증가로 인해 일하기 좋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조성 가능함(경기개발연구원, 2014)

26) 사실 수원고등법원은 교통비와 숙박비 비용을 계상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편임. 다만, 수원고등법원의 관할권이 경기권 남부지역으로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사법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은 편임.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원고등법원은 설립 후 사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할구역이 원래 속하였던 서울고등법원의 수요도 수원고등법원 분리 후에도 업무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수원고등법원 설치 추진 과정

- 수원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수원지역의 지방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7년 처음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함
- 이후에 ‘경기고법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 수원시의회 ‘고등법원 수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유치 서명운동 전개 등의 과정을 진행하며, 3차에 걸친 법안 발의 실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4년 3월에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으로 수원고등법원의 설치가 확정됨

[표 3-1] 수원고등법원 설립 추진 타임라인

내용
• 2006. 수원지역 지방법조인 중심으로 고법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 2007.07.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첫 발의 - 경기도 국회의원 19명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2007년 6월 ‘서울고법 관할구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수원 광교신도시에 경기고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 국회에 고법설치법안 발의 후, 수원시는 시민, 지역 법조인들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시작 • 2008.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폐기(회기 종료) • 2008.07.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발의(2차) - 원유철(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2010.03.29.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 추진위는 경기도언론인클럽 회장,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공동대표로 함 - 추진위는 당시 2010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 1200만 명 서명운동 돌입 • 2011. 수원시-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수원시의회 ‘고등법원 수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 2011.05~12. 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 전개 • 2011.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2차) 폐기 • 2012.06.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발의(3차) • 2013. 경기도-수원시-시민단체-법조계-학계 연대한 경기고법유치 TF팀 구성 • 2013.01. ‘고법 수원유치 공동건의문’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 -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아주대법학전문대학장이 함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 전달 • 2013.03.0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에 경기고등법원 설치 제안 결정 • 2013.03.17. ‘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유치 활동 동참 선언 -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고등법원 부지로 내놓는 방안 등을 검토 • 2013.05.12. 기존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서명운동’ 진행 결과 총 2만4174명 서명 참여 • 2013.05.19.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 • 2013.05.21.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출범

- 법조, 정치, 경제계 인사 등 도민 400여명이 발대식 참여
- 2013년 9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 115만 명 서명운동 추진
- 경기고등법원 수원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병행(경기연구원)
- 2014.02. '경기(수원)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03.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원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수원가정법원 확정, 법안 첫 발의 이 후, 7년간 진행됨
- 개정이유: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중략)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8)
- 2014.11.27. 수원고법, 고검 북수원, 광교, 영통 지역 유치전 과열
- 2014년 말까지 부지가 결정되지 않을 시 2019년 개원 불가
- 사실상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이전(2018년 예정)을 위한 광교법조타운 (6만5000㎡)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법,고검 부지활용이 용이한 상황이었음
- 2015.04.02. 수원고법·고검 설치 업무 협약식
-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로 입지 확정 (광교신도시-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수원지방법원+지방법검찰청 포함 4개 기관 입지, 수원가정법원은 영통동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에 건립)
-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행정처 차장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2일 경기도청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체결
- 2018.08. 개원·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
- 2019.03.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개원·개정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 설치)

자료: 이인재·민혁기(2020)

2) 울산시 고등법원(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설립 요구사례

추진 배경 및 주요 이슈

-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 한 곳만 설치되어 있을 뿐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조차 없는 실정
 - 울산시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적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울산시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였음(이재호 외, 2013)
 - 울산, 양산 및 주변 지역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재판인력 확보와 재판의 전문성 확보, 재판업무량의 적정성 확보, 재판운영상 국민의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관할 인구수 및 사건 수
 - 2013년 당시 전국의 고등법원 관할지역과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지역(양산시 포함)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52.1%, 부산 15.8%(울산 포함), 대구 10.2%, 광주 11.6%임에 비해 울산·양산은 2.8%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를 보임(이재호 외, 2013)

- 울산지역은 인구에 비해 사건 수가 많은 지역에 속하였음
- 고등법원 소재지와 인구 및 사건 수 비교에서는 울산고등법원 유치의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와 비교에서는 울산의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의 타당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이재호 외, 2013)
- 가정법원 설치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국의 16개 가정법원 지원은 모두 도 단위의 중소도시에 산재해 있으며 사건수도 2011년 기준으로 최소인 전남 장흥의 476건, 최대인 충남 천안의 6,477건에 비해 울산은 최소 1.8배에서 최대 24배에 달함(이재호 외, 2013)
- 16개 가정법원 지원의 평균 사건 수는 2,516건인데 비해 울산은 11,649건으로 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이재호 외, 2013)

○ 울산 및 양산 주민의 평등권 침해 문제와 사법권의 분권화 문제

-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였을 때 구체적으로는 가정지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고등법원의 순으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지원과 가정법원 부분은 거의 위험적인 수준으로 평등권 침해가 심한 것으로 분석(이재호 외, 2013)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은 행정권한의 분산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사법권의 분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분권화를 위해서 울산에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 가정법원의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됨

3) 의정부(경기북부 지역) 고등법원 설립 요구 사례

◆ 추진 배경 및 주요 이슈

○ 관할지역의 인구 및 면적

-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1심 사건과 1심 단독사건의 항소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의 고양지원(고양시, 파주시 관할)에서의 1심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였음(최대호, 2019)
- 그 밖에 경기북부 전체의 행정소송을 관할하고 있고 그 규모가 방대하여 업무처리, 물품공급 및 인사이동 등에 있어서 타 법원과 다른 특수성을 지님(최대호, 2019)

- 의정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시·군의 인구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30만 명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였음

○ 소송사건 수

-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항소심에서는 모두 증가함(최대호, 2019)
-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그 수가 증가함. 이러한 경향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1심판결에 대한 불복률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이에 항소심 법원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최대호, 2019)

○ 경기북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및 경기도 분권화 문제

-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사법접근성의 불이익으로 인해 항소심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함
 - 전국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각 지역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되, 각 지역단위의 고등법원의 독자성을 부여하면서 그 지역에 설치된 법원의 법관임용과 사법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의 중앙집권화를 방지할 수 있음(최대호, 2019)
-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법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소요시간 또는 이동 거리상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판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최대호, 2019)

2. 고등법원 설립 해외사례

○ 외국의 경우 사법제도나 법원구조는 물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인천의 사례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줄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미국과 독일의 경우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누어져 각각 독립적으로 법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최종심으로서 최고재판소와 그 아래 하급재판소 (고등, 지방, 가정재판소 포함)를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 재판소 설치와 관할구역의 선정은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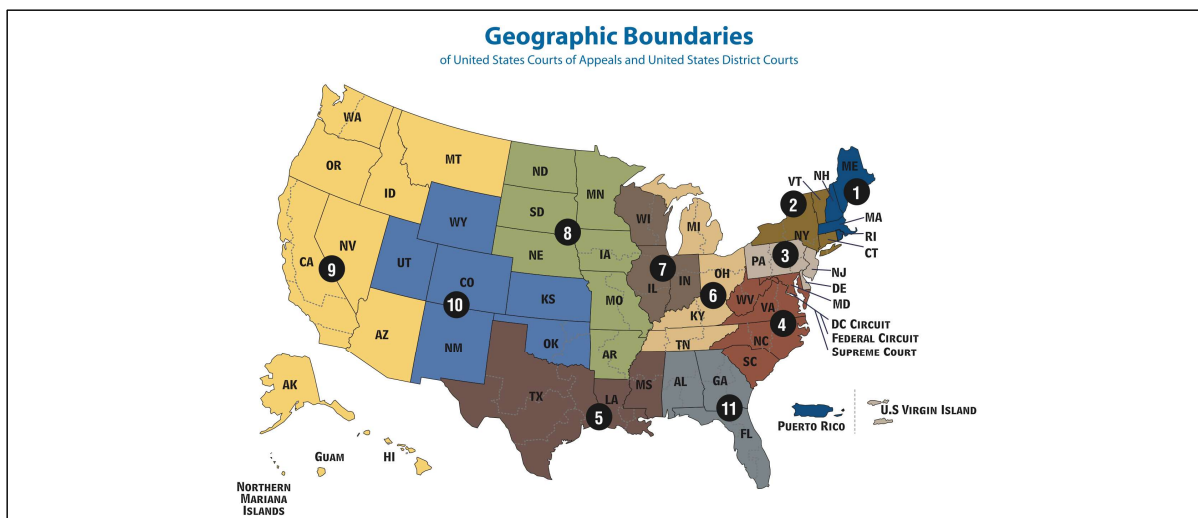
○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법원 내에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를 구성하고 있음

(1) 미 연방 및 주 고등법원 기본 구조 및 설치 배경

○ 연방 고등법원은 연방법원 내에서 항소심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미에 11개의 지역기반 연방 순회법원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특별구법원, 특허 관련 특별 항소법원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연방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 11개의 연방 순회법원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최소 세 개 이상의 주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재판들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됨

[그림 3-1] 미 연방순회법원



- 각 연방 순회법원의 판사수는 지역의 인구나 사건수에 따라 상이하나 관할인구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1고등법원(메인, 메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주 등 관할)의 경우는 6명, 관할인구 및 관할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제 9고등법원(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턴 주 등)는 28명의 판사를 두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방대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배치됨
- 미국에서도 연방 주 고등법원에서 처리되는 항소심 사건의 양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사건의 수에 비해 고등법원 판사수가 적어 개별 법관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하나의 고등법원이 여러 주를 동시에 관할하는 경우 민원인의 불편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음
- 그러나 연방법원의 추가 신설은 연방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 법원에 비해 신설을 위한 절차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이 사실임
- 특히, 연방법원 내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경우 하나의 고등법원의 관할지역 내에 복수의 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관할지역의 범위도 지나치게 크고 지역 내의 인구나 사건수도 판사수나 운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고등법원 신설의 요구가 있어 왔으나 실제로 추가된 경우는 많지 않음
- 1990년 이후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어 신청인의 재판권익이 침해되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방 고등법원이 신설되어 왔고, 고등법원이 없는 주의 경우 무작위추첨을 통해 지구 내 판사들을 파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순회법원 제도도 동시에 운영해 왔음
- 미국의 50개 주는 각주의 역사적 전통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법원 체계를 구성해 오고 있으며, 각 계층별 법원의 공식명칭이나 관할구역은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1심법원, 2심법원, 최고법원 및 특별법원으로 구분

(2) 미 연방고등법원 배치의 문제점 및 대응

- 미 연방고등법원 전체에 200명도 되지 않는 판사들이 전국의 항소심 재판을 관장함.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고등법원이 적게는 3개 많게는 11개 주를 관할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소 당사자가 시간 및 비용을 들여 타주의 항소법원에까지 출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옴
- 특히 캘리포니아와 앨래스카, 하와이, 괌까지 포함하고 있는 제9고등법원은 넓은 관할구역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원 외에도 오리곤, 워싱턴 주 등에 지원을 설치하여 항소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해왔지만, 이것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고등법원의 신설이라 보기 어려운 일시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에 신설된 미 연방고등법원은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주를 관할하고 있는 제11고등법원으로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까지 대부분의 동남부지역 주들을 포괄해서 1년에 4천 건 이상의 극심한 업무량을 호소해왔던 제5고등법원에서 1981년 신설 독립, 분리됨
- 이러한 새로운 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우선 해당지역의 1심법원과 판사들, 변호사들이 고등법원 신설을 청원하였고, 이를 공청회에 올려 사건 수의 증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어 지역 내 재판신청인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최종 연방의회에서 받아들여 신설법원의 설치를 결의하게 됨
- 그러나 1981년 이후 더 이상의 연방 고등법원 설치는 이루어지 않았고, 대신에 순회 법원제나 켈린더링 과정을 통해 고등법원 재판민원 대응
 - 순회 법원제도: 고등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법원 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들을 무작위로 선출, 파견하여 해당 주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파견된 판사들은 2년간 관할 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고등법원과 같이 항소심을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
 - 켈린더링 과정: 순회법원 판사를 고등법원이 없는 각 주에 파견하는 방식으로써 항소심 사건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어 각 지역에 배치하는 시간표를 완성하는 과정임. 이 시간표에는 소송사건 심리 8주 전까지 제안된 소송 담당 판사와 소송사건의 개요가 기재되며, 주재자는 제안된 심리시간을 최종 결정, 수정한 후 확정된 소송표를 공고함으로써 판사들에게 알리게 됨

(3) 시사점

- 미국의 고등법원 운영방식은 우리나라 현 사법제도와 상이한 점이 많아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기 어려우나 재판 민원의 편의성 및 형평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회재판제도나 캘린더링 등 다양하고 신축적인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음. 즉, 미국은 연방제 특성상 고등법원 관련 민원을 고등법원을 신설함으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재판운영의 방식을 통해 해결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음

2) 독일

- 독일은 개별 주와 연방의 분권화를 바탕으로 각 주마다 주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두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대법원만 두고 있음
- 토지나 인구가 큰 지역의 경우 복수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의 경우 권역별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 즉, 미국과 유사하게 관할범위가 크고 사법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사법적 요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치적 사법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음
- 따라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과정에서도 지역민의 민심이나 의견이 많이 반영될 뿐 아니라, 지역의 고등법원 판사나 가정법원 판사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도 강하게 보장되어 있음

(1) 독일의 고등법원 기본 구조 및 설치 배경

- 독일의 주 고등법원의 설치 및 재판관할권 분배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1877년에 제정된 제국법원조직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지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고등법원들이 지속적으로 신설

[그림 3-2] Germany Judicial Map



- 즉, 1906년에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신설되었으며, 1938년에는 자브뤼켄 고등법원이 확대 신설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튀빙엔, 프라이부르크, 코블렌츠, 브레멘 고등법원이 신설되는 등 고등법원들 간 재판관할권 조정 기간을 거쳐 현재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주에 총 24개 고등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보통고등법원 산하에 지방법원과 구법원이 설치

(2) 독일의 고등법원 배치 경험 및 시사점

- 독일은 뿌리 깊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문화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왔고, 변화하는 재판수요에 대응
- 독일의 고등법원 배치도 지역 내 토지 및 인구의 크기를 주요인으로 삼고 있는데, 즉, 관할하고 있는 토지와 인구 규모가 큰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주의 경우 복수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산하에 많은 지방법원과 구법원이 설치됨. 이들 주에 거주하는 인구를 합하면 전체 독일 인구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사법적 요청도 크기 때문에 다수의 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충실하게 보장해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자치적 참여 및 독립적인 자치권 행사가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

- 지방자치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법원 신설 및 재배치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자치권 및 자치적 사법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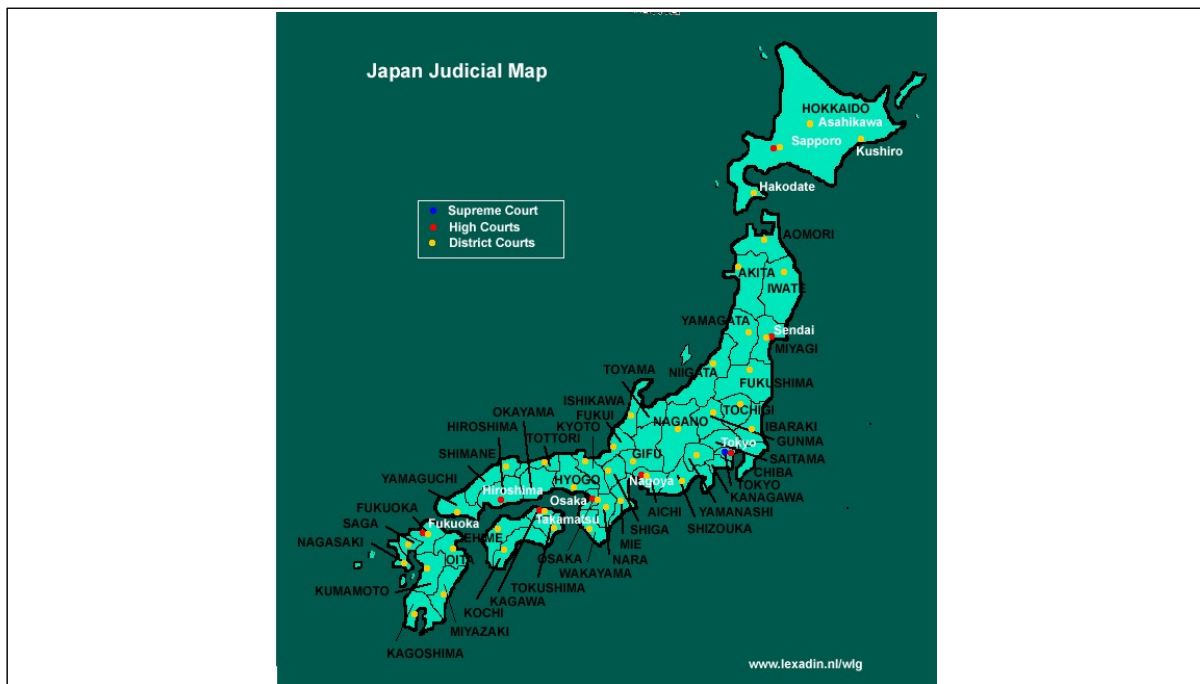
3) 일본

- 일본의 법원조직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여, 헌법 규정에 따라 최종심, 최상급 재판소로서 대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항소법원으로서 고등재판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하급재판소인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도 등이 설치되어 있음

(1) 일본의 고등법원 기본 구조 및 설치 배경

-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재판소의 설치나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현재 아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쿠오카, 히로시마, 나고야, 오사카, 삿포로, 센다이, 타카마츠, 도쿄 등 총 8개의 고등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고등재판소 아래 총 50개의 지역재판소가 47개 각 현마다 하나씩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그림 3-3] Japan Judicial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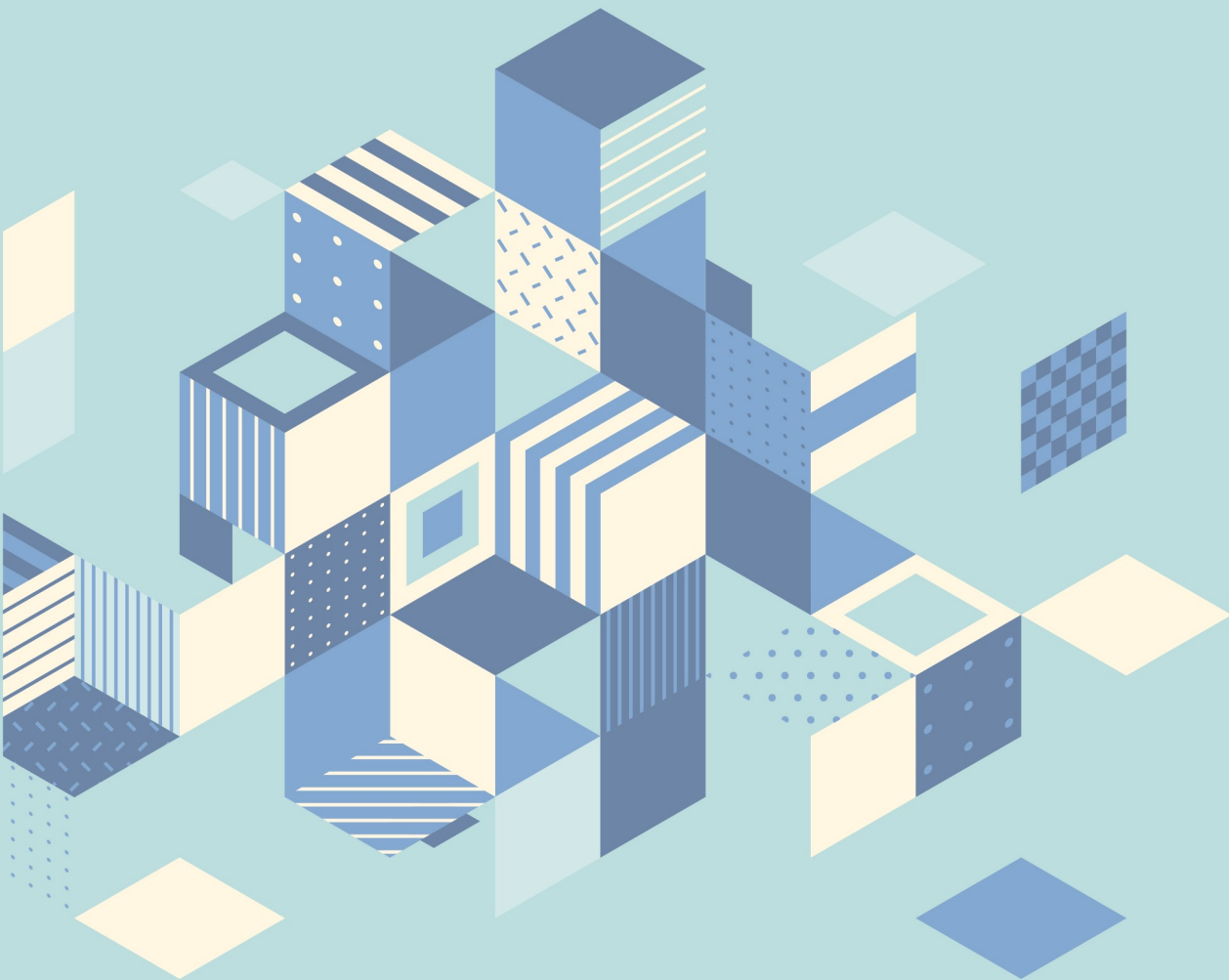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8개의 고등재판소도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가능한 모든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에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의 불만이 크고 재판소 증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단순히 지역의 인구 및 크기, 거리 등만 고려하여 관할지역을 설정했다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보유한 지역적 정체성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의 수직적 구획에 따라 법원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 일본의 고등법원 배치 경험 및 시사점

- 이러한 고등재판소 증설 요구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등재판소 지부가 설치되어 왔는데, 이는 재판소 본청 설치만큼 인력과 경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의 사법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일부 있는 반면, 장기적인 사법서비스 확충으로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 존재
- 나고야와 오사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등재판소를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경우 지역적 안배뿐만 아니라 인구, 교통, 소송사건의 크기나 성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지역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즉, 일본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요청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재판소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제4장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2. 일반시민 수요조사 결과
3. 전문가(변호사) 수요조사 결과



제4장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 인천고등법원에 대한 수요를 알기 위하여 인천시민 대상과 전문가 대상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함. 인천시민 대상 설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착안하여 조사 실시
 - 일반 시민들의 경우 법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주변 보행자를 중심으로 대면으로 설문조사 실시
 - 전체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는 조사원을 통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실시하여 성별, 연령별 할당 효과가 있도록 조사함
- 인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 대상, 즉 인천 법원서비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분석함
 - 변호사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성별 및 연령별 할당은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설문은 경우에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설문문항을 통하여 변호사의 수요를 보다 명확하게 알도록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하여 질적 응답을 유도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수요자적 시각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함

1) 일반시민 대상 조사개요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 응답자는 총 262명임
 - 조사 일시: 2022년 6월 15일 ~ 2022년 6월 18일(총 4일간)
 - 사법서비스 이용자를 최대한 추출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직접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다만, 조사원 교육을 통하여 성별, 연령별 할당이 될 수 있도록 함
 - 유효 응답자는 총 262명이었음. 이 중 사법서비스 경험자는 194명임
 - 거주지역에 대한 표기는 인천지방법원 주변에서 대면조사로 인하여 미추홀구가 가장 많았음. 이에 따라 거주지역에 대한 편향성은 존재함²⁷⁾

27) 다만, 이러한 거주지역의 표기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기 보다는 활동지역 표기로도 추정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과 관련된 사법서비스를 경험자가 전체의 74%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사무실에 근무할 경우 거주지역을 미추홀구로 응답했을 수도 있음.

○ 응답자 262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1] 응답자(일반시민)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62	100.0
성별	남	131	50.0
	여	130	50.0
사법서비스 경험여부	있음	194	74.0
	없음	67	25.6
	무응답	1	0.4
연령	20대	17	6.5
	30대	47	17.9
	40대	63	24.0
	50대	71	27.1
	60대 이상	64	24.4
거주지역	중구	12	4.6
	동구	5	1.9
	미추홀구	121	46.2
	연수구	43	16.4
	남동구	33	12.6
	부평구	18	6.9
	계양구	6	2.3
	서구	17	6.5
	강화군	2	0.8
	옹진군	0	0.0
	기타(김포)	1	0.4
	기타(인천 외)	1	0.4
	미응답	3	1.1
직업	자영업	42	16.0
	회사원/사무직	82	31.3
	전문직	41	15.6
	농업/어업	2	0.8
	전업주부	34	13.0
	생산/기능직	7	2.7
	판매/서비스	23	8.8
	학생	6	2.3
	무직	12	4.6
	기타	13	5.0

- 위 유효응답자 중 사법서비스 경험이 있는 자들만 추출해서 분석하면 남성은 55.7%, 여성은 43.8%, 20대가 6.2%, 30대가 20.1%, 40대가 27.3%, 50대가 27.8%, 60대 이상이 18.6%로서 위 사법서비스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과 합한 표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아래에서는 사법서비스 경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를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함

2) 전문가(변호사) 대상 조사개요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응답자는 총 32명임
- 조사 일시: 2022년 6월 13일 ~ 2022년 6월 15일(총 3일간)
- 사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질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최대한 유도함
- 유효 응답자는 총 32명이었음. 업무 범위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할당이 평균적으로 73%였으며, 자기사건의 항소심 비율이 20%가 넘어 고등법원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²⁸⁾

[표 4-2] 응답자(전문가)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32	100
법조계 종사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2	6.3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37.5
	10년 이상 - 15년 미만	5	15.6
	15년 이상 - 20년 미만	7	21.9
	20년 이상	5	15.6
	미응답	1	3.1
업무지역 (평균)	인천 관내	73.06%	
	인천 외 지역	26.94%	
자기사건 항소심 비율 (평균)		20.52%	

28) 인천시 사법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보안 항소심 비율 중 1심 민사본안 단독 항소를 수치가 10.7%인데 비하여 변호사들이 인식하는 자기사건 항소심 비율이 20.52%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심리적으로 항소심으로 인한 사건 비중이 높다고 인식하거나 사건 자체의 수치가 아닌 실질적 업무 처리에 인한 시간 비용이 20%이상을 차지한다고 인식한다고 추정할 수도 있음. 즉, 고등법원으로의 거리 차이로 인한 시간적·심리적 비용을 훨씬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일반시민 수요조사 결과

1) 사법서비스 이용현황 인식

○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하여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등법원이 서울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소송을 위한 제반비용이 증대된다는 의견과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간 지연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86.9%,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의견은 80.5%,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78.9%,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는 응답이 77.0%, 비싼 수임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73.1%를 차지하고 있음

○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 194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도 일반 시민과 유사함

-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증대에 대해서는 90.7%,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은 90.2%, 시간 지연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약은 86.6%,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 지연은 82.9%, 상시적인 법률 상담의 어려움을 76.7%,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의 복잡함은 76.6%, 비싼 수임료 감수 문제를 73.1%가 지적하고 있음

[표 4-3] 일반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3 (1.1)	10 (3.8)	38 (14.6)	125 (47.9)	85 (32.6)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	3 (1.1)	7 (2.7)	14 (5.4)	118 (45.2)	119 (45.6)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따른다	3 (1.1)	6 (2.3)	25 (9.6)	116 (44.4)	111 (42.5)
서울 지역의 비싼 수임료를 감수해야 한다	3 (1.2)	21 (8.1)	46 (17.7)	93 (35.8)	97 (37.3)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	6 (2.3)	21 (8.0)	33 (12.6)	101 (38.7)	100 (38.3)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5 (1.9)	15 (5.8)	35 (13.5)	99 (38.1)	106 (40.8)
소송을 위한 제반비용(교통비, 시간적 비용)이 증가한다	4 (1.5)	3 (1.2)	18 (6.9)	99 (38.1)	136 (52.3)

2) 인천고등법원 미설립 이유에 대한 인식

- 인천시민이 이해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미설립 이유는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82.1%)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을 79.1%,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을 75.8%, 행정기관을 비롯한 전반적 지역 내 사법서비스 수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75.5%, 지역 내 정치권 등의 의지 부족을 74.7%, 인천 위상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 문제를 74.4%, 대법원의 설치 의지 부족을 72.6%가 지적하고 있음
-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 194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도 일반 시민과 유사하였으며,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86.1%),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80.9%)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 지역 내 정치권 등의 의지 부족이 77.7%,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을 77.6%, 인천 위상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 문제를 77.4%, 대법원의 설치 의지 부족을 76.2%, 행정기관을 비롯한 전반적 지역 내 사법서비스 수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74.8%로 지적하고 있음

[표 4-4]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미설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상급기관)의 설치의지가 부족하다	5 (1.9)	8 (3.1)	59 (22.5)	117 (44.7)	73 (27.9)
국회 등 정치권에서의 인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다	2 (0.8)	7 (2.7)	46 (17.6)	117 (44.7)	90 (34.4)
인천지역의 정치권 등의 의지가 부족하다	3 (1.1)	11 (4.2)	52 (19.9)	106 (40.6)	89 (34.1)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고,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이 낮다	1 (0.4)	10 (3.8)	52 (20.0)	107 (41.2)	90 (34.3)
행정기관을 비롯한 전반적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2 (0.8)	12 (4.6)	50 (19.1)	112 (42.7)	86 (32.8)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1 (0.4)	5 (1.9)	41 (15.6)	105 (40.1)	110 (42.0)
인천지역 인구 및 관할지역 규모 등의 위상변화에 대하여 인식이 낮다	1 (0.4)	11 (4.2)	55 (21.0)	113 (43.1)	82 (31.3)

3)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려요소

- 인천시민이 주장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려요소는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90.8%), 수도권 서부권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90.4%)으로 나타났음
 - 인천의 인구수와 면적 규모 85.1%, 지역 내 경제적 효과 85.0%, 항소사건 비율 82.3%, 전체 사건 수 비율 77.8% 순으로 나타났음
-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 194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도 일반 시민과 유사하였으나, 수도권 서부권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92.3%),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90.7%)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인천의 인구수와 면적 규모 85.6%, 지역 내 경제적 효과 85.0%, 항소사건 비율 82.0%, 전체 사건 수 비율 78.4%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와 같은 순으로 나타남

[표 4-5]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천의 증가하는 인구수와 면적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0 (0.0)	6 (2.3)	33 (12.6)	126 (48.3)	96 (36.8)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중요하다	0 (0.0)	5 (1.9)	19 (7.3)	123 (47.1)	114 (43.7)
인천의 전체 사건 수가 타지역보다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0 (0.0)	9 (3.4)	49 (18.8)	101 (38.7)	102 (39.1)
인천의 전체 항소 사건 비율이 높은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0 (0.0)	5 (1.9)	41 (15.6)	128 (48.9)	87 (33.3)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0 (0.8)	6 (2.3)	33 (12.7)	112 (43.1)	109 (41.9)
수도권 서부권(인천, 부천, 김포 등)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0.4)	5 (1.9)	19 (7.3)	120 (46.2)	115 (44.2)

4)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 인천시민이 이해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에 인식을 개인만족도와 도시경쟁력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인만족도 측면에서는 이용자 시간적 비용 절감이 93.1%로 나타나 시간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88.9%의 응답자가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이 82.5%, 인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 제공 효과를 80.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음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지역 내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기대 87.4%,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85.5%, 지역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 85.0%, 지역 내 법률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효과 83.2%,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 구축 82.5%, 지역내 엄격하고 공정한 법질서 체계 확립 기대 77.5%로 응답하고 있음

[표 4-6]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 인 의 만 족 도	이용자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0.4)	1 (0.4)	16 (6.1)	115 (43.9)	129 (49.2)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가 향상된다	0 (0.0)	7 (2.7)	39 (14.9)	99 (37.8)	117 (44.7)
	이용자의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0.8)	5 (1.9)	22 (8.4)	108 (41.2)	125 (42.7)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0.8)	7 (2.7)	43 (16.4)	109 (41.6)	101 (38.5)
도 시 경 쟁 력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0 (0.0)	3 (1.1)	35 (13.4)	118 (45.0)	106 (40.5)
	인천지역의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2 (0.8)	7 (2.7)	30 (11.5)	112 (42.9)	110 (42.1)
	인천지역 법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일 수 있다	2 (0.8)	5 (1.9)	37 (14.1)	113 (43.1)	105 (40.1)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2 (0.8)	7 (2.7)	24 (9.2)	112 (42.7)	117 (44.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1 (0.4)	7 (2.7)	38 (14.5)	117 (44.7)	99 (37.8)
	인천지역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과 질서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5 (1.9)	12 (4.6)	42 (16.0)	98 (37.4)	105 (40.1)

○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 194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도 일반 시민과 유사함

- 개인만족도 측면에서는 이용자 시간적 비용 절감이 95.9%로 나타나 시간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88.7%의 응답자가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이 83.0%, 인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 제공 효과를 79.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음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지역 내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기대 88.1%, 지역 내 법률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효과 87.5%,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86.6%, 지역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 83.0%,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 구축 82.0%, 지역 내 엄격하고 공정한 법질서 체계 확립 기대 75.2%로 응답하고 있음.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인하여 지역 내 법률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인천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94.2%),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를 마련하고(91.2%),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90.5%)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 필요(88.1%),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87.3%)하다는 문항도 높게 평가됨

[표 4-7]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1 (0.4)	3 (1.1)	19 (7.3)	127 (48.5)	112 (42.7)
인천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	1 (0.4)	3 (1.1)	21 (8.0)	104 (39.7)	133 (50.8)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증 및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1 (0.4)	3 (1.2)	11 (4.2)	123 (47.3)	122 (46.9)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2 (0.8)	6 (2.3)	25 (9.5)	110 (42.0)	118 (45.2)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2 (0.8)	6 (2.3)	23 (8.8)	112 (42.9)	118 (45.2)

-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 194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도 일반 시민과 유사하였음.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95.3%),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를 마련하고(92.3%),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90.7%)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 필요(88.7%),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87.1%)하다는 문항도 높게 평가됨

○ 인천시민들의 57.3%는 인천의 사법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6.4%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인천의 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법원 설립에 대하여 87.8%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 향상의 기대는 88.9%, 도시경쟁력 증대는 83.6%가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법서비스 이용경험자 194명은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현재 인천고등법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인천 사법서비스의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60.9%에 이룸. 현재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침.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인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의 기대는 90.1%, 도시경쟁력 증대는 84.5%가 응답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8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8] 일반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도 인천의 사법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46 (17.6)	104 (39.7)	69 (26.3)	25 (9.5)	18 (6.9)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2 (0.8)	6 (2.3)	24 (9.2)	108 (41.2)	122 (46.6)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2 (0.8)	3 (1.1)	24 (9.2)	112 (42.9)	120 (46.0)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다	1 (0.4)	5 (1.9)	37 (14.1)	108 (41.2)	111 (42.4)

3. 전문가(변호사) 수요조사 결과

1) 사법서비스 이용현황 인식

- 사법서비스 전문가(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인천시민들이 관내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 조사된 모든 변호사들이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과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증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이는 인천시민이 응답한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결과와 동일
- 그 외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는 응답이 93.8%, 시간 지연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87.5%, 비싼 수임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84.4%,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78.1%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의견은 7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4-9] 전문가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2 (6.2)	6 (18.8)	16 (75.0)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	0	0	32 (100)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따른다	1 (3.1)	3 (9.4)	28 (87.5)
서울 지역의 비싼 수임료를 감수해야 한다	1 (3.1)	4 (12.5)	27 (84.4)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	0	2 (6.2)	30 (93.8)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1 (3.1)	6 (18.8)	25 (78.1)
소송을 위한 제반비용(교통비, 시간적 비용)이 증가한다	0	0	32 (100)

2) 인천고등법원 미설립 이유에 대한 인식

- 전문가인 인천에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미설립 이유는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87.5%)과 인천 위상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 문제를 87.5%로 지적하고 있음.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84.4%), 지역 내 정치권 등의 의지 부족(81.3%)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 일반시민이 홍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데 반하여 전문가들은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인천 위상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대법원의 설치 의지 부족 78.1%, 지역 내 사법서비스 수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71.9%,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은 62.5%로 나타났다

[표 4-10]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미설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상급기관)의 설치의지가 부족하다	1 (3.1)	6 (18.8)	25 (78.1)
국회 등 정치권에서의 인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다	1 (3.1)	3 (9.4)	28 (87.5)
인천지역의 정치권 등의 의지가 부족하다	1 (3.1)	5 (15.6)	26 (81.3)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고,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이 낮다	3 (9.4)	9 (28.1)	20 (62.5)
행정기관을 비롯한 전반적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3 (9.4)	6 (18.8)	23 (71.9)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0	5 (15.6)	27 (84.4)
인천지역 인구 및 관할지역 규모 등의 위상변화에 대하여 인식이 낮다	1 (3.1)	3 (9.4)	28 (87.5)

3)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려요소

-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려요소로는 인천의 인구수와 면적 규모,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 수도권 서부권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 요소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들이 ‘그렇다’로 인식하고 있음
 - 일반시민들의 의견과도 유사하는 측면이 있음. 즉, 인천의 대도시로서의 규모에 걸맞는 사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에도 지역 내 경제적 효과 90.6%, 전체 사건 수 비율 87.5%, 항소사건 비율 8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인천의 증가하는 인구수와 면적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0	0	32 (100)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중요하다	0	0	32 (100)
인천의 전체 사건 수가 타 지역보다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0	4 (12.5)	28 (87.5)
인천의 전체 항소 사건 비율이 높은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0	6 (18.7)	26 (81.3)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0	3 (9.4)	29 (90.6)
수도권 서부권(인천, 부천, 김포 등)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0	0	32 (100)

4)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에 인식을 개인만족도와 도시경쟁력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인만족도 측면에서는 이용자 시간적 비용 절감이 100%로 나타나 시간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이 93.8%, 인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 제공 효과를 84.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 71.9%의 응답자가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음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90.7%,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 구축 90.6%, 지역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 87.6%, 지역 내 법률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효과 84.4%, 지역 내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기대 78.2%, 지역내 엄격하고 공정한 법질서 체계 확립 기대 71.9%로 응답하고 있음. 일반 시민에 비하여 지역균형 발전이나 지역사회와의 상생 이미지 등에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2]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개인의 만족도	이용자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0	0	32 (100)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가 향상된다	1 (3.1)	1 (3.1)	30 (93.8)
	이용자의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3.1)	8 (25.0)	23 (71.9)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3.1)	4 (12.5)	27 (84.4)
도시 경쟁력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0	3 (9.3)	29 (90.7)
	인천지역의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1 (3.1)	3 (9.3)	28 (87.6)
	인천지역 법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일 수 있다	1 (3.1)	4 (12.5)	27 (84.4)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1 (3.1)	6 (18.7)	25 (78.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0	3 (9.3)	29 (90.7)
	인천지역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과 질서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1 (3.1)	8 (25.0)	23 (71.9)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전문가들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마련과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노력이 필요(96.9%)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일반 시민과 동일함. 일반 시민들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 필요(93.8%),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90.6%)하다는 문항도 높게 평가됨
- 전문가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항목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법제도 개정 건의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음(93.8%). 구치소 여건 개선과 연계(80.7%), 법조타운 추가부지 조성 검토 필요(78.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천 지역 국회의원 참여 필요(71.9%)는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응답함

[표 4-13]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0	1 (3.1)	31 (96.9)
인천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	0	1 (3.1)	31 (96.9)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증 및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0	1 (3.1)	31 (96.9)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0	3 (9.3)	29 (90.7)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1 (3.1)	1 (3.1)	30 (93.8)
법·제도적 개정 건의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1 (3.1)	1 (3.1)	30 (9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 참여가 필요하다	0	9 (28.1)	23 (71.9)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조타운의 추가 부지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	7 (21.9)	25 (78.1)
인천검찰청의 열악한 구치소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설립 시 구치소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0	6 (19.3)	25 (80.7)

- 이번 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의 3/4은 인천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립된다면 원심(1심) 판결 후 항소건수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1/4이었음
- 또한, 변호사들은 현재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지역 사법서비스 제공의 불충분성에 대하여 78.2%가 응답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법원 설립에 대하여 96.9%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 향상은 96.9%, 도시경쟁력 증대는 93.7%가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에게 인천고등법원 설립 효과로 지역 변호사 사무실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 이바지에 대해서는 75.0%가, 인천지역 로스쿨 졸업자들의 지역 유입으로 인한 인재유출 문제 해결은 75.0%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전체적으로 지역 내 사법서비스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음

[표 4-14] 전문가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된다면 원심(1심) 판결 후 항소건수(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0	8 (25.0)	24 (75.0)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도 인천의 사법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25 (78.1)	7 (21.9)	0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0	1 (3.1)	31 (96.9)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1 (3.1)	0	31 (96.9)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다	0	2 (6.2)	30 (93.8)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변호사 사무실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다	0	8 (25.0)	24 (75.0)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인천지역 로스쿨 졸업자들의 지역 유입으로 인하여 인재 유출이 줄어들 것이다	0	8 (25.0)	24 (75.0)

6) 개방형 의견 조사 결과

(1) 변호사가 인식하는 인천 사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

○ 다른 행정서비스와는 달리 사법서비스는 변호사라는 대리인(agent)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실질적인 서비스 요구자들에 비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의견을 노출할 수 있는 체제임. 따라서 변호사들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한 결과 인천의 사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 전반적으로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은 항소심이 인천과 서울로 나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
- 거리로 인한 소송 수행 제약, 변호사로서 동 시간 대의 사건 처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존재함
- 성범죄의 경우 사진 및 영상 복사 제한으로 인하여 열람을 위해 다회 방문 시 불편함
- 수도권 서부지역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전반적으로 항소 비율 증가
- 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들의 사정상 거리적 편의성이 중요, 섬 지역은 더욱 접근성이 나쁨
- 서울 변호사 사무소 이용 시 수임료 부담이 늘어남. 대면 면담의 어려움 발생
- 실무상 재판이 1회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이때 시간적 비용, 심리적 비용 증가

-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차별적임
- 형사사건은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원거리 재판은 매우 큰 부담. 가족들의 방어권 제한
- 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구치소 변경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

- 시민들이 인천 사건의 항소심이 경우에 따라 인천과 서울로 나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함. 항소심 법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소송 진행에 있어 인천사무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거리로 인하여 소송 수행 제약이 있으며, 의뢰인(민사, 형사)의 직접 재판 참여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음
-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재판 진행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하고, 변호사로서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참석을 위해 동시간대의 다른 재판 시간들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의뢰인과의 상담에 집중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저렴한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진 및 영상의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열람을 위해 법원에 여러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때 교통비 및 시간적 비용이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함
-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하는데 2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인에게 큰 불편이 따름
- 기록 검토 및 상담 등 전반적 소요시간이 증가함
- 서울고등법원 재판이 있으면, 오전이나 오후 시간이 대부분 소요되었고 교통비, 식사비, 주차비 등 비용이 발생함
- 실무상 재판이 단 1회에 마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법관 자체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6-7개월임. 이 기간동안 하루 10분의 재판을 위해 하루를 소비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가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대우이며, 인천 시민에 대한 예우가 아님
- 민사재판은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형사 사건은 재판 때마다 본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원거리 재판은 일반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됨
- 재판 참석시 소재지 법원이 편리하고 소송에 대한 중압감이 덜함

(2)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장애 원인

-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장애 원인으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정치적 노력, 사회적 노력과 대법원의 사법서비스 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가 약함
 - 실질적으로 사법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시민들은 관심이 적을 수 있음
 - 사법부, 정치권, 입법부,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과 홍보 필요
 - 법원, 변협, 정치권의 토론회 및 협의 필요
 -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피력하기 어려움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미고려하는 경향
 - 법원조직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
 - 상급기관 및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인천지역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 규모에 맞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법부, 입법부의 태도 변화가 시급함. 법관 증원과 법관 파견상 문제, 청사 신축 및 증축 등의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얹혀 있으므로 대법원의 경우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할 것임
- 법원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겠지만 정치적으로 여야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큰 입장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 것이며, 인천지역과 서울 일부 지역 국회의원간 이해 충돌 정도에 불과할 것임
- 인천 지역 뿐만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아우르는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지역 규모를 감안하면 독립된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지역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소심 법원이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불편함과 불리함을 잘몰라 관심이 적을 수 있으나, 누구나 항소심 재판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 및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받게 될 불리함을 인지하고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법원, 변협, 정치권의 토론회 및 협의가 효율적임
- 지역주민 관심이 적고, 관심을 끌기 위한 인천지역 법조인과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함
-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임. 사건 수가 많음에도 대법원에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치 의지가 부족해 보임
- 인천이 서울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정치권 및 지도층에 만연한 것 같음. 규모에 맞게 독립적 생활권을 가진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리더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사법서비스 접근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법원, 정치권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가야한다고 하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
- 강남 중심주의, 엘리트 주의의 발로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심이 필요함
- 국회, 시의회 등에서 인천시의 성장 속도나 규모에 맞는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민들도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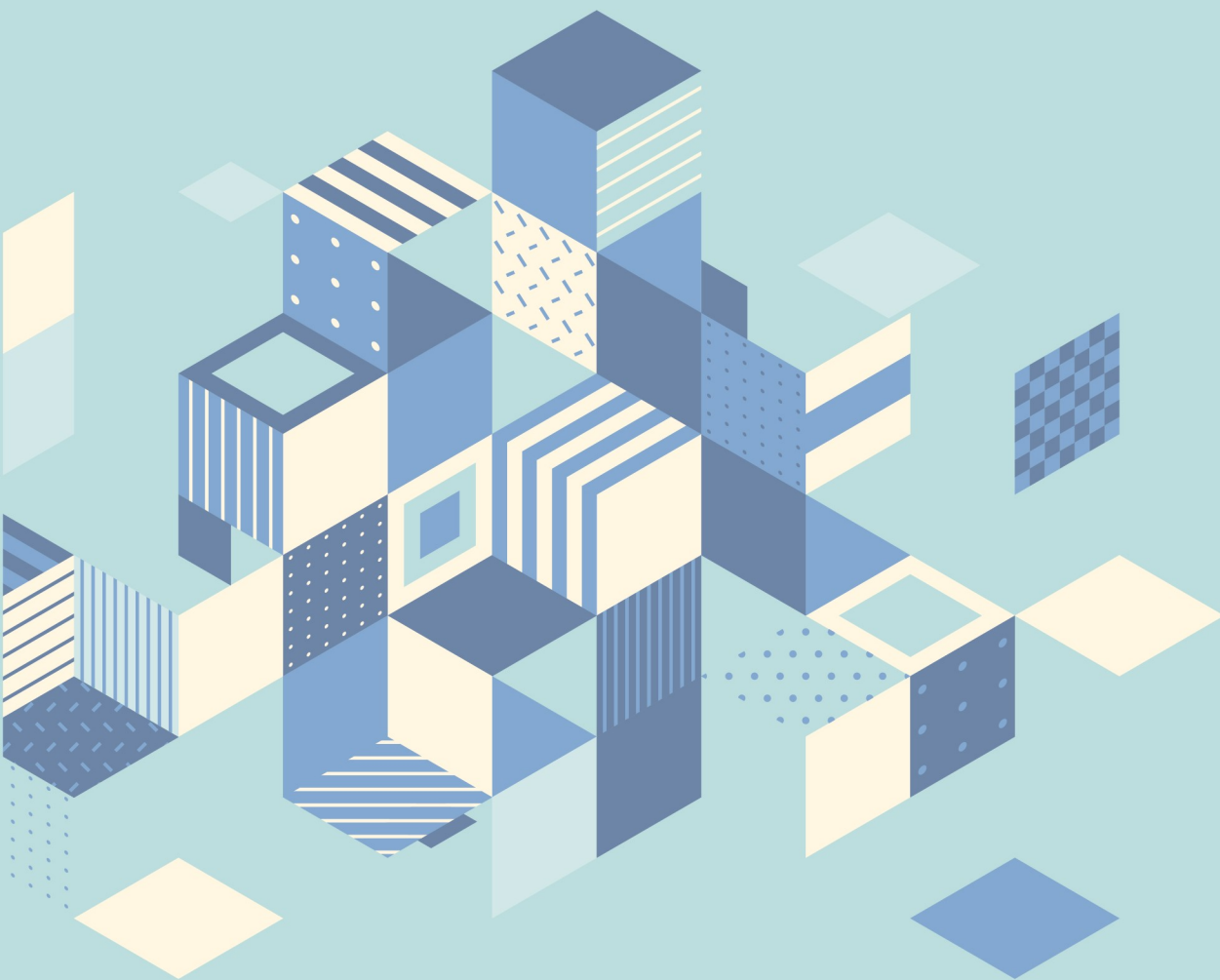
(3)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려요소 및 방안

-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및 대리인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내 변호사들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려요소 및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음
 - 시민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력 필요: 대대적 시민 운동 및 언론 홍보 활동
 - 지역출신의 국회의원, 정치권 적극적 노력 필요, 대법원과 기재부, 청와대 설득 필요
 -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인천의 도시 규모에 비하여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강조 필요(독립적 생활권을 가진 도시로서 평가)
 - 인천변협의 유치단 활동 활성화 요구
 - 법조타운 조성 및 입지에 대한 내부적 의견조율 필요
 - 구치소 상황, 검찰청 부지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노력 필요
 - 현 수원고등법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교통 요충지 역할, 도시 중심성에 비추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섬 등 지역적 특성 감안 필요)

-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비용을 아끼는 장점이 부수적으로 발생함
-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이유, 효과 등을 분석한다면 인천고등법원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임. 인천이 다른 광역시 등 지자체에 비하여 더 많은(특히 형사)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수도권 서부권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 인천 지역은 부천, 김포까지 관할지역이 광범위하며 항소비용이 높은 만큼 1심 뿐만 아니라 2심까지도 이용이 편리한 인천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시민들의 자기 주장 및 권리 주장을 많이 하여 점점 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져 항소심 재판의 접근편리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임 형사 국선번호 면에서 보면 형사사건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음
- 인천 전체 특히 서북부, 김포, 강화, 옹진 지역주민들은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경우 하루를 꼬박 시간을 내야하는 상황이며 생업에 타격을 입음
- 형사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속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방어권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형사 항소심의 경우 구치소 변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형사 피고인 및 가족들의 재판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원심 재판과의 효율적인 지속성 유지 및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항소심의 내용과 전문성이 보다 증대될 것임
- 인천과 강화는 섬이 많고 바다와 맞닿아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수원고등법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법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 지역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인천지역의 법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까지 기대할 수 있음
- 법조타운 관련 추가 부지조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구치소 상황, 검찰청 부지 문제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촉구됨
- 항소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구치소 여건 개선이 필요
- 인천지역주민의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법률적 뒷받침 필요
- 인천 변협의 유치단 활동 활성화가 필요함
- 법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날 것임
- 인천지역 로스쿨 정원이 50명에 불과함. 인천고등법원이 600만 인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면 인천지역 로스쿨의 인원확대 요구가 가능함
- 인천의 정체 항소 사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인천지방법원의 1심재판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이는 1심 재판부 인적구성과 재판과정을 개선시켜야 할 부분임
- 인천지역 법률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이 높아지려면 인천지역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더 커져야 하는데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서울지역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제5장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1.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2. 비계량적 효과 분석





제5장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1.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1) 분석의 주요 전제

(1)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의 현실적 고려사항

-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시계열 통계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법원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지표 및 비용과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적 분석이 일반적인 타당성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함(송상훈, 2013; 백윤기 외, 2007; 이재호, 2018)
 -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의 문제와 할인율 결정, 위험의 요인, 분배의 가중치 등 수많은 가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하연섭, 1997)
 - 청사 설립에 대한 건축비, 운영비, 인건비를 총비용으로 산정하지만, 입지에 따라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용의 추정이 어려움
 - 지역법률시장 활성화 등은 지역 내 인구 및 항소건수를 기준 산정함
 -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계량적 효과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며, 비용편익 분석 등의 경제성 분석보다는 지역 내 사건 수 추세, 인구변화 등의 요인에 따른 필요성이 강조됨
- 기존 연구들에서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추정과 산출의 어려움은 법원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한계로 이해할 수 있음
 - 고등법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항소사건의 수가 고등법원의 설립에 따라 증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타당성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음
 - 사건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 현재의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들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 광역자치단체의 지리적 범위 및 면적에 따른 법률 소외지역의 발생과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왕복하는 거리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분권에 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 간 차별 및 소외의 문제가 법률서비스를 포함하여 논의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인천지역은 강화도와 옹진군을 비롯하여 섬지역 및 교통 취약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접근성과 신속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법원의 특수성

- 인천지역의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은 사법제도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하며, 사법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고자 함
 - 사법기관은 서비스 기관으로, 사법서비스 기관의 설립 혹은 증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정의의 실현이 중요함(이재호 외, 2019)
 - 사법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감소 혹은 증대는 접근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됨(이재호, 2018)
 - 인천지역은 2019년 3월 원외재판부가 개원되었는데 이는 사법서비스에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지역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수, 인구 및 산업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가적 고려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서울과 인천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나 교통수단 및 접근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등법원의 설립은 국민에게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사법주권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이를 설치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었으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제공 및 신속성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법기관의 설립은 지역주민의 민원성 요구가 아닌 국민의 법원에 대한 접근권 및 사법서비스의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의 고등법원 운영은 서울고등법원이 수도권에 주요한 항소심을 전담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의 균등한 법률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존재함
- 즉, 인천고등법원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법주권의 구체화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이 지닌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의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함

2) 경제성 분석 방법: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1) 경제성 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경제성이란 투입된 비용 및 자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화폐단위의 재무적 수치를 뜻함
 -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법원의 설립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재무적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경제성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재무적 경제성은 사업 투자에 따른 수입을 주요 요소로 보는데 비하여, 사회적 경제성은 지역주민들의 무형의 편익을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됨
- 경제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비용편익분석으로 특정사업에 대한 결정, 투자사업에 대한 최적 규모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의 최적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 화폐가치를 활용하여 주로 시장경제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 및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음(Mishan & Quah, 2020).
-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에 대한 효과 혹은 편익이 비용보다 많은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왔음

(2)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방법

- 비용편익분석의 전통적 기법은 투자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회계적으로 판단하며, 대표적으로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PPM), 순현재가치(Net-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율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 편익비용비율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됨

- 회수기간법은 초기투자액에 대한 회수 기간을 산정하는 기법으로 단기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거나, 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순현재가치는 투자사업의 순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기법으로 미래 발생할 현금에 대한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여 산정함. 경제적 타당성의 여부 분석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할인율에 따라 분석결과와 편차가 크다는 단점도 존재함
- 내부수익율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으로 기대편익 수준을 설정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 대안의 비교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내부수익률에 대한 수준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편익비용의 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은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안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사업간의 상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함. 편익비용의 비율이 1보다 크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5-1]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기준

구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비(BCR)	비용회수기간(PP)
평가 기준	$NPV \geq 0$	내부수익률 $\geq$ 사회적 할인율	$B/C \geq 1$	$PP = \frac{\text{투자원금}}{\text{연간현금흐름}}$
장점	경제적 타당성 여부 분석에 유리	기대편익 수준 설정에 유리	판단이 비교적 용이	단기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유리
한계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값이 할인율에 크게 의존됨	내부수익률 수준 판단이 어려움	다양한 사업간 상대적 측정에는 어려움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움

자료: 농촌진흥청(2011)

- 법원 설립 관련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은 기존 연구들 및 정부 타당성 도출 관련 지침 등에서 명확하게 논의되거나 정의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비용과 편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적 측면만 검토함
 - 송상훈 외(2013)의 연구에서도 고등법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비용과 편익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용적 측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제적 편익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가하여 검토하였음

(3) 비용요소 산정 및 추계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편익과 비용을 요소로 고려하여 산출하며, 각 요소들이 실질적인지 등을 판단하고, 각 입지에 따른 경제성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연구에서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고려하고자 함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비용요소는 크게 청사 건설비와 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5-2] 인천고등법원 설립 비용요소

비용요소 분류	세부 비용요소
건설비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건축비
유지비	인건비, 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

- 건설비(청사 신축비)
 -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부지에 따라 토지 매입비간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고등법원 설립 후보지역에 대한 부지별 매입단가의 편차가 크다는 점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추계를 활용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의 건설비의 비용추계를 차용함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역시 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의 설치비용은 총 1,767억 5,200만 원이며 연평균 353억 5,000만 원임(2023년과 2024년 신축 및 2025년부터 운영으로 계상)
 - 추가재정소요=청사건립비용 + 운영비용(청사건립비용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 및 감리, 시설부대비 등의 부대 경비를 포함하며, 운영비용은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임)

○ 인건비 및 운영비

- 법관수 및 직원수 등은 인구 및 사건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구고등법원의 법관수와 직원수를 준용하여 계상하였음(자산취득비, 감가상각비용, 할인율 등은 제외)
- 대구고등법원은 현재 6개의 재판부(민사부 3개, 형사부 2개, 행정부 1개) 및 사무국 내 2개의 과(총무과, 민형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2명임

[표 5-3] 고등법원 관할구역 및 사건현황

(단위: 명, km, 건)

구분	인구 (명)	관할구역 (km)	법관 수 (명)	사건수(건)		
				계	본안	본안외
서울고등법원	18,815,308	22,185.49	209	44,216	20,659	23,557
대전고등법원	5,543,195	16,625.00	33	5,965	2,277	3,688
대구고등법원	5,003,121	19,911.52	26	4,560	1,812	2,748
부산고등법원	7,786,155	12,372.48	45	8,719	3,592	5,127
광주고등법원	5,732,549	22,725.71	36	5,938	2,532	3,406
수원고등법원	8,676,039	5,570.61	40	7,958	3,540	4,418

자료 :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 자료, 법관 수는 사법연감(2021, 법원행정처) 자료

- 「법원조직법」 제5조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에 의해 각급 법원의 판사수가 제한되어 있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판사 수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산정
- 정원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며, 총정원 122명임
 - 직급 및 호봉 등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등법원의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비용을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서 제시한 금액을 활용함(매년 1%의 임금인상을 가정하여 산출)

○ 종합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음

[표 5-4]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비용추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설치 비용	16,026	140,227	6,676	6,832	6,991	176,752
- 인건비 등 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자료 인용

(4) 기회비용을 활용한 편익요소 산정과 장기적 순현재가치 도출

- 공공기관의 편익요소는 공공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익의 대상을 정부기관의 내부적 편익 외에 국민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편익요소로는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계량화 방법을 적용하여 화폐가치화 방법을 통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
- 편익요소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등의 편익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원으로서의 접근에 대한 접근시간 감소, 소송에 따른 인지세 소득 등을 편익으로 잡을 수 있음
- 접근시간 감소 효과
 -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소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으로 나타남)
 - 인천고등법원 설치시 거리와 시간적 비용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교통체증을 고려한다면 이점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더불어 서울 수도권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일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교통DB(<https://www.ktdb.go.kr/www/index.do>) 2016년 “통행시간 가치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시간을 가치로 환산한 연구를 참고하면, 1인, 1시간의 대중교통(버스)의 비용은 17,260원, 승용차는 22,775원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음
- 이 자료를 본 연구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비용절감효과(편익)로 적용하고자 함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으로 96.1분, 승용차로 71.5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였음
-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비중은 승용차 40%, 대중교통 60%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감소할 수 추정으로 나온 숫자를 이용자로 추정하였음

- 다만, 이는 최소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항소심 1건을 진행하는데, 3-4회의 법원 출두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비용은 늘어날 수 있으며, 각 항소심별로 이동하는 이해관계자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 이인재(2015)에서는 사법접근성 편익분석 시 1건당 3회 재판 참석, 4인 기준(사건당 사자, 대리인, 증인, 참고인 등)으로 계산하였음. 본 연구에서도 1건당 3회, 4인 기준으로 접근시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하였음

[표 5-5] 접근시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단위: 명, 원)

구분	이용자 수			시간가치 (원/인 · 시간)	비용산정(원)		
	이용자수 (항소건수)	1건당 참석자수	1건당 방문횟수		소요시간	비용	계
승용차	738	4	3	22,775	1.192	27,149	240,431,544
대중교통(버스)	1,106	4	3	17,260	1.602	27,651	366,984,072
계	1,844	-	-	-	-	-	607,415,616

- 비용절감효과는 2016년 국가교통DB 값에 대하여 매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도별 편익을 계산하였음
- 2016년 약 607백만 원에 대하여 연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

[표 5-6] 연도별 비용절감 효과

(단위: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684,048,640	697,729,612	711,684,205	725,917,889	740,430,247	755,244,971

- 이인재(2015)는 인천과 서울 원거리 이동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이상적인 기준 및 현실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재의 수치 및 기준을 적용하여 재검토함
- 본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초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으며,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순추가비용은 단순한 시간소요의 개념으로만 접근한 것임
 - 항소건 = 1,196건(행정소송과 형사공판 합의 항소 건수 합)²⁹⁾
 - 인천관할 인구수 = 4,240,950명

29) 전체 항소건수 추정 합계(1,844건)의 65%를 차지함

- 서울고등법원까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추가시간 = 3회 × 1시간 30분 × 2(왕복) × 70% × 1,196건 × 4인 = 30,139시간
- 원거리 이동 추가시간 30,139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고려, 차량 운행비용 무시
- 2022년 기준 시간당 임금 = 최저시급 9,160원 적용
- 서울고등법원까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순 추가비용 = 30,139시간 × 9,160원/시간 = 276,073,240원

○ 현실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시간이 추가 소요되거나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할 확률이 높아 선임에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됨. 또한,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항소심 법률상담과 서울고등법원 참석을 위한 연차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시간적 기회비용을 추정하였음

- 서울 원거리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기회비용은 연간 7억3천6백만 원(1건당 3회, 4인 기준)인 것으로 분석됨
- 서울고등법원의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현실적 순 추가시간 = 3회 × 8시간(월차) × 70% × 1,196건 × 4인 = 80,371시간
-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현실적 순 추가비용 = 80,371시간 × 9,160원/시간 = 736,198,360원

○ 본 연구에서는 이인재(2015)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고등법원 유치로 인해 형사와 행정소송 항소 사건만을 고려³⁰⁾하여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현재가치는 최소 12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외 사법서비스 향상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강화로 인하여 인천시민들의 얻는 심리적, 사회적 편익과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및 인천시의 위상강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원외재판부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을 추가하면 이로 인한 추가 편익이 12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³¹⁾

30) 현재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항소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31) 위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만을 감안한 것으로 이인재(2015)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모두 합쳐서 40년간 320억 원으로 추정한 값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임

[표 5-7]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경제적 편익

현재가치(순편익)	기준년 +1의 현재가치	기준년 +2의 현재가치	...	기준년 +40의 현재가치
$\text{약 } 126\text{억 원}$ $= \sum_{i=1}^{40} (\text{기준년} + i \text{의 현재가치})$	736백만 원 / 5%	736백만 원 / 5%^(2)	...	735백만 원 / 5%^(40)

○ 소장 접수에 따른 인지세 소득

- 현행 법원서비스는 재판 유상주의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를 연동시키고 있으며, 항소는 통상인지액의 1.5배의 인지액이 부과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제시³²⁾된 2019년 법원별 수입인지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법원의 2019년 인지수입 총액은 49,041백만 원으로 나타나며, 2015년부터 연도별 편차가 다소 있으나 평균적으로 52,328백만 원임을 알 수 있음
- 인지수입은 통상의 소와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며, 통상의 소에서도 소송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추측하여 계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의 고등법원 전체 평균값인 52,328백만 원을 수입으로 상정하되, 6개 고등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을 추가한 7개 고등법원으로 나누어 본다면 인천고등법원은 약 74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지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법원의 규모 등에 따른 구체적인 가중치를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절감 효과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 비용추계와 비용절감효과³³⁾

-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의 경우, 비용은 건설비용 및 운영비와 함께 접근거리에 따른 비용인 교통이용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시간가치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하였음
-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으로 인한 교통이용 비용의 절감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의 효율성 개선, 각종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편익으로 계상하는

32) <http://cucs.or.kr/?p=6223>

33) 종합법조타운을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경우 보통 30년을 분석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후보지 결정 이후 규모 등의 조정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비용 및 편익 효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무엇보다 법원 설립 이후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편익과 가치를 현금으로 계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함

것은 신뢰성 및 분석의 엄밀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 이전에 따른 비용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음

- 접근시간 감소 효과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은 법원 설립 및 운영 이전이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편익으로 산정하였음
- 원거리이동 시간에 따른 현실적 순 추가비용은 2022년 현재 연간 736백만 원으로 추정하여 교통비용 절감효과와 마찬가지로 연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25년 이후 금액을 산정하였음(다만,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변화와 최저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절감효과는 최소한 2024년 고등법원이 건설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향후 3년 동안 최소한 46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5-8] 연도별 비용 추계와 비용절감 효과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건설비용 및 운영비	16,026	140,227	6,676	6,832	6,991	176,752
교통이용비용	698	712	-	-	-	1,410
비용 계	16,724	140,939	6,676	6,832	6,991	178,162
교통비용 절감효과	-	-	726	740	755	2,221
원거리이동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	-	781	797	813	2,391
절감효과 계			1,507	1,537	1,568	4,612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며, 이는 산업 간 연관관계의 파악을 통해 유발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지역 간의 산업 편차 및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산업에 대한 수량적 파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20년 한국은행에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제시된 인천지역의 경제구조 및 교역, 산업연관효과를 활용하고자 함(한국은행, 2020)

○ 통계수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대분류(33개 부문) 기준이며, 통합부문의 대조표는 아래와 같음

[표 5-9] 지역산업연관표 대분류 및 통합부문 대조표

대분류	통합 13개 부문	통합 6개 부문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광산물	광산물	광산물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기타 제조업 제품	소비재제품	공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기초소재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조립가공제품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건설	건설	건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도소매 및 운송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 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	기타	

○ 인천지역은 총산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와 공산물 비중이 각각 44.1%, 41.4%이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와 공산물 비중이 각각 57.7%, 28.7%로 소득 측면에서 주로 해석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서비스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⁴⁾

34)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지역경제 산업구조는 서울의 경우 서비스 비중이 85.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60.0%, 부산 57.3%임. 공산품은 울산이 81.3%로 가장 높은 광역시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 산업 부문이 대전은 69.8%, 대구는 68.2%, 부산은 70.1%, 광주는 64.6%로 인천은 산업적 측면에서 대도시적 특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지역경제의 산업별 구성

(단위: %)

구분	지역	공산품	서비스
총산출액 기준	서울	9.9	85.1
	인천	41.4	44.1
	경기	49.1	41.4
	전국 평균	44.5	45.0
부가가치 기준	서울	4.8	91.5
	인천	28.7	57.7
	경기	36.3	54.8
	전국 평균	29.5	59.9

자료: 한국은행(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경제 및 지역간 산업연관구조

○ 총산출액 및 최종수요, 취업자 구성

- 인천지역은 총산출액에 있어서 전산업에 걸쳐 약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5-11] 총산출액, 최종수요 및 취업자 구성

(단위: %)

구분		비중 값(전국 100% 기준)
총산출액	전산업	5.0
	농림수산물	1.0
	광산품	5.5
	공산품	4.6
	전기, 가스, 수도 및 폐기물	14.5
	건설	4.6
	서비스	4.9
최종수요	합계	5.0
	소비	5.4
	투자	4.3
	수출	4.7
취업자		4.6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2

- 공급 및 수요구조를 보면 지역 내 생산 및 수요의 비중이 동일하게 62.2%로 나타나며 이는 전국 지역 내 생산 평균 65.9%와 전국 지역 내 수요 평균 64.3%에 약간 하회하는 수준임. 즉, 지역경제의 공급 및 수요가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12] 총공급 및 총수요 구성

(단위: 조 원, %)

구분	지역내 생산	지역내 수요
서울	70.8	64.8
인천	62.2	62.2
경기	66.5	67.1
전국 평균	65.9	64.3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3

○ 산업별 부가가치율

- 인천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공산품은 제조임가공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13] 산업별 부가가치율

(단위: %)

구분		부가가치율(%)
전산업		41.1
공산품	전체	28.5
	소비재	22.0
	기초소재	28.8
	조립가공	28.3
	제조임가공	52.2
서비스	전체	53.8
	도소매운송	43.7
	생산자서비스	64.5
	사회서비스	67.0
	소비자서비스	40.5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8

- 지역 내 최종수요(소비, 투자) 중 자기 지역 생산품 비중을 나타내는 지역자급률의 경우 인천은 54.5%로 전국 평균인 61.5%보다 낮아 생산의 지역 내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일반적으로 광공업 지역인 울산(53.0%)과 인천이 지역자급률이 낮은 편임

[표 5-14] 최종수요 구성 및 지역자급률

(단위: %)

구분		지역자급률
전국 평균		61.5
수도권	서울	63.5
	인천	54.5
	경기	62.2

자료: 한국은행(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경제 및 지역간 산업연관구조. p.53

○ 지역간 교역구조

- 인천의 지역 간 교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역과의 교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

[그림 5-1] 지역간 이출입 구조

지역간 이출입 구조¹⁾²⁾

(단위 : %, 조원)

to	from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총이출 (조원)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서울		1.7	8.7	0.7	0.1	0.8	1.3	0.5	0.6	1.0	0.7	1.3	1.0	0.8	1.3	0.7	0.2	21.4 (290)
	인천	1.2		2.0	0.1	0.0	0.3	0.3	0.1	0.2	0.2	0.2	0.3	0.2	0.1	0.3	0.2	0.1	6.0 (82)
	경기	6.1	1.7		0.6	0.1	1.1	2.0	0.5	0.5	0.6	0.6	1.4	0.8	0.9	1.2	0.5	0.2	18.9 (256)
충청권	대전	0.5	0.1	0.4		0.2	0.2	0.4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2.4 (33)
	세종	0.1	0.0	0.1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9)
	충북	0.8	0.2	1.1	0.2	0.0		0.4	0.1	0.1	0.1	0.1	0.3	0.2	0.2	0.2	0.1	0.0	4.3 (58)
	충남	1.1	0.4	2.2	0.3	0.2	0.4		0.3	0.3	0.2	0.2	0.4	0.2	0.3	0.5	0.1	0.0	7.3 (99)
호남권	광주	0.2	0.0	0.5	0.1	0.0	0.0	0.1		0.2	0.5	0.0	0.1	0.0	0.1	0.1	0.1	0.0	2.0 (27)
	전북	0.6	0.1	0.4	0.1	0.0	0.1	0.2	0.1		0.2	0.1	0.2	0.1	0.1	0.1	0.1	0.0	2.7 (37)
	전남	0.7	0.3	1.1	0.1	0.0	0.2	0.3	0.4	0.3		0.1	0.4	0.3	0.2	0.4	0.1	0.1	4.8 (65)
대경권	대구	0.4	0.1	0.3	0.1	0.0	0.1	0.1	0.0	0.1	0.1		1.0	0.1	0.2	0.3	0.0	0.0	2.9 (39)
	경북	1.1	0.3	1.7	0.1	0.0	0.3	0.5	0.2	0.3	0.2	0.7		0.4	0.8	0.6	0.2	0.1	7.3 (100)
동남권	부산	0.5	0.1	0.5	0.1	0.0	0.1	0.1	0.1	0.1	0.2	0.1	0.3		0.8	1.3	0.1	0.0	4.5 (61)
	울산	1.2	0.4	1.3	0.1	0.0	0.2	0.5	0.1	0.2	0.3	0.3	0.6	0.5		0.7	0.1	0.1	6.3 (86)
	경남	1.0	0.3	1.3	0.1	0.0	0.2	0.4	0.1	0.2	0.3	0.2	0.4	0.7	0.7		0.1	0.0	6.0 (82)
강원		0.5	0.1	0.4	0.0	0.0	0.1	0.1	0.0	0.0	0.0	0.1	0.1	0.1	0.0	0.1		0.0	1.8 (24)
제주		0.3	0.0	0.2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8 (11)
총이출 (조원)		16.4 (223)	5.8 (78)	22.2 (301)	2.9 (40)	0.8 (12)	4.1 (56)	6.8 (93)	2.6 (36)	3.2 (43)	4.0 (55)	3.5 (48)	7.0 (94)	4.7 (64)	5.4 (73)	7.2 (97)	2.5 (33)	0.9 (12)	100 (1,359)

주 : 1) 지역간 이출입 총액 1,359조원의 지역간 교역 구성비(%)
2) 구성비 0.5% 초과, 1.0% 초과, 1.5% 초과, 2.0% 초과 해당 교역액을 음영으로 표시

주 : 1) 지역간 이출입 총액 1,359조원의 지역간 교역 구성비(%)

2) 구성비 0.5% 초과, 1.0% 초과, 1.5% 초과, 2.0% 초과 해당 교역액을 음영으로 표시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12

○ 생산유발효과 검토

- 인천의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각 지역의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서 유발하는 생산의 크기)는 아래와 같음
- 인천의 생산유발계수는 1.797이며 투자 및 수출의 생산유발계수가 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의 경우, 지역별 생산유발액은 약 188.4조 원으로, 타 지역이 약 50.7%의 비중이며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³⁵⁾

[표 5-15]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

(단위: 조 원,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전국 평균
생산유발계수		1.789	1.797	1.802	1.813
생산유발액		624.9	188.4	948.2	3,833.6
지역	자გი지역	1.028	0.885	1.081	1.020
	타지역	0.761	0.911	0.720	0.793
최종수요 항목별	소비	1.717	1.700	1.702	1.692
	투자	1.929	1.931	1.930	1.938
	수출	1.847	1.877	1.841	1.901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13~14

○ 부가가치효과 검토

- 각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서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은 0.774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과 비교 시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국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음(전국평균 0.774)

[표 5-16]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단위: 조 원,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전국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821	0.774	0.781	0.774
부가가치액		370.9	78.2	381.8	1,637.5
지역	자გი지역	0.525	0.391	0.481	0.452
	타지역	0.296	0.382	0.300	0.323
최종수요 항목별	소비	0.852	0.846	0.850	0.854
	투자	0.816	0.820	0.816	0.816
	수출	0.739	0.633	0.668	0.641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15~16

○ 취업유발효과 검토

- 각 지역의 국산품 최종수요 10억 원이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서 유발하는 전업환산 기준 취업자수인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전국 평균인 11.4를 약간 상회하는 11.6으로 나타났음

35)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14,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액 및 지역별 유발액 비중' 내용 참고

[표 5-17]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전국 평균
취업유발계수		12.9	11.6	11.1	11.4
지역	자გი지역	8.3	5.8	6.7	6.6
	타지역	4.6	5.8	4.4	4.8
최종수요 항목별	소비	13.6	13.9	13.7	14.0
	투자	10.8	11.8	11.7	11.5
	수출	12.9	7.8	7.3	7.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p.17

- 위와 같은 인천지역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고려하여 앞서 분석한 연도별 비용추계 결과 [표 5-8]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비용과 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지도입 및 주민만족도, 법률서비스 제공의 지방균형, 고등법원 이전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발생 등 정책적인 타당성 등을 고려한다면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경제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5-18]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경제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1.797)	30,053	253,267	11,997	12,277	12,563	320,157
	부가가치유발효과(0.774)	12,944	109,087	5,167	5,288	5,411	137,897
	취업유발효과(11.6)	186명	1,624명	78명	79명	81명	2,047명
효과 계		42,997	362,354	17,164	17,565	17,974	458,054

*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발생하는 취업유발인원으로 계상함

- 세부적인 지역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으로 건설부문과 공공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비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음
 - 각 분류별 편익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세부 분류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천의 생산유발효과가 경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총계 값으로 비교시),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9] 분류별 경제 파급효과 분석

(단위: 백만 원, 명)

분류	건설부문			공공부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수산물	-	-	0.6	-	-	1.6
광산물	353.7	176.9	0.8	-	-	0.0
음식료품	176.9	-	0.5	530.6	176.9	1.6
섬유 및 가죽제품	176.9	-	0.5	176.9	-	0.5
목재 및 종이, 인쇄	2,476.2	707.5	11.4	353.7	176.9	1.4
석탄 및 석유제품	884.4	176.9	0.2	707.5	176.9	0.1
화학제품	1,768.7	530.6	3.7	176.9	-	0.5
비금속광물제품	6,190.5	1,591.8	15.1	-	-	0.1
1차 금속제품	3,183.7	707.5	5.0	-	-	0.1
금속가공제품	2,830.0	1,061.2	12.4	176.9	-	0.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76.9	-	0.6	176.9	-	0.4
전기장비	884.4	353.7	2.3	-	-	0.2
기계 및 장비	1,238.1	353.7	4.7	-	-	0.3
운송장비	-	-	0.2	176.9	-	0.3
기타 제조업 제품	353.7	176.9	3.0	-	-	0.7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884.4	530.6	9.0	353.7	176.9	2.6
전력, 가스 및 증기	2,122.5	707.5	1.4	1,945.6	707.5	1.4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353.7	176.9	1.5	353.7	176.9	2.0
건설	176,872.0	75,524.3	1,442.1	176.9	-	1.5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183.7	1,945.6	48.0	1,238.1	707.5	17.3
운송서비스	2,653.1	1,061.2	13.2	2,299.3	884.4	11.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707.5	176.9	8.5	1,061.2	353.7	15.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53.7	176.9	1.1	707.5	353.7	2.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591.8	884.4	7.1	2,122.5	1,238.1	9.1
부동산서비스	884.4	530.6	1.8	1,061.2	707.5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721.1	3,714.3	53.9	884.4	530.6	7.8
사업지원서비스	3,360.6	2,299.3	52.4	2,830.0	1,945.6	4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	0.4	176,872.0	139,021.4	1,532.7
교육서비스	-	-	0.6	-	-	0.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53.7	176.9	3.8	176.9	-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76.9	-	1.1	-	-	0.5
기타 서비스	353.7	176.9	9.3	176.9	176.9	6.4
기타	-	-	0.0	-	-	-

* 고용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발생하는 취업유발인원으로 계상함

* 구체적인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한국은행(2019)의 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및 「통계편」을 활용함

[표 5-20] 분류별 경제 파급효과 지역간 비교 분석(건설부문)

(단위: 백만 원, 명)

분류	인천			경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수산물	-	-	0.6	151.6	112.1	3.8
광산품	353.7	176.9	0.8	162.9	288.9	1.1
음식료품	176.9	-	0.5	400.5	159.9	2.3
섬유 및 가죽제품	176.9	-	0.5	257.3	73.0	1.6
목재 및 종이, 인쇄	2,476.2	707.5	11.4	1,216.2	854.9	12.6
석탄 및 석유제품	884.4	176.9	0.2	32.3	4.3	0.0
화학제품	1,768.7	530.6	3.7	4,107.2	2,229.7	16.5
비금속광물제품	6,190.5	1,591.8	15.1	3,315.0	3,625.7	35.1
1차 금속제품	3,183.7	707.5	5.0	2,227.2	428.6	3.9
금속가공제품	2,830.0	1,061.2	12.4	8,137.5	2,694.6	28.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76.9	-	0.6	1,078.5	489.7	2.0
전기장비	884.4	353.7	2.3	2,320.4	1,054.1	9.3
기계 및 장비	1,238.1	353.7	4.7	1,439.4	733.7	8.0
운송장비	-	-	0.2	227.5	73.7	0.8
기타 제조업 제품	353.7	176.9	3.0	820.7	358.1	10.2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884.4	530.6	9.0	833.0	837.7	14.6
전력, 가스 및 증기	2,122.5	707.5	1.4	736.1	485.4	1.1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353.7	176.9	1.5	299.1	281.9	3.2
건설	176,872.0	75,524.3	1,442.1	82.4	71,648.5	1,397.7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183.7	1,945.6	48.0	1,835.9	2,432.8	58.0
운송서비스	2,653.1	1,061.2	13.2	1,580.8	1,303.8	43.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707.5	176.9	8.5	783.0	373.4	16.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53.7	176.9	1.1	746.5	713.4	5.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591.8	884.4	7.1	502.9	1,206.8	8.3
부동산서비스	884.4	530.6	1.8	342.5	775.4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721.1	3,714.3	53.9	1,969.9	3,694.4	50.2
사업지원서비스	3,360.6	2,299.3	52.4	1,027.4	2,799.7	5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	0.4	31.4	74.2	0.8
교육서비스	-	-	0.6	32.3	48.4	1.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53.7	176.9	3.8	94.0	186.6	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76.9	-	1.1	91.1	101.1	1.9
기타 서비스	353.7	176.9	9.3	179.5	248.9	12.7
기타	-	-	0.0	54.2	-	-

* 고용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발생하는 취업유발인원으로 계상함

* 구체적인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한국은행(2019)의 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및 「통계편」을 활용함

2. 비계량적 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계량적인 편익 이외에 비계량적인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주요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음
-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분권의 효과성 제고
 -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수도권 내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의 효과성과 함께 서울 중심의 사법권에 대한 분권 역시 가능함
 - 인천지방법원의 항소 건수 등이 인천고등법원에서 처리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이 분산되어 재판기일의 간소화 및 법원 공무원의 근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광역지자체의 사법적 분권 체계가 강화되며, 지역 중심의 특화된 법률적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음
- 법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 지역 내 변호사들의 사건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여 집중심리 및 항소심에서의 승소율이 향상될 수 있음
 - 지역 변호사의 수입을 통한 면담 기회와 시간 증대 등 소송을 위한 준비의 질적 수준이 증대될 수 있음
 - 지역 내에서 법률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통비 및 생업포기 등의 개인적인 시간 및 비용의 손실 절감이 가능하며, 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항소 포기 등의 법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교통체증의 완화
 -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을 통해 서울 서부권 교통체증이 완화되며, 법원 도착시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시민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음
- 고령화시대 노령인구의 법원 접근성 증진 및 서비스 수요 충족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접근성 측면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 필요
 - 노인인구 증가율은 2011년 대비 2021년 79.5% 증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법원 위치도 중요해짐

-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수도권 내 노령인구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

○ 인천지역 내 기업 유치 가능성 제고

- 인천에 위치한 사업체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증대로 경기도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음
- 기업활동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함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현황분석으로 본 고등법원 설립 논거
2. 사례와 수요분석 결과로 본 설립 논거
3. 고등법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이슈
4.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한계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현황분석으로 본 고등법원 설립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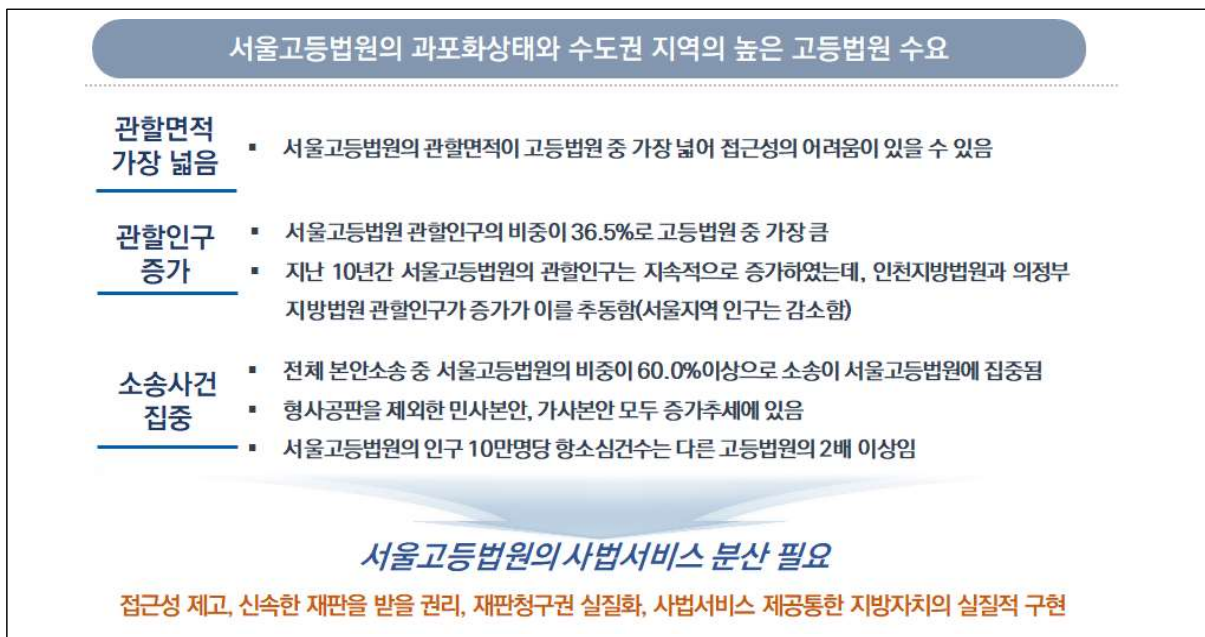
- 고등법원 설치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기준,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지방분산 배치, 지방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임
- 본 연구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둘러싼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법서비스의 서울집권적 구조의 문제와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개선임
 - 사법서비스 제공의 서울 집권적 구조를 벗어나 자치분권적 시각에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은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비용 최소화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서울고등법원의 관할범위와 사법서비스 현황, 둘째, 인천지역 특성과 사법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음
 - 첫째, 서울고등법원의 관할범위와 사법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사법서비스의 서울 집중현상에 대해 살펴봄
 - 둘째, 인천지역의 특성과 사법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인천지역 시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봄

1) 서울고등법원 과포화 상태와 수도권 지역의 높은 고등법원 수요

- 서울고등법원은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관할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송사건이 집중됨에 따라 과포화 상태임.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기존 고등법원 외 추가 설치 수요가 높음
 -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면적은 23,787km²로 고등법원 중 가장 넓어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관할인구 비중은 36.5%로 고등법원 중 가장 크고, 2011년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1년~2020년 인구변화를 보면 고등법원 중 서울, 대전, 수원만 증가하고 대구, 부산, 광주를 감소함
 -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인구증가는 인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증가에 따른 것임
 - 항소심 소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는데, 전체 항소심 본안소송 중 서울고등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0.0% 이상으로, 형사공판을 제외한 민사본안, 가사본안 모두 항소심 사건 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이를 인구 10만 명당 소송사건 수로 표준화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건수는 다른 고등법원의 2배 이상임
 -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판사 1인당 거의 98.85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업무가 다른 고등법원보다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는 심리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는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가져오고,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져올 것임

[그림 6-1] 서울고등법원 현황 및 사법서비스 시사점



2)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여건 개선 및 사법서비스 수요 대응

○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여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지방법원 관할 면적이 1,945.6km²이고,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으로 96.1분, 승용차로 71.5분으로 왕복 거의 3~4시간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짐
- 인천은 해양도시로 옹진군 등 섬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더욱더 떨어짐. 옹진군 섬지역의 주민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요되고,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가 백령도와 대청도는 200km이상으로 고성(161.8km), 강릉(166.9km)보다 길어 접근성이 해당 지역보다 열악함
-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인천지역이 5,617명(서울지역 404명)으로 주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인천지역의 인구수, 지역특성(사업체 수), 범죄발생 수, 소송사건 수로 사법서비스 수요를 분석함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추계 결과, 인천 지역의 인구는 2037년 4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대구고등법원은 2037년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인인구 증가는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노인인구 추계 결과, 203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각종 기업 관련 법제도 등이 변화하면서 기업관련 사법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체와 종사자의 증가는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짐
- 범죄발생은 형사소송을 비롯한 사법서비스 수요로, 인천지역의 10년간 범죄발생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지능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노인의 범죄 관련성이 높아지는데, 노인범죄자 수와 노인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참고] 범죄 피해자 중 노인수, 노인범죄자 수가 지난 10년간 대폭 증가함

* 노인피해자: 2011년 76,624명 → 2020년 176,621명(2.3배)

* 노인범죄자: 2011년 68,836명 → 2020년 138,376명(2.0배)

- 인천지방법원(가정법원 포함)의 소송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송유형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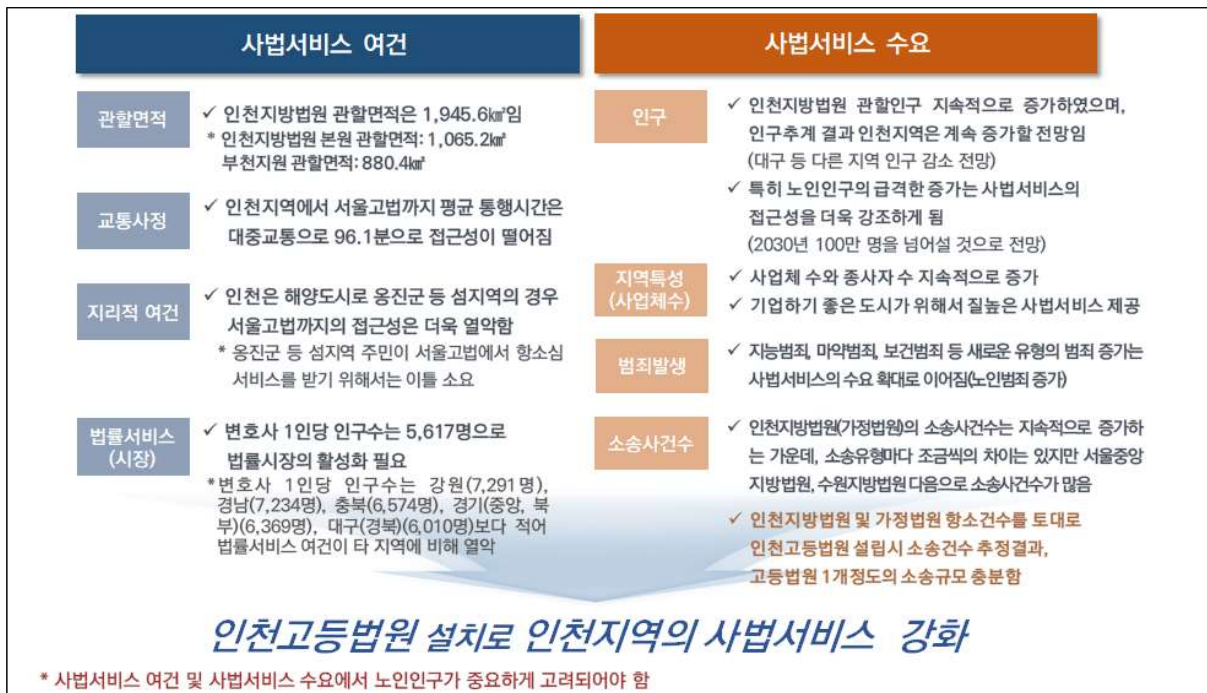
[표 6-1]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가정법원의 소송사건 수 종합비교

구분		증가율	타 지방법원(19개) 비교 (2020년 기준)
민사소송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	19년간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2018~2020년) 10% 이상 증가	3번째로 많음 (서울중앙, 수원, 인천 순)
	항소심 민사본안	10년간 28.7% 증가 2011년 2,646건 → 2020년 3,405건	3번째로 많음 (서울중앙, 수원, 인천 순)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5년간(2016~2020년) 증가 2016년 1,894건→2020년 2,129건	5번째로 많음 (서울중앙, 수원, 부산, 대구, 인천 순)
가사소송	제1심 가사합의 및 단독	10년간 감소 2011년 4,339건→2020년 3,800건 *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4번째로 많음 (서울중앙, 수원, 대구, 인천 순)
	항소심 가사소송	10년간 47.8% 증가 2011년 138건→2020년 249건	3번째로 많음 (서울중앙, 수원, 인천 순)
행정소송	1심 행정소송	10년간 81.1% 증가 2011년 835건 → 2020년 1,512건	3번째로 많음 (서울중앙, 수원, 인천 순)
형사소송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	10년간 13.3% 증가 2011년 21,945건 → 2020년 24,863건 * 전국적으로는 감소함	3번째로 많음 (수원, 대구, 인천 순) * 서울고등법원 관할 중 1위
	항소심 형사공판	10년간 6.8% 증가 2011년 5,157건 → 2020년 5,510건 * 2019년 대비 2020년 대부분 지역의 항소심 형사공판수 감소하지만 인천만 증가	2번째로 많음 (수원, 인천 순)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는 1,844건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구고등법원 1,812건(2020년 기준)보다 많아 고등법원 1개 정도의 소송 규모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충분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사법서비스 여건과 수요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노인인구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자와 노인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중요함

[그림 6-2]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



3) 종합

-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인천지역의 접근성은 도서 지역 등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장 최근에 설립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바도 있음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건수를 추정한 결과는 최소 1,844건으로, 이는 현재 대구고등법원의 1,812건보다 많음. 특히, 형사공판 합의 항소심 접수 건수는 대구고등법원뿐만 아니라 대전고등법원보다 높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며³⁶⁾, 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고등법원 설치를 통하여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인천지역의 고등법원 설치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천지역의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36)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에는 행정재판부와 형사재판부가 없음. 인천지방법원은 전국적으로 행정소송 1심의 경우 전국 대비 세 번째로 많으며, 형사소송 항소심은 두 번째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고등법원 설치를 통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민사와 가사의 경우도 공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별관 설치를 통하여 대응하고자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2020)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함

[표 6-2]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고등법원 설치기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검토의견
지역주민의 법원접근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강원, 경기북부 등의 지역)에 비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 다른 지방법원(강원, 경기북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소요됨(섬 지역 제외) - 용진군 섬지역의 경우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틀이 소요되고, 직선거리도 강원지역보다 훨씬 떨어져 있음 - 지역주민의 접근성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노인인구로, 인천지역의 경우 10년 후인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고등법원 규모 측면 (관할구역 및 인구수 측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규모(4,224,243명)는 현재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의 관할인구보다 90만명 적음	- 인천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인구추계 결과 2037년 43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임 - 이에 반해 대구고등법원 2022년, 광주고등법원 2049년부터 관할 인구가 50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인구추계 결과 2037년 대구고등법원 관할지역 인구는 450만명으로 감소하여 인천지법 관할인구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사건수 측면	2019년 기준 기존 고등법원과 비교시 인천고등법원(안)의 접수 사건 수는 현재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등법원의 접수 사건 수보다 적을것으로 예상	- 인천지방법원의 소송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타 지방법원과 비교시, 인천지방법원의 소송사건 수는 많은 편으로, 대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음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접수 건수는 최소 1,844건으로 추정,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접수 건수 1,812건(2020년 기준) 보다 많음
원외재판부 설치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내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위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개원되어 운영중임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함 * 원외재판부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 - 다른 원외재판부와 비교시 인천지역의 항소심 수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함 * 민사와 가사재판부의 규모도 인천의 소송건수에 비해 작음 - 따라서 원외재판부에 형사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2. 사례와 수요분석 결과로 본 설립 논거

○ 사법서비스의 지역 분산과 자치분권 시각에서의 고등법원 설립 필요

-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서비스를 국민 즉,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각의 전환이 요구됨
- 이를 통하여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분산배치를 통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가능
- 현재의 사법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지 못함
-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법 자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법원이 지역 차원에서 권리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한 고등법원 설립 이슈 제한

- 국내 사례 연구에서는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제외하고는 고등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외재판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해외사례에서도 사법서비스 제공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재판 민원의 편의성 및 형평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초 설치된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고등법원 서비스 제공 요구는 실질적인 자치적 차원에서의 고등법원 서비스 제공이나 이를 제주도와 같은 원외재판부 설치로 우회시킨 경향이 있음
- 즉, 고등법원 설치에 매우 보수적이며 자치분권 차원에서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의 사법서비스 제공인 경우였으며, 지역주민의 수요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
- 다만,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사법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아닌 사법서비스 수요 차원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 고등법원 설치 까지 13여 년의 시간이 걸렸음
- 따라서 법원에서 원외재판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수요적 관점에서 고등법원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편의성 측면 뿐만 아니라 대도시경쟁력 차원에서의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 수요 조사 결과로 볼 때, 시민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대리인(agent)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고등법원 미설립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고등법원 설치는 재판당사자나 잠재적 재판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법원행정의 균형발전 취지나 대도시로서 경쟁력 차원의 입장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인천시와 같이 형사재판부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재판당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이송됨으로써 법원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인천 지역적 관점에서 사법서비스의 전문성, 도시경쟁력 및 지역 내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고등법원 설치가 매우 중요하며, 지역 내 로스쿨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대법원과 국회,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해야 하며, 인천시민들의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노력들이 필요함이 제시되었음

3. 고등법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이슈

○ 인천지역 내 입지후보 선정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

- 각각의 기초자치단체는 위치와 용지확보, 교통망, 도시기능 등 편의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며 설치에 관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이에 입지선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경쟁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갈등이 팽배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자체의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절박한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을 것임
-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갈등을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은 지역이기주의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갈등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인천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력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이는 인천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전략적으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 지역 내 모든 군·구의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천지역 외 고등법원 설치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와의 갈등

- 현재 사법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 중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곳은 인천과 의정부임
- 의정부 고등법원 설립과 함께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고 있음.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400만 명에 달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요구와 유사한 설치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의정부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보장, 사법 편의 접근성,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등의 편익을 포괄하여 인천광역시에 보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긴밀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의정부 고등법원,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해당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권인 부천과 김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규모로도 충분히 고등법원 설치 수요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다 법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이 설치될 입지에 따라 관할권 변경도 고민할 수 있음

○ 고등법원 설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갈등

- 고등법원 설립과 관련하여 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함
- 앞서 사례에서 보면, 수원고등법원 설립의 경우 법원행정처는 영통동 부지에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1개 동 건물에 함께 입주시키는 방식의 복합형 건물을 계획하였으나, 법무부는 수원고검 청사와 수원고법을 나란히 설치하는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두 기관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였음
- 2014년에는 부지 선정 전 실시설계비 반영을 통해 2019년 3월 개원·개청이 이뤄지도록 실시설계비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 및 증액을 신청하였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부지 선정 갈등으로 인해 기재부의 수원고등법원 관련 예산편성과 증액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증액의 전제조건으로 두 기관의 합의를 내세웠지만,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예산안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 또한, 부지 매입비의 경우 정부예산 투입과 국유지 활용 등의 의견 차이로 설립과정에서의 갈등이 존재하였음. 이에 법원행정처, 기재부, 법무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적인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임

○ 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치적 갈등

- 고등법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치법안의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경기고등법원 설치법안」을 2007년에 처음으로 발의하였고, 2008년에 회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되어 다시 2차로 발의하였지만 2011년에 또 다시 폐기되었음. 이후 2012년도에 3차 발의를 하였고, 7년 만에 2014년도에 「경기(수원)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법안이 폐기되거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또한 선거 이후에 법안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인해 폐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음

-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시에 “경기고법 설치법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국회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단 한번도 법사위 측에 경기고법 설치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법원행정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음
- 특히, 정치적 이슈가 높은 타 법안의 처리와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갈등과 파행, 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도출 실패 등으로 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계류되지 않도록 법안 상정과 처리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사법구조 및 사법분권의 문제

- 현재 중앙집권적인 사법구조를 조직적 측면에서 분산시켜 각 지역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어, 독자성을 부여하고 사법 행정권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는 사법분권 및 사법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근본적 변화 요구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설치사례에서 보면, 법원행정처 및 관계 부처는 추가적으로 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재판부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판사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의 통일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줬으며, 지방에서 우수한 법관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유착 우려, 법령해석의 이질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법사무는 국가사무임이 원칙이나, 국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제정하여 사법분권을 가능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치분권적 관점에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요구됨
- 이에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의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분권과 자치를 지향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갈등

- 우선 각 입지후보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의 문제, 변호사들의 각자의 사무소 입지에 따른 입장차이의 문제를 원활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를 사전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같이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위하여 도심 및 중심지인 영통과 광교신도시에 고등법원을 유치할 것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지역에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였음.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광교에는 이미 지방법원이 이전할 법조타운 부지가 형성되어 있어 해당부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고등법원이 같이 위치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으며,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서수원이 국도와 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접근성이 좋고 올해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3개 기관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수원 고법과 고검 설치에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수원고등법원 설립이 지연되는 동안 광교, 영통 외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유치를 주장하였으며, 지역 정치인들이 여론몰이에 나서 민민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타나게 되었음
- 즉, 국회의원, 법조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부지 선정과 예산확보는 지지부진하게 될 것임. 이에 지속적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법원 청사 주변의 교통, 주차, 안전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방안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임

4.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한계

경제성 분석결과

-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계열 통계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법원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지표 및 비용과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적 분석이 일반적인 타당성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함(송상훈, 2013; 백윤기 외, 2007; 이재호, 2018)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범위에 따른 법률 소외지역의 발생과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왕복하는 거리에 따른 불편함을 경제적 손실로 간주하였으며, 비용은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건축비, 인건비 및 시설 유지 비용, 교통이용비용(통행시간 가치 1인 1시간 대중교통 비용 17,260원, 승용차 22,775원에 대하여 2016년 기준 국가교통 DB 활용)으로 추정
- 비용절감효과는 2016년 국가교통DB 값에 대하여 매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도별 편익을 계산하였음(2016년 약 607백만 원 대하여 연간 2%의 물가상승률을 고려)
- 본 연구에서는 이인재(2015)³⁷⁾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고등법원 유치로 인해 형사와 행정소송 항소 사건만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현실적인 기회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현재가치는 최소 12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외 사법서비스 향상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강화로 인하여 인천시민들이 얻는 심리적, 사회적 편익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천시의 위상 강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원외재판부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을 추가하면 이로 인한 추가 편익이 12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³⁸⁾
- 인천지역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고려하여 분석된 연도별 비용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인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생산유발효과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3,202억 원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7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여 명이 발생함

37) 이인재(2015)는 인천과 서울 원거리이동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이상적인 기준 및 현실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재의 수치 및 기준을 적용하여 재검토하였음

38) 위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만을 감안한 것으로 이인재(2015)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모두 합쳐서 40년간 320억 원으로 추정한 값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임

[표 6-3]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경제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1.797)	30,053	253,267	11,997	12,277	12,563	320,157
	부가가치유발효과(0.774)	12,944	109,087	5,167	5,288	5,411	137,897
	취업유발효과(11.6)	186명	1,624명	78명	79명	81명	2,047명
효과 계		42,997	362,354	17,164	17,565	17,974	458,054

*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발생하는 취업유발인원으로 계상함

-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계량적인 편익 이외에 비계량적인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주요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음
 -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분권의 효과성 제고
 - 법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 수도권 지역 교통체증의 완화
 - 인천지역 내 기업 유치 가능성 제고
- 고등법원의 설립은 국민에게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사법주권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이를 설치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단행본/연구보고서

- 농촌진흥청(2011). 농촌진흥청 정보화사업 경제성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백운기·김병기·소병찬·오동석·김서용(2007).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아주법학*, 1(2), 2-93.
- 송상훈(2013).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인재·민혁기(2020).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인천연구원.
- 이인재·정대출(2015).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이재호 외(2013).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 연구. 울산광역시.
- 이재호(2018).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울산발전연구원.
- 이재호·강영훈·박남기(2019).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장영민 외(20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고양시.
- 최성환 외(2019).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한국은행(2019). 2015 산업연관표 「해설편」 및 「통계편」. 한국은행
- 한국은행(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경제 및 지역 간 산업연관구조.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3rd. 한국은행.
- 홍순영(2014). ‘수원고등법원’ 신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GRI월간 퍼스펙티브: 경기개발연구원.
- Mishan, E. J., & Quah, E. (2020). *Cost-benefit analysis*. Routledge.

● 관련 법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19호). 2019.03.01. [일부개정]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98호). 2021.03.01. [일부개정]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8.02.25. [전부개정]
- 법원조직법(법률 제17907호). 2022.01.27. [타법개정]

● 행정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안)
- 관계부처합동(2021.10.14.).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년 7월 발표)
-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보도자료/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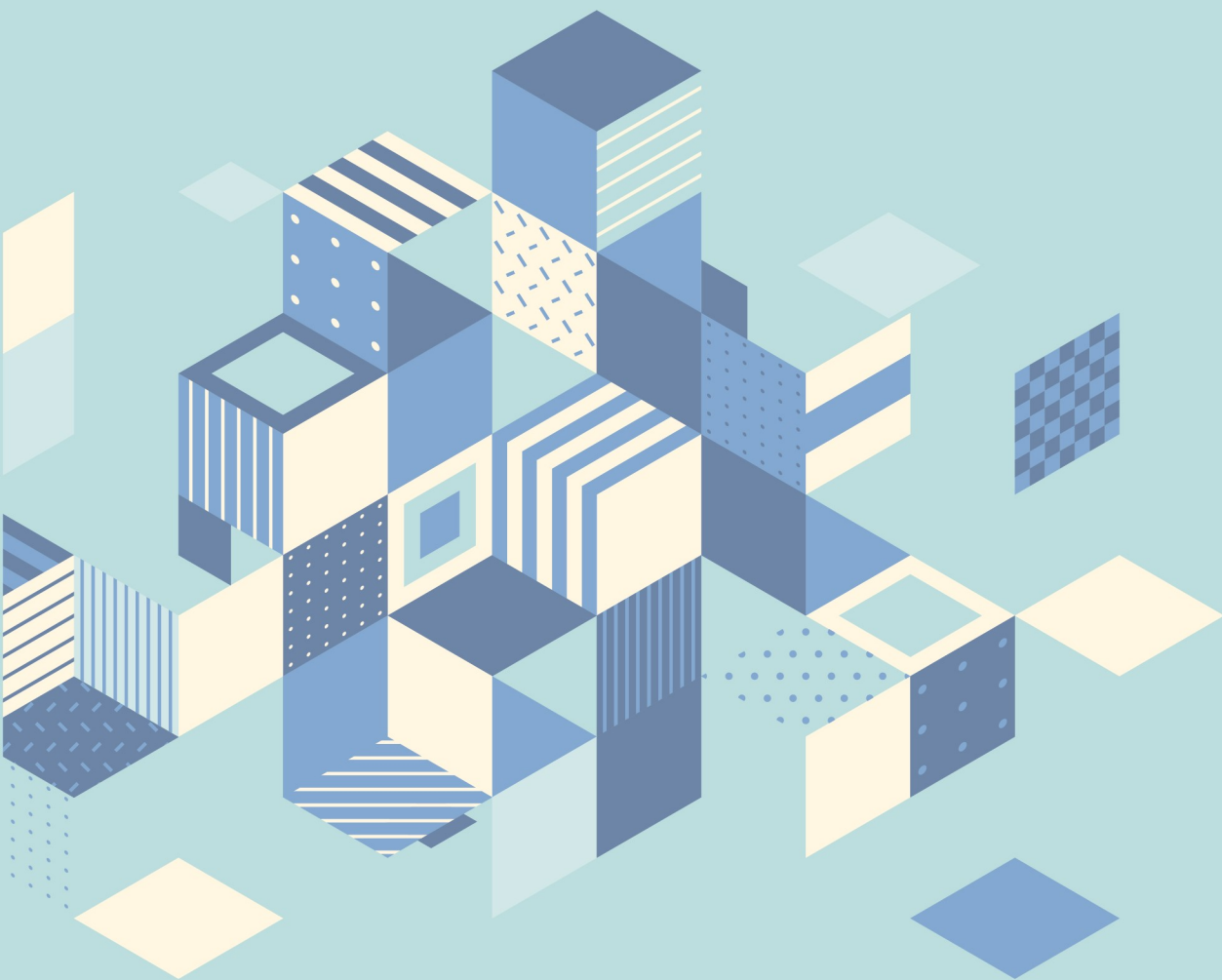
- 김갑봉(2019.11.12.). 형사부 없는 인천원외재판부 ‘반쪽자리’ 비판 지속.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02>
- 김셋별(2021.11.12.). 인천고등법원 부재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청구.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95>
- 김한수(2021.01.05.). 울산 지역 향소심, 이젠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에서.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509105168151>
- 박솔잎(2022.01.25.).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042>
- 배영철(2021.10.17.). [인천의 아침] 반쪽짜리 인천원외재판부. 경기일보 오피니언. <https://www.kyeonggi.com/2384846>
- 법원행정처, 2018.6.1.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공고제2018-104호)
- 손현규(2019.11.06.). 내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추가 설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6127700065?input=1195m>
- 이연우(2019.03.20.). 광고 법조타운 벌써부터 ‘주차 지옥’.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2069790>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1.03.09.). 인천시, 송도·제물포·계양 거점으로 D.N.A 혁신 밸리 조성 본격화 -송도를 중심으로 한 혁신의 파도를 원도심으로 확산 전개-.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089337
- 정준휘(2022.04.18.). 변호사 3만명 시대… 지방 법조계는 ‘구인난’.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741>
- 한국은행(2020.7.23.).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투입산출팀.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 국가교통DB <https://www.ktdb.go.kr/www/index.do>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대법원 홈페이지. <http://scourt.go.kr/supreme>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slgodung.scourt.go.kr/slgodung/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 연안여객터미널 홈페이지 운항현황, <http://icferry.or.kr/dmstc/nvg/monthlist.do?menuKey=595>, (검색일자 2022.8.15.)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incheon.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

부록

1. 설문조사지(시민 대상)
2. 설문조사지(전문가 대상)
3. 사법서비스 경험자 대상 설문결과



부록: 설문조사지(시민 대상)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설문지(시민 대상)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타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고, 모두 익명 처리하여 연구에만 활용되며,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연구기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정남숙(☎:032-260-2725/Email:jns96@ii.re.kr)

인천광역시는 도시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인하여 사법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인천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사법서비스 등에 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소(2심)를 진행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용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지역의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수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교통비, 시간적 비용 등)이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의견 ()					

2. 지금까지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상급기관)의 설치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국회 등 정치권에서의 인천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천지역의 정치권 등의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고,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기관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인천지역 인구 및 관할지역 규모 등의 위상변화에 대하여 인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의견()					

3.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천의 증가하는 인구수와 면적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천의 전체 사건 수가 타 지역보다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의 전체 항소 사건 비율이 높은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도권 서부권(인천, 부천, 김포 등)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의견 ()					

4.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할 경우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의 만족도	1. 이용자의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가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자의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도시경쟁력	5.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인천지역의 전반적인 사법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인천지역 법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천지역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과 질서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의견 ()						

5.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천시민의 설립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의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지역 정치권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검증 및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의견 ()					

6. 인천지역 고등법원이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sqrt{\quad}$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도, 인천의 사법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의견 ()					

7. 설문응답자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sqrt{\quad}$ 표시를 해주십시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사법서비스 경험유무	① 경험이 있다() ② 경험이 없다()
연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⑩ 옹진군()
직업	① 자영업() ② 회사원/사무직() ③ 전문직() ④ 농업/어업() ⑤ 가정주부() ⑥ 생산/기능직() ⑦ 판매/서비스() ⑧ 학생() ⑨ 무직()

※ 감사합니다.

부록: 설문조사지(전문가 대상)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타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고, 모두 익명 처리하여 연구에만 활용되며,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연구기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정남숙(☎:032-260-2725/Email:jns96@ii.re.kr)

인천광역시는 도시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인하여 사법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인천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사법서비스 등에 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소(2심)를 진행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용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지역의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수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소송을 위한 제반비용(교통비, 시간적 비용 등)이 증가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상급기관)의 설치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국회 등 정치권에서의 인천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천지역의 정치권 등의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고,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기관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인천지역 인구 및 관할지역 규모 등의 위상변화에 대하여 인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2-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천의 증가하는 인구수와 면적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천의 전체 사건 수가 타 지역보다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의 전체 항소 사건 비율이 높은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도권 서부권(인천, 부천, 김포 등)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할 경우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 인 의 만 족 도	1. 이용자의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가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자의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 역 의 도 시 경 쟁 력	5.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인천지역의 전반적인 사법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인천지역 법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천지역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과 질서 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천시민의 설립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의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검증 및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법·제도적 개정 및 수정 건의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참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조타운의 추가 부지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현 인천검찰청의 열악한 구치소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설립시 구치소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된다면 원심(1심) 판결 후 항소건수(비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증가할 것이다 () ②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③ 감소할 것이다 ()

6-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 인천지역 고등법원이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도, 인천광역시의 사법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변호사 사무실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인천지역 로스쿨 졸업자들의 지역 유입으로 인하여 인재 유출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1.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 설문응답자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법조계 종사경력	① 1년 이상-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⑥ 법학전문대학원(미래 법조인)()
업무 지역	※ 전체 업무량을 100%로 했을 경우 인천 관내 업무량을 적어 주십시오 (예: 인천 관내 50%, 기타 40%) ① 인천 관내 ()% ② 인천 외 지역 ()%
자기 사건 항소심 사건 비율	※ 항소심 사건 비율을 적어 주십시오 (전체 100% 중) ①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 ()%

※ 감사합니다.

부록: 사법서비스 경험자 대상 설문결과

[부록 표 1] 사법서비스 경험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대상자		262	100%
사법서비스 경험자		194	74%
성별	남성	108	55.7%
	여성	85	43.8%
	미응답	1	0.5%
	계	194	100.0%
연령	20-29	12	6.2%
	30-39	39	20.1%
	40-49	53	27.3%
	50-59	54	27.8%
	60세 이상	36	18.6%
	미응답	0	0.0%
	계	194	100.0%
거주지역	강화군	2	1.0%
	계양구	5	2.6%
	남동구	21	10.8%
	동구	5	2.6%
	미추홀구	80	41.2%
	부평구	16	8.2%
	서구	14	7.2%
	연수구	36	18.6%
	중구	11	5.7%
	기타(김포)	1	0.5%
	기타(인천 외)	1	0.5%
	미응답	2	1.0%
	계	194	100.0%
직업	농업/어업	2	1.0%
	생산/기능직	5	2.6%
	자영업	34	17.5%
	전문직	37	19.1%
	전업주부	16	8.2%
	판매/서비스	17	8.8%
	학생	3	1.5%
	회사원/사무직	69	35.6%
	무직	5	2.6%
	기타	6	3.1%
	미응답	0	0.0%
	계	262	100.0%

[부록 표 2] 사법서비스 경험자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3 (1.6)	8 (4.1)	22 (11.4)	94 (48.7)	66 (34.2)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	2 (1.0))	6 (3.1)	11 (5.7)	81 (42.0)	93 (48.2)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따른다	1 (0.5)	5 (2.6)	20 (10.4)	80 (41.5)	87 (45.1)
서울 지역의 비싼 수임료를 감수해야 한다	2 (1.0)	14 (7.3)	36 (18.7)	66 (34.2)	75 (38.9)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다	4 (2.1)	15 (7.8)	26 (13.5)	70 (36.3)	78 (40.4)
소송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4 (2.1)	12 (6.3)	29 (15.1)	67 (34.9)	80 (41.7)
소송을 위한 제반비용(교통비, 시간적 비용)이 증가한다	2 (1.0)	2 (1.0)	14 (7.3)	65 (33.9)	109 (56.8)

[부록 표 3] 사법서비스 경험자의 인천고등법원 미설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상급기관)의 설치의지가 부족하다	3 (1.5)	8 (4.1)	35 (18.0)	87 (44.8)	61 (31.4)
국회 등 정치권에서의 인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다	1 (0.5)	6 (3.1)	30 (15.5)	83 (42.8)	74 (38.1)
인천지역의 정치권 등의 의지가 부족하다	2 (1.0)	9 (4.7)	32 (16.6)	76 (39.4)	74 (38.3)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고,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이 낮다	1 (0.5)	6 (3.1)	36 (18.8)	74 (38.5)	75 (39.1)
행정기관을 비롯한 전반적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2 (1.0)	9 (4.6)	38 (19.6)	76 (39.2)	69 (35.6)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1 (0.5)	3 (1.5)	23 (11.9)	79 (40.7)	88 (45.4)
인천지역 인구 및 관할지역 규모 등의 위상변화에 대하여 인식이 낮다	1 (0.5)	9 (4.6)	34 (17.5)	82 (42.3)	68 (35.1)

[부록 표 4] 사법서비스 경험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천의 증가하는 인구수와 면적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0 (0.0)	4 (2.1)	24 (12.4)	91 (46.9)	75 (38.7)
인천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중요하다	0 (0.0)	4 (2.1)	14 (7.2)	80 (41.2)	96 (49.5)
인천의 전체 사건 수가 타지역보다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0 (0.0)	4 (2.1)	38 (19.6)	70 (36.1)	82 (42.3)
인천의 전체 항소 사건 비율이 높은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0 (0.0)	4 (2.1)	31 (16.0)	91 (46.9)	68 (35.1)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0 (0.0)	3 (1.6)	26 (13.5)	77 (39.9)	87 (45.1)
수도권 서부권(인천, 부천, 김포 등)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0.5)	1 (0.5)	13 (6.7)	84 (43.3)	95 (49.0)

[부록 표 5] 사법서비스 경험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 인 의 만 족 도	이용자의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 (0.5)	1 (0.5)	6 (3.1)	83 (42.8)	103 (53.1)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가 향상된다	0 (0.0)	4 (2.1)	29 (14.9)	69 (35.6)	92 (47.4)
	이용자의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0.5)	5 (2.6)	16 (8.2)	77 (39.7)	95 (49.0)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0.5)	6 (3.1)	33 (17.0)	75 (38.7)	79 (40.7)
도 시 경 쟁 력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0 (0.0)	1 (0.5)	25 (12.9)	89 (45.9)	79 (40.7)
	인천지역의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2 (1.0)	5 (2.6)	22 (11.4)	81 (42.0)	83 (43.0)
	인천지역 법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일 수 있다	2 (1.0)	3 (1.5)	27 (13.9)	83 (42.8)	79 (40.7)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1 (0.5)	4 (2.1)	18 (9.3)	80 (41.2)	91 (46.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1 (0.5)	7 (3.6)	27 (13.9)	88 (45.4)	71 (36.6)
	인천지역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과 질서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2 (1.0)	10 (5.2)	36 (18.6)	67 (34.5)	79 (40.7)

[부록 표 6] 사법서비스 경험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1 (0.5)	3 (1.5)	11 (5.7)	89 (45.9)	90 (46.4)
인천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	1 (0.5)	2 (1.0)	15 (7.7)	70 (36.1)	106 (54.6)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증 및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0 (0.0)	2 (1.0)	6 (3.1)	85 (44.0)	100 (51.8)
인천성장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1 (0.5)	5 (2.6)	18 (9.3)	76 (39.4)	93 (48.2)
인천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0 (0.0)	5 (2.6)	16 (8.3)	75 (38.9)	97 (50.3)

[부록 표 7] 사법서비스 경험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도 인천의 사법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36 (18.6)	82 (42.3)	48 (24.7)	13 (6.7)	15 (7.7)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1 (0.5)	5 (2.6)	16 (8.2)	75 (38.7)	97 (50.0)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2 (1.0)	1 (0.5)	16 (8.3)	78 (40.4)	96 (49.7)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다	0 (0.0)	2 (1.0)	28 (14.4)	74 (38.1)	90 (46.4)